

발간물 등록번호

11-1541000-00019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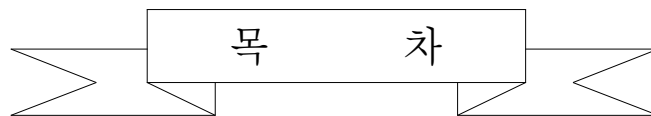
2008년도

수산업 연차보고서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의 통계 자료중 전년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연도에서 정정된 것임
2. 본 보고서의 일부 통계는 사사오입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목 차

제 I 편 2007년도 수산업 동향	17
제1장 세계 수산업 동향	19
제2장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23
제 II 편 2007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69
제1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71
제2장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89
제3장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96
제4장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	113
제5장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127
제6장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보급	152
제7장 어업인 지원 강화	183
제8장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196
제 III 편 2008년도 수산시책 추진계획	203
제1장 기본방향	205
제2장 수산자원 회복 및 자율관리어업 본격 추진	211
제3장 연근해 어업구조 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222
제4장 합리적인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230
제5장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구축	248
제6장 어업 전문인력 양성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53
제7장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 체제강화	257
제8장 친 환경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261
제9장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267
제10장 국제협상 활동 강화 및 해외수산자원 확보	275

세 부 목 차

[제 I 편 2007년도 수산업 동향]	17
제1장 세계 수산업 동향	19
제1절 수산물 생산	19
제2절 수산물 교역	20
제2장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23
제1절 어업 구조	23
1. 어가인구	23
2. 어업 총생산	25
3. 어선등록 현황	27
4. 이용어장	29
5. 어업 경영체	34
제2절 어가 경제	40
1. 어가소득	40
2. 어가 가계지출	41
3. 어가자산	42
4. 어가부채	42
제3절 수산물 생산	44
1. 생산동향	44
2. 연근해어업	44
3. 양식어업	50
4. 내수면어업	52
제4절 수산물 수출·입	53
1. 수 출	53

2. 수 입	57
제5절 수산물 수급 및 가격	61
1. 수 급	61
2. 소 비	62
3. 가 격	63
제6절 어업 및 어장환경	64
1. 어 황	64
2. 자원동향	65
3. 연안어장 환경변화	66
[제Ⅱ편 2007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69
제1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71
제1절 자율관리어업	71
제2절 수산자원 조성	74
1. 인공어초시설	74
2. 종묘방류	75
3. 바다목장 조성	77
4. 총 허용어획량제도	78
5. 수산자원관리수면	80
제3절 양식어업 육성	81
1. 양식어장 개발	81
2. 환경친화형 양식기반 시설 확충	81
제4절 내수면어업 개발	83
제5절 어장정화	84
제6절 적조대책	85
제7절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87

제2장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89
제1절 어업구조조정 및 재편	89
제2절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90
제3절 어업질서 확립	91
1. 연근해어업 여건변화와 신 어업질서 확립	91
2. 안전조업 지도	93
3.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94
4. 어업질서 지도·홍보 강화	95
제3장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96
제1절 수산물 가격안정	96
1. 정부 비축사업	96
2. 민간 가격안정사업	97
3.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97
제2절 유통구조 개선	98
1. 유통시설 확충	98
2. 유통기능 강화	98
제3절 수산물 검사	103
1. 수산물검사 강화	103
2. 검사기능의 강화	105
제4절 수산물 수출·입 대책	106
1. 수입 개방에 따른 합리적인 수입 관리대책	106
2. 수산물 수출 진흥대책	106
제5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109
1. 가공제품 생산	109
2. 가공산업 지원	110
3.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111

제4장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	113
제1절 어촌개발	113
1. 어촌종합개발	113
2. 어촌관광 활성화	116
제2절 어항시설 확충	121
1. 어항개발의 개요	121
2. 어항개발 현황	121
2.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123
제3절 어선건조 및 장비·설비 현대화	125
1. 친환경 어선건조 지원 및 안전설비 지원	125
2.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개량 지원	125
제5장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127
제1절 국제 어업협력 강화	127
1.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127
2.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	135
3. 남북수산협력 추진	141
제2절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및 경쟁력 제고	144
1. 기존 어장의 확보	144
2.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148
3. 해외 신어장 개발	149
4.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	151
제6장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보급	152
제1절 어업인력 육성	152
제2절 어업인 정보화교육 및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154
제3절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155
제4절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156

제5절	해양수산교육	157
1.	수산해양교육	157
제6절	해양환경 연구	158
1.	해양변동 연구	158
2.	해양환경 오염 연구	159
3.	적조대책 연구	159
4.	해파리 대량발생 연구	161
제7절	어업자원 조사연구	163
1.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연구	163
2.	원양 어업자원 조사연구	163
제8절	수산공학기술 개발	165
1.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165
2.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	165
3.	어업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166
4.	인공어초에 관한 종합연구	167
제9절	양식기술 개발 연구	170
1.	양식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170
2.	해역별 양식어장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기술 연구	170
3.	고부가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171
4.	양식생물 질병방제기술 개발	172
5.	첨단 생물공학기술의 양식 실용화	173
6.	친환경적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및 관리기술 개발	174
제10절	수산식품 위생관리기술 개발	175
1.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조사	175
2.	수산식품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175
제11절	수산기술 지도·보급	178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178
2.	선진어업경영기반 구축	179

3. 수산기술보급 관리기반 조성	179
제12절 수산특정연구개발	180
제7장 어업인 지원 강화	183
제1절 수산자금 공급 확대	183
1. 영어자금	183
2. 수협 자체자금	185
제2절 어업인 부담 경감	186
1.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186
2. 각종 이차보전	187
3.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188
제3절 수산 관련 세제 개선	189
1. 수산세제 지원 연장	189
2. 수산세제 지원대상 확대	189
제4절 수산발전기금 조성·운용	191
제5절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194
제8장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196
제1절 일선수협 구조조정	196
1.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196
2. 부실수협 구조조정	196
3.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197
4. 부실책임조사 실시	197
제2절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	198
1. 수협중앙회 경영개선자금 지원	198
2. 신용사업부문의 『OK ACE 0506 운동』 전개	199
제3절 수협 혁신방안 수립 추진	200

[제Ⅲ편 2008년도 수산시책 추진계획]	203
제1장 기본방향	205
제1절 수산업의 여건변화	205
제2절 중점 추진시책	207
제2장 수산자원 회복 및 자율관리어업 본격 추진	211
제1절 수산자원회복 계획	211
1.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211
2. 총 허용어획량제도 확대	213
3. 인공어초 시설	214
4. 종묘방류 및 종묘배양장 기능 조정	215
5. 바다목장 조성	216
제2절 자율관리어업	218
제3절 환경친화적 낚시관리제 도입	220
제3장 연근해 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확립	222
제1절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222
1. 연근해어선 감척	222
제2절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224
1.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224
2.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24
3. 연근해어업 총조사 실시	225
4. 어구와 어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	225
제3절 불법어업 근절	227
1. 어업질서의 선진화 구현	227
2. 불법어업 단속처벌규정 강화	228
3. 첨단 어업지도선 및 장비 확충	228
4. 어업지도선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대책 마련	229
5. 수산자원명예감시선 확대 등 어업인 참여 유도	229

제4장 합리적인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230
제1절 시장개방 피해 특별대책 마련	230
1. 수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230
2.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231
3. 수산가공·유통산업의 육성	231
4.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232
5. 수산보전제도 본격 도입	233
제2절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235
1. 영어자금 공급 및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235
2.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237
제3절 수산경영구조 선진화	239
1. 일선수협외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239
2. 수협중앙회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241
3. 수협 혁신방안 추진	242
제4절 어업보험 확충	244
1. 어업인 정책보험 확대	244
2.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245
제5절 HEBEI SPIRIT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246
제5장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 구축	248
제1절 어촌종합개발사업체계 개편	248
제2절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250
제3절 어항시설 확충	251
1. 국가어항	251
2.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251
제4절 어촌어항 관광개발	252
1. 어촌어항관광 조성사업	252
2. 어촌체험마을 조성	252

제6장 어촌전문인력 양성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253
제1절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253
1. 어업인후계자 양성	253
2. 해기사 양성 및 수산기술 훈련	254
제2절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255
제3절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256
제7장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제 강화	257
제1절 국내생산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257
제2절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259
제8장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261
제1절 친환경 양식 생산	261
제2절 수급조절 강화	263
제3절 어장환경 개선	265
제4절 내수면 어업 육성	266
제9장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267
제1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267
제2절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270
제3절 수산물 가격안정	273
1. 가격안정사업	273
2.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274
제10장 국제협상 활동 강화 및 해외수산자원 확보	275
제1절 WTO-DDA 및 FTA 수산분야 협상대응	275
1. WTO-DD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275
2.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278

제2절 국제 수산기구 및 양국간 협력 강화	280
1. 국제수산기구 협력	280
2. 양국간 어업협력 강화	281
제3절 남북수산협력 사업 추진	286
제4절 원양어업 육성	287
1.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287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287
3. 원양업체 경영 지원	289
4.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289
5. 해외 신 어장 개발	290
제5절 수산물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292
1. 수산물 수출 진흥	292
2. 합리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294
[통계로 본 수산업 동향]	297

표 목 차

〈표 1〉 주요 수산물 생산국 현황	20
〈표 2〉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21
〈표 3〉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22
〈표 4〉 어가호수와 어가인구	23
〈표 5〉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24
〈표 6〉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25
〈표 7〉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25
〈표 8〉 어업생산 현황	26
〈표 9〉 어업총생산(부가가치) 현황	26
〈표 10〉 어선등록 현황	27
〈표 11〉 선질별 어선등록 현황	28
〈표 12〉 톤급별 어선등록 현황	28
〈표 13〉 품목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1
〈표 14〉 종류별·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32
〈표 15〉 2007년도 내수면 양식장 현황	33
〈표 16〉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35
〈표 17〉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36
〈표 18〉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37
〈표 19〉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38
〈표 20〉 2007년도 내수면 양식어업 경영체 추이	38
〈표 21〉 원양업체 경영규모 추이	39
〈표 22〉 어가소득	40
〈표 23〉 어업소득	41

〈표 24〉 어업외 소득	41
〈표 25〉 가계지출	41
〈표 26〉 어가 자산	42
〈표 27〉 어가 부채	43
〈표 28〉 어업생산현황	44
〈표 29〉 연근해 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49
〈표 30〉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51
〈표 31〉 내수면 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52
〈표 32〉 수산물 수출현황	53
〈표 33〉 품목별 수출현황	54
〈표 34〉 국가별 수출현황	55
〈표 35〉 주요 어종별 수출현황	56
〈표 36〉 수산물 수입현황	57
〈표 37〉 품목별 수입현황	58
〈표 38〉 국가별 수입현황	59
〈표 39〉 어종별 수입현황	60
〈표 40〉 수산물 수급동향	61
〈표 41〉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62
〈표 42〉 동물성 단백질 공급현황	62
〈표 43〉 소비자 물가동향	63
〈표 44〉 2007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원현황	73
〈표 45〉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실적	74
〈표 46〉 국·도립 수산종묘생산시설 종묘생산 방류 현황	75
〈표 47〉 시·도별 종묘 매입·방류 추진현황	76
〈표 48〉 어종별 종묘 매입·방류 추진실적	77
〈표 49〉 2006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현황	80
〈표 50〉 연어방류 및 채포 실적	83

〈표 51〉	코클로디니움 적조발생시기와 특징	86
〈표 52〉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연구용역 결과	87
〈표 53〉	불법어업 단속실적	92
〈표 54〉	어업인 보급지원 및 조난어선 구조 실적	93
〈표 55〉	어선원 교육 및 안전점검 실적	94
〈표 56〉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실적	95
〈표 57〉	2007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96
〈표 58〉	2007년도 수산물 유통보급시설 지원현황	98
〈표 59〉	수산물 규격출하촉진 지원대상품목과 거래규격	100
〈표 60〉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물량	101
〈표 61〉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금액	102
〈표 62〉	수산물 수출·입 검사실적	104
〈표 63〉	수산가공품 생산 추이	109
〈표 64〉	가공업체 지원실적	110
〈표 65〉	수산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111
〈표 66〉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112
〈표 67〉	수산 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112
〈표 68〉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실적	114
〈표 69〉	시·도별 어촌개발사업 지원실적('08년)	115
〈표 70〉	어촌관광 모델개발사업(시범사업)	117
〈표 71〉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조성현황	118
〈표 72〉	연도별 어촌체험마을 투입현황	118
〈표 73〉	연도별 어촌관광홍보 예산 현황	119
〈표 74〉	어항지정 현황	121
〈표 75〉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122
〈표 76〉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 현황	122
〈표 77〉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 현황	123

〈표 78〉	2007년도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 투자 실적	126
〈표 79〉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현황	128
〈표 80〉	양국간 수산협력약정 체결현황	129
〈표 81〉	2008년 한·일 양국 EEZ 입어동향	130
〈표 82〉	2008년 한·중 양국 EEZ 입어동향	131
〈표 83〉	명태생산 추이	132
〈표 84〉	연도별 한·러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134
〈표 85〉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	138
〈표 86〉	선박자동위치감시시스템(VMS) 설치 실적	140
〈표 87〉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153
〈표 88〉	수산특정연구개발 추진실적	181
〈표 89〉	수산특정연구개발 주요성과	181
〈표 90〉	영어자금 공급 실적	184
〈표 91〉	국내·외 신용평가 등급	185
〈표 92〉	수협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185
〈표 93〉	2007년도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	190
〈표 94〉	수산발전기금 조성실적	191
〈표 95〉	2007년 수산발전기금 조달 및 운용계획 대 실적	192
〈표 96〉	2007년 수산발전기금 조달 및 운용계획	193
〈표 97〉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194
〈표 98〉	2007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214
〈표 99〉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215
〈표 100〉	출조빈도에 따른 낚시인구	220
〈표 101〉	유어행위에 의한 조획량과 상업적 어업의 어획량 비교	221
〈표 102〉	2008년도 시·도별 연안어선 감척계획	223
〈표 103〉	2008년 영어자금 공급 계획	235
〈표 104〉	2008년 어업경영자금이차보전 예산 현황	237

〈표 105〉 어선규모별 보험료 지원율	244
〈표 106〉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및 계획	253
〈표 107〉 제품별 가공공장 현황	268
〈표 108〉 가공공장 및 가공품 생산량	268
〈표 109〉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272
〈표 110〉 2008년도 정부비축사업계획	273
〈표 111〉 2008년 한·일 양국 EEZ 입어동향	283
〈표 112〉 2008년 한·중 양국 EEZ 입어동향	284
〈표 113〉 2008년 러시아 EEZ 조업 계획	285
[통계로 본 수산업 동향]	297

제 I 편

2007년도 수산업 동향

제 1 장

세계 수산업 동향

제 1 절 수산물 생산*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2006년 수산통계에 의하면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은 159,897천 톤으로, 2005년도의 158,803천 톤보다 1,094천 톤(0.7%)이 증가하였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전년보다 3.4% 증가한 62,712천 톤을 생산, 전년에 이어 수산물 생산량 1위를 차지하였고, 페루(Peru)는 전년보다 25% 감소한 7,049천 톤을 생산하여 2위, 인도네시아(Indonesia)는 전년보다 161천 톤(2.4%)이 증가한 6,989천 톤을 생산하여 3위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인도, 일본, 미국, 칠레,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순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생산량은 전년의 2,712천 톤보다 320천 톤(11.8%)이 증가한 3,032천 톤을 생산,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의 1.9%를 차지하여 세계 13위에 머물렀다.

세계 양식생산량은 66,747천 톤으로 세계 수산물생산의 41.7%를 차지하였고, 이중 중국이 45,297천 톤을 생산하여 세계 양식생산량의 67.3%를 점하고 있다. 연간 4백만 톤 이상 생산되는 양식어종은 참굴(*Crassostrea gigas*)과 백련어(*Hypophthalmichthys molitrix*)로서, 참굴의 2006년 생산량은 4,593천 톤으로 세계 양식 생산량의 6.9%를 차지했다.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표 1>

주요 수산물 생산국 현황

(단위 : 천톤, %)

순위	국 가	'03	'04	'05	'06	'06/'05
1	중 국	55,740	58,601	60,632	62,712	103.4
2	페 루	6,107	9,634	9,420	7,049	74.8
3	인도네시아	5,920	6,121	6,828	6,989	102.4
4	인 도	6,034	6,190	6,658	6,983	104.9
5	일 본	6,085	5,689	5,450	5,526	101.4
6	미 국	5,533	5,602	5,454	5,331	97.7
7	칠 레	4,526	5,997	5,452	5,310	97.4
8	필 리 핀	3,617	3,931	4,144	4,414	106.5
9	태 국	3,914	4,100	4,118	4,162	101.1
10	베 트 남	2,824	3,108	3,397	3,648	107.4
:	:					
13	대 한 민 국	2,488	2,519	2,714	3,032	11.7
세계 총 생산량		146,981	155,823	158,803	159,897	100.6
비율	한국 / 세계	1.7%	1.6%	1.7%	1.9%	

자료 : FAO, Total Fishery Production (<http://www.fao.org/fishery/statistics/software/fishstat/en>)

제 2 절 수산물 교역*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2006년 세계 수산물 수출액은 86,371백만 \$로 2005년도 수출액 78,809백만 \$에 비해 9.6%가 증가하였다. 나라별 수출추이는 중국이 전년에 비하여 19% 증가한 9,150백만 \$로 1위, 노르웨이가 5,544백만 \$로 2위, 태국이 5,245백만 \$로 3위이며, 우리나라는 전년도 1,153백만 \$ 보다 9%가 감소한 1,049백만 \$로서 26위에 머물렀다.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표 2〉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단위 : 백만 \$, %)

순 위	국 가	'04	'05	'06	'06 / '05
1	중 국	6,780	7,674	9,150	119.2
2	노 르 웨 이	4,171	4,922	5,544	112.6
3	태 국	4,054	4,474	5,245	117.2
4	미 국	3,693	4,287	4,190	97.7
5	덴 마 크	3,577	3,695	3,999	108.2
6	캐 나 다	3,507	3,615	3,683	101.9
7	칠 레	2,547	3,043	3,639	119.6
8	베 트 남	2,450	2,765	3,363	121.6
9	스 페 인	2,582	2,603	2,872	110.3
10	네 덜 란 드	2,468	2,837	2,827	99.6
11	러 시 아	1,528	1,960	2,129	108.6
12	인 도 네 시 아	1,736	1,846	2,020	109.4
13	영 국	1,834	1,890	1,960	103.4
14	독 일	1,431	1,518	1,825	120.2
15	아 이 슬 란 드	1,783	1,794	1,823	101.6
16	페 루	1,389	1,636	1,773	108.4
17	인 도	1,412	1,578	1,769	110.7
18	프 랑 스	1,544	1,601	1,692	105.6
19	스 웨 덴	959	1,221	1,604	131.4
20	일 본	1,112	1,291	1,457	112.9
:	:	:	:	:	:
26	대 한 민 국	1,246	1,153	1,049	91.0
총 수출량		71,857	78,809	86,371	109.6
비율	한 국 / 세 계	1.7%	1.4%	1.2	

자료 : FAO, Fisheries Commodities Production and Trade 1976-2006

주 : 수산물 수출순위 21~25위 : 대만(21위), 유카도르(22위), 모로코(23위), 알젠틴(24위), 벨기에(25위)

한편, 세계의 수산물 수입액은 90,843백만\$로서 전년에 비하여 9.9%가 증가하였다. 나라별로는 일본이 전년 대비 3.2% 감소한 14,259백만\$로 1위, 미국이 13,400백만\$로 2위, 스페인이 6,378백만\$로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의 2,382백만\$에서 2006년에는 2,768백만\$로 16.2% 증가하여 세계 10위를 차지하였다.

〈표 3〉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단위 : 백만\$, %)

순 위	국 가	'04	'05	'06	'06 / '05
1	일 본	14,830	14,729	14,259	96.8
2	미 국	12,079	12,090	13,400	110.8
3	스 페 인	5,239	5,649	6,378	112.9
4	프 랑 스	4,217	4,604	5,109	111.0
5	이 탈 리 아	3,928	4,250	4,746	111.7
6	중 국	3,168	4,031	4,189	103.9
7	독 일	2,831	3,263	3,779	115.8
8	영 국	2,843	3,209	3,752	116.9
9	덴 마 크	2,369	2,627	2,939	111.9
10	대 한 민 국	2,259	2,382	2,768	116.2
11	네 덜 란 드	1,850	2,093	2,297	109.7
12	홍 콩	1,929	1,903	2,058	108.2
총 수입량		76,600	82,642	90,843	109.9
비율	한 국 / 세 계	2.9%	2.9%	3.0%	

자료 : FAO, Fisheries Commodities Production and Trade 1976-2006

제 2 장

우리나라 수산업 동향

제 1 절 어업 구조

1. 어가인구*

2007년 말 현재 전국의 어가는 73,934호로 2006년도의 77,001호 보다 3,067호 (4.0%)가 감소하였으며, 어가인구 역시 201,512명으로 2006년도의 211,610명 보다 10,098명(4.8%)이 감소하였다.

〈표 4〉 어가호수와 어가인구

(단위 : 호, 명, %)

구 분	'03	'04	'05	'06	'07	'07/'06
어 가 호 수	72,760	72,513	79,942	77,001	73,934	96.0
어 가 인 구	212,104	209,855	221,132	211,610	201,512	95.2
· 여 성 인 구 (구 성 비)	105,720 (50.0)	104,493 (49.8)	110,474 (50.0)	105,270 (49.7)	100,527 (49.9)	-
호당평균어가인구	2.92	2.89	2.77	2.75	2.73	99.3

자료 : 통계청, 2007 어업기본통계조사(p)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어업종사자는 2006년도에 비해 4.0% 감소된 122,916명으로서 성별로는 남자가 65,520명(53.3%), 여자가 57,396명(46.7%)이며, 어업에 종사한 가구원 중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38.5%, 50대가 31.6%, 40대가 21.6%로 어업에 종사하는 연령이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 명, %)

구 분		'03	'04	'05	'06	'07	'07/'06
종 사 자		125,023	122,384	130,589	128,048	122,916	96.0
성 별	남 자	67,870 (54.3)	66,380 (54.2)	70,307 (53.8)	68,244 (53.3)	65,520 (53.3)	96.0 -
	여 자	57,153 (45.7)	56,004 (45.8)	60,282 (46.2)	59,803 (46.7)	57,396 (46.7)	96.0 -
연 령 별	30세 미만	3,854 (3.1)	3,313 (2.7)	2,456 (1.9)	3,044 (2.4)	2,407 (2.0)	79.1 -
	30~39세	11,600 (9.3)	10,490 (8.6)	9,684 (7.4)	8,396 (6.6)	7,698 (6.3)	91.7 -
	40~49세	33,974 (27.2)	32,097 (26.2)	31,067 (23.8)	29,250 (22.8)	26,543 (21.6)	90.7 -
	50~59세	36,916 (29.5)	37,171 (30.4)	40,084 (30.7)	40,580 (31.7)	38,877 (31.6)	95.8 -
	60세 이상	38,680 (30.9)	39,312 (32.1)	47,298 (36.2)	46,778 (36.5)	47,393 (38.5)	101.3 -

자료 : 통계청, 2007 어업기본통계조사(p)

주 : ()내는 구성비임

〈표 6〉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 분	'03	'04	'05	'06	'07	'06/'05
합 계	72,760	72,513	79,942	77,001	73,934	96.0
전 업	25,423 (34.9)	23,580 (32.5)	25,342 (31.7)	23,932 (31.1)	22,407 (30.3)	93.6 -
겸 업	47,337 (65.1)	48,933 (67.5)	54,600 (68.3)	53,068 (68.9)	51,527 (69.7)	97.2 -

자료 : 통계청, 2007 어업기본통계조사(p)

주 : ()내는 구성비임

〈표 7〉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 분	'03	'04	'05	'06	'07	'06/'05
총어업 가구	72,760	72,513	79,942	77,001	73,934	96.0
· 어선사용가구	37,342 (51.3)	37,748 (52.1)	36,733 (46.0)	36,088 (46.9)	34,691 (46.9)	96.1 -
· 어선비사용가구	13,604 (18.7)	14,069 (19.4)	19,134 (23.9)	16,924 (22.0)	15,896 (21.5)	93.9 -
· 양식어업가구	21,814 (30.0)	20,696 (28.5)	24,075 (30.1)	23,989 (31.2)	23,356 (31.6)	97.4 -

자료 : 통계청, 2007 어업기본통계조사(p)

주 : ()내는 구성비임

2. 어업 총생산*

2007년도 어업 총 생산량은 3,275천 톤으로 전년 3,032천 톤 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어업 총 생산액도 8.8% 증가한 5조 7,519억 원으로 나타났다. 어업별 생산량 및 생산액은 <표 8>과 같다.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한편, 2007년도 어업생산액 5조 7,519억 원 중 중간 투입재를 제외한 부가가치는 1조 4,830억 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 901조 1,890억 원의 0.16%, 국내총부가가치(GVA) 800조 3,040억 원의 0.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어업생산 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 분	'06		'07		증 감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합 계	3,032	52,859	3,275	57,519	243	4,660
연 근 해	1,109	27,513	1,152	29,391	43	1,878
양 식	1,259	14,432	1,386	15,995	127	1,563
내 수 면	25	2,004	27	2,231	2	227
원 양	639	8,910	710	9,901	71	991

자료 : 농림수산물부 어업생산통계

〈표 9〉 어업총생산(부가가치) 현황 (단위 : 10억원, %)

구 분	'06p	'07	증 감 률
국내총생산(GDP)	848,045	901,189	6.3
국내총부가가치(GVA)	754,004	800,304	5.8
○ 농 림 어 업	24,635	23,982	△0.16
- 어 업	1,560	1,482	△4.9
· GDP 구성비	0.18	0.16	-
· GVA 구성비	0.21	0.19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3. 어선등록 현황*

2007년 말 어선등록 현황은 85,627척에 663,869톤으로 2006년 말에 비하여 척수는 486척(0.6%)이 감소하였고, 톤수도 9,850톤(1.5%)이 감소하였다.

전체 어선중 동력어선은 82,796척으로 96.7%, 톤수는 661,519톤으로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별 척수는 연근해어선이 73.7%, 양식어선이 19.1%, 내수면어선이 4.7%, 원양어선이 0.5%, 기타가 2.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10〉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5	'06	'07	'07 / '06
합 계	척 수	90,735	86,113	85,627	99.4
	· 동 력	87,554	83,358	82,796	99.3
	· 무동력	3,181	2,755	2,831	102.7
	톤 수	700,810	673,719	663,869	98.5
연 근 해	· 동 력	697,956	671,299	661,519	98.5
	· 무동력	2,854	2,420	2,350	97.1
	척 수	64,579	63,518	63,100	99.3
양 식	톤 수	322,811	312,580	308,512	98.7
	척 수	18,244	16,337	16,352	100.1
내 수 면	톤 수	27,131	23,955	25,226	105.3
	척 수	4,164	4,150	4,000	96.4
원 양	톤 수	3,518	3,558	3,354	94.3
	척 수	493	483	470	97.3
기 타	톤 수	257,614	258,422	249,952	96.7
	척 수	3,255	1,625	1,705	104.9
기 타	톤 수	89,736	75,204	76,825	102.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선질별로는 합성수지선(FRP선)이 전체 어선척수의 76.2%, 목선이 21.0%, 강선이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톤수에 있어서는 합성수지선(FRP선)이 30.3%, 목선이 5.5%, 강선이 64.2%를 차지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또한, 톤급별로 보면 5톤 미만 어선은 전체 척수의 87.2%로서 전체 톤수의 18.7%를 차지하고 있고, 5톤 이상 50톤 미만 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각각 10.7%,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50톤 이상의 대형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각각 2.1%, 64.6%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 선질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5	'06	'07	'07/ '06
합 계	척 수	90,735	86,113	85,627	99.4
	톤 수	700,810	673,719	663,869	98.5
목 선	척 수	22,281	18,954	17,981	94.9
	톤 수	49,697	40,313	36,606	90.8
강 선	척 수	2,623	2,344	2,392	102.0
	톤 수	445,359	432,664	426,248	98.5
합성수지선 (FRP선)	척 수	65,831	64,815	65,254	100.7
	톤 수	205,754	200,742	201,015	100.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표 12〉 톤급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5		'06		'07		'07/ '06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합 계	90,735	700,810	86,113	673,719	85,627	663,869	99.4	98.5
1톤 미만	30,962	20,069	29,753	19,390	28,839	18,873	96.9	97.3
1~5톤 미만	47,253	111,343	44,892	104,709	45,790	105,618	102.0	100.9
5~50톤 미만	10,607	123,424	9,586	114,916	9,141	110,924	95.4	96.5
50~100톤 미만	1,024	75,783	1,012	75,147	991	73,630	97.9	98.0
100~200톤 미만	346	50,640	341	49,914	341	49,848	100.0	99.9
200톤 이상	543	319,551	529	309,643	525	304,976	99.2	98.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4. 이용어장

가. 연근해어장*

수산업법상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의 해역범위는 동해·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수역을 제외한 수역은 해외어장으로서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1960년대에 제주도 인근 수역에서 ‘소코트리어장’으로, 1970년대 이후에는 서해, 동중국해 및 동해의 ‘대화퇴 어장’까지 조업어장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들 어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로 한·중·일 3국이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 이하 EEZ라 함)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21세기 신해양질서”에 맞는 새로운 어업 질서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1996년 5월 이후 17차에 걸쳐 어업협정 개정 실무 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 11월 28일자로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다음 해인 1999년 1월 22일 협정을 발효시킴에 따라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으로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속한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정부와 협상한 결과, 2000년 8월 3일 『한·중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이어 상호 입어조건에 대한 교섭을 거쳐 2001년 6월 30일 동 협정을 정식 발효시키게 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우리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EEZ내 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2005년 6월 30일부터 양국의 과도수역이 각각 EEZ로 편입되어 우리의 배타적 어업수역이 확대되었다.

한편, 중·일간의 어업협정에 있어서도 1997년 11월 11일 서명 이후 담보 상태에 머물다가, 2000년 6월 1일 발효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주변수역은 완전히 EEZ 어업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장도 한·중·일 3국의 어업협정 체제에 의한 EEZ와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나. 원양어장*

원양어업은 1957년 인도양에 참치시험조업 진출을 시발로 1970년대 초반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2차에 걸친 석유과동과 1977년부터 미국·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장은 급격히 축소됨은 물론,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로 원양어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88년 미국수역에서 북양트롤어선이 철수하고 1993년 북태평양에서 오징어 유자망조업이 중지되었으며,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와 1995년 8월 『유엔 공해어족보존협정』의 채택으로 공해조업도 해역 단위별로 공해자원에 대한 규제강화 및 다국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향후 공해 수산자원 이용도 상당히 규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1999년 1월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99년 11월 30일부터 일본 북해도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어선의 전면 철수 등으로 원양어업의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어업팀

다. 양식어장

1) 해면양식*

2007년 말 현재 해면 양식어장 면허면적은 약 13.2만ha이며, 육상수조식 및 축제식양식 등 허가어업은 2.9천ha이다. 이중 어촌계(수협)가 전체 면허어장의 82%인 약 10만8천ha를 소유·경영하고 있다.

〈표 13〉 품목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

구 분	'03	'04	'05	'06	'07	'07/'06
합 계	121,853	123,169	124,668	130,890	132,416	101
어 류	2,136 (1.8)	2,002 (1.6)	1,822 (1.5)	1,986 (1.5)	1,962 (1.5)	98.8
패 류	47,381 (38.9)	47,087 (38.2)	48,194 (38.7)	49,550 (37.9)	49,261 (37.2)	99.4
해 조 류	68,062 (55.8)	69,348 (56.3)	69,502 (55.7)	74,757 (57.1)	76,183 (57.5)	101.9
기 타 수산동물	4,274 (3.5)	4,732 (3.9)	5,150 (4.1)	4,597 (3.5)	5,010 (3.8)	109.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주 : ()는 구성비임

우리나라의 해면 양식어장 개발은 1960년대에 김, 미역 등 해조류 중심의 양식에서 1970년대에는 굴, 피조개 등 패류양식어업으로 발전되었고, 1980년대 부터는 넙치, 방어, 돔 등 어류와 진주조개 등 고소득 어·패류양식으로 확대 되었으며, 현재 양식되고 있는 품종은 넙치, 참돔, 조피볼락, 굴, 홍합, 고막, 전복, 김, 미역, 톳, 우렁챙이, 새우, 해삼 등 약 50여 종이며, 매년 새로운 품 종의 적극적인 개발로 양식품종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표 14〉 종류별·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단위 : ha, %)

구 분	'03	'04	'05	'06	'07	'07/'06
합 계	2,061	2,162	2,017	1,971	1,735	97.7
수조식양식 (어류·패류 등)	374 (18.1)	379 (17.5)	299 (14.8)	268 (13.6)	276 (15.9)	103.1
축제식양식 (어류·새우 등)	1,687 (81.9)	1,783 (82.5)	1,718 (85.2)	1,703 (86.4)	1,459 (84.1)	85.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주 : ()는 구성비임

2) 내수면양식*

우리나라 내수면 수면적은 5,751km²로서, 전 국토 99,678km²의 5.8%에 해당되며, 수면별로 보면 강·하천이 2,824km²(2.83%), 댐·호(湖)가 1,131km²(1.13%), 수로가 1,782km²(1.79%), 양식장 14km²(0.01%)로 구성되어 있다. **

내수면양식장은 2,471개소가 개발되었으며 뱀장어·미꾸라지·송어 등 약 25종을 생산하여 국민단백질 공급은 물론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유어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 * 지적통계연보(2007, 행정자치부)

〈표 15〉

2007년도 내수면 양식장 현황*

(단위 : m²)

구분	합 계		뱀장어		송어류		메기류		기 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471	10,687,748	468	2,140,113	246	524,725	272	1,083,721	1,485	6,939,189
서울	3	133							3	133
부산	53	137,732	1	4,950			2	5,720	50	127,062
대구	32	115,163	3	3,477			9	2,500	20	109,186
인천	4	20,753					1	9,729	3	11,024
광주	4	3,400							4	3,400
대전	2	2,279			1	682			1	1,597
울산	11	42,900	1	9,800	1	700			9	32,400
경기	227	556,640	15	41,280	10	28,826	56	113,269	146	373,265
강원	153	336,771	5	4,073	108	288,210	4	4,695	36	39,793
충북	161	389,178	3	3,795	38	67,233	25	119,041	95	199,109
충남	251	2,848,152	20	73,739	11	21,526	51	146,308	169	2,606,579
전북	804	3,183,763	123	533,741	19	41,659	88	486,126	574	2,122,237
전남	446	1,865,306	277	1,376,142	1	998	17	70,780	151	417,386
경북	124	330,018	1	4,686	51	68,788	12	76,353	60	180,191
경남	187	804,300	16	41,800	5	2,900	7	49,200	159	710,400
제주	9	51,260	3	42,630	1	3,203			5	5,42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 2007년 12월 말 현재 신고된 양식장 현황으로 지적통계연보(2007)와 차이가 있음

5. 어업 경영체

가. 연안어업*

2007년말 현재 연안어업 경영체 수는 총 150,365개로서 2006년도의 150,111개보다 254개가 증가하였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신고어업이 67,773개로 4,275개 증가되었으며, 연안 면허어업이 3,390개로 111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안허가어업은 어선감척사업으로 연안자망, 연안복합어업, 연안통발어업 등 전 업종이 감소하여 총 79,202개로 되었다.

연안어업은 대부분이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등 소규모 어업으로 겸업이 대부분이며, 1980년대 이후부터 임해공단시설 및 도시의 확장 등에 따른 공장폐수와 도시하수 등의 유입 그리고 대형선박 또는 유조선 등 사고에 의한 유류피해와 서해안 중심의 대단위 매립·간척사업으로 어장축소 등 어장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어업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또한, WTO체제 출범과 FTA체결 가속화로 인한 수산물 수입이 증가 경향에 있어 연안어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표 16〉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 %)

구 분	'03	'04	'05	'06	'07	'07/'06	
합 계	151,565	148,232	153,570	150,111	150,365	100.2	
해 가	소 계	91,466	89,760	88,394	83,334	79,202	95.0
	연안자망	25,473	25,034	24,825	23,320	22,151	95.0
	연안복합어업	43,422	42,263	41,703	39,374	37,161	94.4
	연안통발	10,344	10,248	10,161	9,436	9,088	96.3
	구획어업	8,242	8,292	7,876	7,611	7,446	97.8
	기타어업	3,985	3,923	3,829	3,593	3,356	93.4
면 해	소 계	3,095	2,926	3,279	3,279	3,390	103.4
	마을어업	2,539	2,447	2,726	2,726	2,835	104.0
	정치망어업	556	479	553	553	555	100
신 고	소 계	57,004	55,546	61,897	63,498	67,773	105.2
	맨손어업	51,535	49,954	56,348	57,561	61,631	107.1
	나잠어업	5,374	5,506	5,507	5,900	6,090	103.2
	투망어업	95	86	42	37	52	140.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나. 근해어업 *

근해어업 경영체는 2007년도에 4,056개로서, 전년도 4,246개보다 4.5%가 감소(190개)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근해어업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 측면에서 업종별로 허가정수가 설정되어 1992년 9월부터 새로운 허가의 전면 억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2003년 8월 근해어업의 전체 업종에 대한 허가정수 재조정 또는 신설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 경영체를 보면, 근해채낚기·근해자망·근해통발·근해형망·근해연승·대형기저·대형트롤·중형기저·근해선망·근해안강망·잠수기 등은 감소하였고, 근해트롤·근해형망은 소폭 증가하였다.

〈표 17〉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건, %)

구 분	'04	'05	'06	'07	'07 / '06
합 계	4,467	4,360	4,246	4,056	95.5
대 형 기 저	96	93	91	83	91.2
중 형 기 저	97	100	96	94	97.9
근 해 트 롤	102	98	97	99	102
근 해 선 망	86	85	84	82	97.6
근해채낚기	1,003	1,002	985	915	92.9
기선선인망	97	85	83	79	95.2
근 해 자 망	946	922	912	873	95.7
근해안강망	272	271	274	262	95.6
잠 수 기	237	237	236	236	-
근 해 통 발	455	437	421	401	95.3
근 해 형 망	159	143	136	138	101.5
근 해 연 승	839	809	753	743	98.7
근해봉수망	78	78	78	51	65.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다. 양식어업*

2007년 말 양식어업 면허건수는 9,352건이며, 품종별로는 굴 1,182(12.6%), 김 948(10.1%), 피조개 857(9.2%), 새고막 850(9.1%), 바지락 633건, 어류 560건, 미역 455건, 우렁챙이·복합양식 기타 3,867건이다.

그리고 허가어업인 해상종묘생산어업이 878건, 육상양식어업 1,673건(육상 수조식양식 1,313건, 축제식양식 360건), 육상종묘생산어업 1,253건으로 허가어업의 경우 총 3,804건이다.

〈표 18〉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소, %)

구분	'03	'04	'05	'06	'07	'07/'06
합계	8,839	9,046	9,110	9,297	9,352	102.0
김	1,166	1,159	944	971	948	81.4
굴	1,170	1,211	1,215	1,186	1,182	102.8
피조개	851	852	862	868	857	100.7
새고막	901	895	876	845	850	96.4
바지락	640	607	631	614	633	97.3
미역	733	547	499	495	455	99.2
어류	612	596	570	574	560	100.7
우렁챙이	500	488	473	503	494	106.3
기타	2,266	2,691	3,040	3,241	3,373	106.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품종별 경영형태를 보면 어류 및 기타 수산물양식은 개인과 협업경영체가 주로 경영하고 있으며, 해조류양식은 어촌계의 경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김, 미역 등 해조류양식의 경우, 양식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자본 또한 적게 들기 때문에 어촌계 위주의 소득원으로 개발되어 저소득 어업인들이 주로 경영하고 있는 반면, 어류와 전복·진주조개·우렁챙이·새우·가리비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양식 등은 많은 자본과 양식기술이 요구되므로 개발능력이 있는 자가 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9〉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구 분	'03	'04	'05	'06	'07	'07/'06
합 계	121,853	123,169	124,668	130,890	131,439	100.4
어촌계 및 수협	96,302	98,169	100,208	106,649	108,242	101.5
개인 및 협업	25,551	25,000	24,460	24,241	23,197	95.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라. 내수면어업*

2007년 말 내수면양식어업의 경영체 수는 2,471개소로 전년 보다 178개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내수면 양식어류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입 되는 값싼 수입수산물과의 경쟁이 지속됨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자본력과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양식업체가 감소하는 대신 첨단시설을 갖춘 대규모 양식장 위주로 경영체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표 20〉 2007년도 내수면 양식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 %)

양식어종	'03	'04	'05	'06	'07	'07/'06
합 계	3,124	2,923	2,786	2,649	2,471	93.3
잉 어	335	317	320	343	229	107.2
향 어	155	140	105	86	74	86.0
뱀장어	389	417	457	480	468	97.5
송 어	321	296	268	250	246	98.4
기 타	1,924	1,753	1,636	1,490	1,454	97.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마. 원양어업*

2007년도 원양어업 경영체는 2006년도 109개사 보다 1개사가 증가한 110개사이며, 업체별 규모를 살펴보면 1~2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한 업체가 74개사로서, 전체의 6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원양업체 경영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7년도 현재 원양어선은 전년도 392척보다 5척이 감소한 387척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참치선 193척, 오징어선 30척, 트롤선 122척, 기타 42척이었다.

우리나라 원양업체 및 어선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들의 조업규제 강화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인상 등 어업여건의 악화로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경영체의 부도 등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21〉

원양업체 경영규모 추이

(단위 : 개사, %)

구 분	'04	'05	'06	'07	'07/'06
합 계	121	112	109	110	100.9%
1척	58	53	51	52	102.0
2척	28	21	20	22	110.0
3~5척	20	23	24	20	83.0
6~10척	4	6	6	9	150.0
11~20척	9	7	6	5	83.0
21척 이상	2	2	2	2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제 2 절 어가 경제*

1. 어가소득

2007년 어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0,668천 원으로 전년(30,006천 원)에 비해 2.2%(662천 원) 증가하였다. 어업소득은 3.2%, 어업외 소득은 6.0% 증가하였으며, 어가 소득 중 어업소득의 비중이 39.0%로 전년에 비해 0.3% 증가하였다. 어가소득은 농가소득의 95.9%, 도시가계 소득의 69.5% 수준이다.

〈표 22〉

어 가 소 득

(단위 : 천원, %)

구 분	'03	'04	'05	'06	'07	'07/'06
[어 가 소 득]①	23,916	26,159	28,028	30,006	30,668	102.2
경 상 소 득	20,221	22,604	23,594	24,692	25,868	104.8
어업소득	10,741	11,959	11,950	11,603	11,975	103.2
어업외 소득	8,619	9,168	9,399	10,361	10,981	106.0
이전소득	861	1,477	2,245	2,728	2,913	106.8
비 경 상 소 득	3,695	3,555	4,434	5,315	4,799	90.3
[농 가 소 득]	26,878	29,001	30,503	32,303	31,967	99.0
[도시가계소득]	35,280	37,360	39,010	41,321	44,105	106.7

자료 : 통계청, 2007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① 어가소득=경상소득(어업소득+어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표 23〉

어업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03	'04	'05	'06	'07	'07/'06
어업소득	10,741	11,959	11,950	11,603	11,975	103.2
어업총수입	23,114	25,144	26,576	25,910	26,535	102.4
어업경영비	12,373	13,185	14,626	14,307	14,560	101.8

자료 : 통계청, 2007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어업소득 = 어업총수입 - 어업경영비

〈표 24〉

어업외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03	'04	'05	'06	'07	'07/'06
어업외소득	8,619	9,168	9,399	10,361	10,981	106.0
겸업소득	4,176	4,350	4,559	5,082	5,689	111.9
사업외소득	4,443	4,817	4,840	5,279	5,292	100.2

자료 : 통계청, 2007 어업기본통계조사

2. 어가 가계지출

2007년도 어가가계지출은 22,963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3.9%(922천 원) 감소하였는데, 소비지출은 18,263천 원으로 전년(18,156천 원)에 비해 0.6% (107천 원) 증가하였으나, 비 소비지출이 4,700천 원으로 전년(5,729천 원)에 비해 18.0% (1,029천 원) 감소하였다.

〈표 25〉

가계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03	'04	'05	'06	'07	'07/'06
가계지출	20,019	21,081	22,896	23,885	22,963	△3.9
소비지출	16,249	16,602	17,682	18,156	18,263	0.6
비소비지출	3,770	4,479	5,214	5,729	4,700	△18.0

자료 : 통계청, 2007 어업기본통계조사

3. 어가자산

2007년 말 현재 어가의 평균자산은 225,992천 원으로 전년(209,644천 원)에 비해 7.8%(16,348천 원) 증가하였는데,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4.2%(6,236천 원), 16.3%(10,140천 원) 증가하였다.

〈표 26〉

어 가 자 산

(단위 : 천원)

구 분	'03	'04	'05	'06	'07	'07/'06
어 가 자 산	140,477	160,698	183,841	209,644	225,992	107.8
고 정 자 산① (구 성 비)	100,400 (71.5)	111,870 (69.6)	127,397 (69.3)	147,247 (70.2)	153,483 (67.9)	104.2 -
유 동 자 산② (구 성 비)	40,077 (28.5)	48,828 (30.4)	56,443 (30.7)	62,369 (29.8)	72,509 (32.1)	116.3 -

자료 : 통계청, 2007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선박 및 기계·기구·비품, 대동물, 대식물, 무형자산

② 미처분농수산물, 사용중인어업용자재 등 채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4. 어가부채

2007년 말 현재 어가부채는 가구당 34,407천 원으로 전년(34,422천 원)에 비해 15천 원 감소하였다. 어업용 부채는 3.4%(585천 원) 감소한 반면, 어업용 이외 부채가 3.3%(569천 원) 증가하였으며, 어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부채/당좌자산 비율은 53.5%로 전년(63.9%)에 비해 개선(10.4% 하락) 되었다.

〈표 27〉

어 가 부 채

(단위 : 천원, %)

구 분	'03	'04	'05	'06	'07	'07/'06
어 가 부 채(A)	29,836	32,544	34,531	34,422	34,407	99.96
어 업 용 부 채 (구 성 비)	16,696 (56.0)	17,665 (54.3)	18,560 (53.7)	17,275 (50.2)	16,690 (48.5)	96.6 -
어업용이외 부채 (구 성 비)	13,140 (44.0)	14,880 (45.7)	15,971 (46.3)	17,148 (49.8)	17,717 (51.5)	103.3 -
당 좌 자 산(B)	32,585	40,159	47,608	53,865	64,341	119.4
단기상환능력[(A/B)×100]	91.6	81.0	72.5	63.9	53.5	△10.4%p

자료 : 통계청, 2007 어업기본통계조사

주 : 어업용 이외 부채는 가계용+겸업용+기타용 부채임

제 3 절 수산물 생산

1. 생산동향*

2007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은 전년(3,032천 톤) 보다 8.0%(239천 톤) 증가된 3,275천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근해에서 고등어, 참조기의 어획량의 증가와, 굴 양식생산량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에 기인된다.

〈표 28〉 어업 생산 현황 (단위 : 톤, %)

구 분	'03	'04	'05	'06	'07	'07/'06
합 계	2,487,042	2,519,101	2,714,034	3,032,116	3,274,823	108.0
연근해어업	1,096,526	1,076,687	1,097,041	1,108,815	1,152,299	103.9
양식어업	826,245	917,715	1,041,058	1,259,274	1,385,804	110.0
내수면어업	19,680	25,299	23,839	24,843	26,760	107.7
원양어업	544,591	499,400	552,096	639,184	709,960	111.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7 어업생산통계

2. 연근해어업

2007년도 연근해어업(일반 해면어업) 생산량은 1,152천 톤으로 전년도 (1,109천 톤)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 3,275천 톤 중 3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근해어업의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체 수(허가건수)는 2007년도 83,258개로서 전년(90,859개)에 비해 8.4%(7,601개)가 감소되었고, 이중 생산량의 비중이 큰 근해어업의 경영체는 2007년에 4,056개로, 전년(4,246개)에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비해 4.8%(190개)가 어선감척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전체 생산량과 경영체당 생산량은 전년 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별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 경영체의 감소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는 단위생산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어패류 및 해조류 등 품종별 생산량 동향은 어류의 생산량이 761천 톤으로 전년(715천 톤)에 비해 6.6%(46천 톤) 증가, 갑각류의 생산량은 85천 톤으로 전년(73천 톤)에 비해 15.7%(12천 톤) 증가, 패류의 생산량은 73천 톤으로서 전년(80천 톤)에 비해 8.4%(7천 톤) 감소, 연체동물의 생산량은 205천 톤으로 전년(220천 톤)에 비해 6.5%(15천 톤) 감소하였고, 해조류의 경우는 생산량이 18천 톤으로서, 전년(14천 톤)에 비해 22.2% (4천 톤)가 증가하였다

가.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은 50~130톤급 어선에 의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소hook산도, 제주도 및 동해남부해역 등에서 고등어·정어리·전갱이·삼치 등을 주 대상으로 연중 조업이 이루어지는 연근해어업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업종의 하나이다.

선망어업은 2005년도 이후 실시하고 있는 한달간의 자체휴어기를 2007년에도 4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실시하였으며, 주요 대상종인 고등어 어황의 호조로 전년(146,839 톤)에 비해 32.2% 증가한 194,093 톤에 머물렀다.

나.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60~140톤급 어선 1척이 조업하는 '외끌이어업'과 2척으로 조업하는 '쌍끌이어업'으로 구분되며, 서·남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로 갈치·가자미·조기류 등을 어획하는 어업이다.

특히, 쌍끌이어업은 갈치·조기류·멸치 등의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2007년 생산

량은 76,290톤으로 전년(95,971톤)보다 20.5%가 감소하였다.

다.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20~60톤급 어선으로 동해 일원에서 오징어·가자미·도루묵·새우류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과, 서·남해에서 가자미·아귀·강달이·새우·갑오징어 등을 어획하는 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외끌이어업’과 ‘쌍끌이어업’으로 구분)으로 구분되고 있다.

동 어업의 어획량은 2004년 일시 감소하였다가 2005년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7년 생산량은 전년(23,790톤)보다 21.9% 증가한 28,996톤을 생산하였다.

라.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오징어·갈치·복어 등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주 어획대상이 되고 있는 오징어어장은 어군의 북상기에 따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형성되고 있다.

여기를 해역별로 보면 남해안에서는 제주도~대마도간 해역을 중심으로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서해안에서는 격렬비열도를 중심으로 7~11월, 동해안에서는 동해남부해역으로부터 강원도 및 대화퇴 근해에 걸쳐서 6~12월에 어장이 형성된다. 이중 동해안에서의 어획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갈치어장은 주로 5~12월에 제주도 주변 및 제주도 동남해역에서 형성되고 있고, 복어어장은 1~4월에 중국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의한 “중·일 잠정조치수역” 하단해역과 6~10월의 제주도 서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근해채낚기어업은 오징어의 어획량이 소폭 감소(4,233톤)하여 2007년도에는 62,657톤을 생산하여 전년(66,082톤) 보다 5.2% 감소하였다.

마.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갈치·조기·멸치·강달이·아귀·꽃게 등을 어획하고 있으며, 계절과 조류의 흐름에 따라 남북방향으로 어장 분포 범위가 변동한다.

또한, 동중국해에서의 어획대상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 간 대폭적인 어선감척으로 생산량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갈치·조기 등의 어황이 다소 부진하여, 2007년도에는 72,553톤을 생산하여 전년(74,496톤)보다 2.6% 감소하였다.

바. 기선선인망(권현망)어업

기선선인망어업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업중 규모가 가장 큰 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톤급 미만의 본선을 비롯, 가공선·어탐선·운반선이 1개의 선단을 이루어, 남해연안 일대에서 멸치를 주 어획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멸치는 전형적인 연안 회유성 어종으로 해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량은 해황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7년에는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해역에서 중심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생산량은 108,934톤으로 전년(142,618톤) 보다 23.6% 감소하였다.

사. 자망어업

자망어업은 동·서·남해에서 조기·멸치·꽂치·꽃게 등을 주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조기는 서해남부해역에 목이생물이 풍부하여 어장이 형성되면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 생산량은 114,025톤으로 전년(102,874톤)보다 10.8% 증가하였다.

아. 근해트롤어업

근해트롤어업은 70~140톤급 어선으로 서·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오징어·

갈치·병어·삼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대형트롤어업과 20~60톤급 어선으로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에서 새우류·가자미·도루묵·청어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트롤어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형트롤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말쥐치의 대량어획으로 호황을 이루다 이후 대상자원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간 어선감축으로 인해 최근의 단위생산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해구트롤어업은 처음에는 새우트롤어업으로 번성하여 왔으나, 이후 대상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영에 애로를 겪어오다가 최근 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늘어 생산량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근해트롤어업의 주 어획대상 어종이 되고 있는 오징어 내유량이 다소 감소하여 2007년 생산량은 99,009톤으로 전년(108,386톤)보다 8.7% 감소하였다.

자. 통발어업

통발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 어선부터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 규모도 다양하다. 이 어업은 어획대상에 따라 장어통발, 기타통발(어류·게류·고등류), 문어단지로 구분된다.

장어통발어업은 통영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1990년대 들어 자원 감소 및 어장축소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통발 중 대형어선은 양자강 하류의 동중국해에서 꽃게를 대상으로 조업을 하여 왔으나,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우리 EEZ로 이동 조업을 하게 되어, 자망, 저인망, 연안어업 등 기존어업과 경쟁조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75,043톤을 생산하여 전년(63,533톤)보다 18.1% 증가하였다.

차. 연승어업

연승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어선에서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 규모도 다양하다.

주 어획대상으로 갈치·옥돔·아귀·복어·가자미·장어·불락류 등이며, 일반적으로 망어구에 의한 조업이 불가한 암초지역에서 조업이 간단히 이루어져 기업형 보다는 선주 겸 선장 형태의 소규모 형태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16,975톤을 생산하여 전년(16,472톤) 보다 3.1% 증가하였다.

〈표 29〉 연근해 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04	'05	'06	'07	'07/'06
합 계	1,076,687	1,097,041	1,108,815	1,152,299	103.9
대 형 선 망	220,004	173,795	146,839	194,093	132.2
대형기선저인망	77,041	86,215	95,971	76,290	79.5
중 형 기 저	17,637	21,718	23,790	28,996	121.9
근 해 채 낚 기	66,845	62,891	66,082	62,657	94.8
안 강 망	64,432	67,691	74,496	72,553	97.4
권 현 망	104,846	132,146	142,618	108,934	76.4
자 망	82,877	99,891	102,874	114,025	110.8
근 해 트 롤	123,692	101,606	108,386	99,009	91.3
통 발 어 업	54,411	60,756	63,533	75,043	118.1
연 승 어 업	11,373	14,830	16,472	16,975	103.1
마을·구획어업	51,142	75,805	77,447	87,470	111.5
기 타	202,387	199,697	199,307	216,254	108.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7 어업생산통계

3. 양식어업*

2007년도 천해양식어업은 입식물량의 증가 및 본격 출하 등의 이유로 전체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10%가 증가한 1,386천 톤으로 나타났다.

어류양식의 경우 2006년도에는 91천 톤이 생산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입식물량 증가, 출하가격 상승에 따른 입식물량의 본격 출하로 7%가 증가한 98천 톤을 생산하였으며, 주요 생산어종은 넙치·조피볼락·돔·숭어·농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패류양식의 경우, 안정된 해황의 장기간 지속과 양호한 생육으로 굴, 홍합, 고막, 바지락, 전복, 키조개 등의 생산이 늘어난데 힘입어, 2007년도 생산량은 전년도 391천 톤 보다 22%(87천 톤)가 늘어난 478천 톤을 생산하였다. 품종별로는 굴이 321천 톤으로 패류 생산량의 67%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홍합(98천 톤), 고막(28천 톤), 바지락(18천 톤)의 순을 보였다.

미역과 김·다시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해조류양식은 전년도(765천 톤) 대비 3.7%(28천 톤)가 늘어난 793천 톤을 생산하였다. 그 중 미역이 309천 톤으로 39%를 차지하였고, 다시마는 31.5%인 250천 톤, 김이 26.6%인 211천 톤을 생산하였으며, 기타 톳·파래·청각 등은 전년도 23.1천 톤과 비슷한 22.9천 톤이 생산되었다.

기타 수산동물양식은 대하·우렁챙이·미더덕·새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우렁챙이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2007년도에는 전년(12.2천 톤) 대비 36% 증가한 16.5천 톤이 생산되었다.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표 30〉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구 분		'04	'05	'06	'07	'07/'06
합 계		917,715	1,041,058	1,259,274	1,385,804	110.0
어류	소 계	64,476	81,421	91,123	97,663	107.2
	넙 치	32,141	40,059	43,852	41,171	93.9
	조피볼락	19,576	21,297	27,517	35,564	129.2
	기 타	12,759	20,065	19,754	20,928	105.9
패류	소 계	304,889	326,255	391,060	478,646	122.4
	굴	239,270	251,706	283,296	321,276	113.4
	홍 합	20,409	43,953	81,617	98,121	120.2
	바 지 락	27,570	17,401	14,327	18,819	131.4
	피 조 개	3,134	2,548	2,064	3,015	146.1
	기 타	14,506	10,647	9,756	37,415	383.5
해조류	소 계	536,748	621,156	764,913	792,953	103.7
	미 역	261,574	281,871	322,371	309,097	95.9
	다 시 마	22,510	108,327	201,919	250,049	123.8
	김	228,554	197,610	217,559	210,956	97.0
	기 타	24,110	33,348	23,064	22,851	99.1
기타수산 동물		11,602	12,226	12,178	16,542	135.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7 어업생산통계

주 : 기타 수산동물은 대하, 우렁챙이, 미더덕 등

4. 내수면어업*

2007년 내수면어업 생산은 전년도 24.8천 톤에 비해 7.6%가 증가한 26.7천 톤이었다. 이 중 어로어업의 생산량이 5.8천 톤 수준으로 전체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은 20.9천 톤으로 대형화된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점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

내수면 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03	'04	'05	'06	'07	'07/'06
합 계	19,680	25,299	23,839	24,843	26,760	107.7
어로어업	6,080	10,302	7,500	7,139	5,803	81.3
가 물 치	6	24	13	14	28	200.0
메 기	99	146	229	214	149	69.6
미꾸라지	6	0	1	0	0	-
뱀 장 어	20	37	35	46	40	86.9
붕 어	1,004	1,397	1,145	1,051	1,295	123.2
송 어 류	0	0	0	0	0	-
잉 어	947	1,430	1,211	961	825	85.8
피 라 미	120	50	21	46	47	102.2
패류(재첩 등)	1,465	3,981	1,400	1,171	829	70.8
기 타	2,413	3,237	3,445	3,636	2,590	71.2
양식어업	13,600	14,997	16,339	17,704	20,957	118.4
가 물 치	314	278	252	287	285	99.3
민 물 돍	717	302	268	272	798	293.4
뱀 장 어	4,312	5,168	5,775	7,966	10,557	132.5
잉 어	190	231	429	320	269	84.1
향 어	920	702	973	706	800	113.3
송 어 류	3,521	3,502	3,320	1,878	2,882	153.5
기 타	3,626	4,814	5,322	6,275	5,366	85.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7 어업생산통계

*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제 4 절 수산물 수출·입*

1. 수 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00년까지 15억\$ 이상을 유지해 왔으나, 국내외 수출환경의 악화로 2001년도에 12억\$로 감소한 이래 최근 5년간 11억\$ ~ 12억\$ 내외의 정체를 보임에 따라 총 수출액에서 수산물 수출이 점유하는 비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7년도의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물량은 168천톤 증가(45.8%)하였고, 금액도 137백만\$ 증가(12.6%)하였다.

〈표 32〉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 %)

구 분	'04	'05	'06	'07	'07/'06
총 수 출	253,845	284,419	325,465	371,489	114.1
수 산 물	1,279	1,193	1,089	1,226	112.6
구 성 비	(0.5)	(0.4)	(0.3)	(0.3)	-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가. 품목별 수출현황

활어는 2001년 이후 넙치, 붕장어 등의 지속적인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6년 75백만\$을 수출하였으나, 2007년에는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한 63백만\$을 수출하였다. 프클랜드어장에서의 오징어 어획의 호조로 인한 냉동오징어 수출증가로 냉동수출물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37.6%증가한 741백만\$을 수출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표 33〉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톤, 천\$,%)

구 분	'05		'06		'07		'07/'06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11,878	1,193,117	367,498	1,088,948	536,009	1,225,832	89.2	91.3
활 어	8,514	89,695	6,238	74,712	5,281	62,965	73.3	83.3
신선·냉장	24,237	136,795	21,648	128,473	18,896	111,870	89.3	93.9
냉 동	278,865	595,113	252,891	538,462	419,623	741,135	90.7	90.5
기 타	100,262	371,514	86,721	347,301	92,209	309,862	106.3	89.2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07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나. 국가별 수출현황

2007년도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46.7%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중국은 2006년도 제3위의 국가에서 2007년에는 제2위의 수출대상국가로 부상하였으나 미국은 전년도에 비하여 수출이 소폭 증가(3.1%)함에 그쳐 제3위로 한단계 내려 앉았다. 미국, 중국, 태국, 뉴질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등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일본, 대만, 홍콩,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2007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국가는 108개국이며, 국별 비중은 일본 46.7%, 중국 12.8%, 미국 8.1%, 태국 7.2%, 뉴질랜드 5.6% 등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표 34〉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천\$, %)

구 분	'04	'05	'06	'07	'07/'06
합 계	1,278,638	1,193,117	1,088,948	1,225,832	112.6
일 본	834,649	741,062	659,523	572,908	86.9
미 국	81,130	88,174	95,613	98,876	103.4
중 국	124,102	108,031	75,414	156,565	207.6
태 국	37,565	57,383	61,688	87,678	142.1
뉴 질 랜 드	44,544	60,478	39,383	68,293	173.4
스 페 인	36,702	31,519	28,167	58,655	208.2
대 만	20,177	13,196	18,453	17,540	95.1
홍 콩	15,334	8,895	12,514	11,331	90.5
이 탈 리 아	14,030	11,253	11,620	25,346	218.1
러 시 아	4,249	4,468	8,015	11,072	138.1
캐 나 다	6,172	9,025	7,247	7,065	97.5
멕 시 코	1,006	1,644	6,834	6,336	92.7
인도네시아	4,337	5,869	6,466	9,011	139.4
베 트 남	6,551	4,570	5,194	8,812	169.7
기 타	53,345	47,550	52,817	86,344	163.5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표 35〉

주요 어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 %)

구 분	'04	'05	'06	'07	'07/'06
합 계	1,278,638	1,193,117	1,088,948	1,225,832	112.6
참 치	249,915	226,399	227,964	275,153	120.7
김	45,031	54,244	61,730	59,728	96.8
굴	76,641	61,204	55,508	40,145	72.3
넙 치	55,423	63,684	51,969	44,154	85.0
오 징 어	113,020	102,131	47,399	123,768	261.1
캐비아(대용)	46,817	56,741	44,019	13,097	29.8
붕 장 어	51,939	49,161	43,009	37,938	88.2
계 살	46,426	41,163	36,210	32,275	89.1
툰	30,614	23,939	23,773	24,525	103.2
미 역	35,885	29,868	21,761	17,667	81.2
한 천	8,550	15,529	18,535	10,784	58.2
바 지 락	24,998	18,040	17,766	12,662	71.3
전 복	3,375	9,024	17,123	15,040	87.8
삼 치	16,465	21,086	15,535	26,869	172.9
피 조 개	19,729	19,054	14,379	13,998	97.4
새 우	4,162	5,836	14,012	8,340	59.51
이 빨 고 기	9,565	6,607	11,653	13,471	115.6
전 갱 이	17,712	11,848	11,035	12,946	117.3
덤	7,392	9,005	10,940	21,250	194.2
새 꼬 리 민 태	11,829	15,315	9,565	13,281	138.2
기 타	403,150	353,239	335,063	408,741	122.0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 수 입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은 국내생산량의 한계 및 수요증가, 1997년도 수입 자유화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2001년도 무역수지 적자 전환 이래 최근 5년간 연평균 224백만 \$ 씩 증가 하였으며 그 결과 5년전인 2002년도의 수입이 1,884백만 \$(물량 1,186천 톤)이 었으나 2007년도 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0.4%(287백만 \$) 증가한 3,056백만 \$ 을 보였다.

이렇게 수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국내 수산물 소비량 증가의 결과이며 <표 39>에서 보듯이 연도별 총 수입액 대비 수산물 수입 점유비율도 1%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표 36>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톤, 백만 \$, %)

구 분	'04	'05	'06	'07	'07/'06
총 수 입	224,463	261,238	309,383	356,846	115.3
수 산 물	2,261	2,384	2,769	3,056	110.4
구 성 비	(1.0)	(0.9)	(0.9)	(0.9)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가. 품목별 수입현황

수산물 수입의 약 60%를 점유하는 냉동품이 꾸준한 증가를 보여 2007년도 에는 전년도 대비 11.4% 증가한 1,873백만 \$ 의 수입실적을 나타내었으며 활어의 경우도 전년대비 13.8% 증가한 408백만 \$ 을 보였고 신선·냉장 수산물도 8.6% 증가한 반면 기타 수산물은 8.5% 감소하였다.

제품유형별로 볼때 수산물수입은 냉동품(61.3%), 신선냉장(13.4%), 조제품(9%), 활어(7.35%), 기타수산물(4.2%), 건조(3.02%)등의 순이었다.

〈표 37〉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톤, 천\$, %)

구 분	'05		'06		'07		'07/'06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256,142	2,383,574	1,377,101	2,769,348	1,391,506	3,056,368	101.0	110.4
활 어	38,363	176,449	43,108	197,501	44,384	224,675	102.9	113.8
신선·냉장	120,772	330,782	146,220	374,837	142,379	408,278	97.4	108.9
냉 동	897,493	1,406,323	977,301	1,660,663	1,007,531	1,872,942	103.1	112.8
기 타	199,514	470,020	210,472	535,135	197,212	550,473	93.7	102.9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나. 국가별 수입현황

2007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일본, 동남아국가, 남미 및 노르웨이 등 대부분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 수입액이 2006년도 보다 9.4% 증가한 3,056백만\$을 보인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 노르웨이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55.1%, 48.1%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인디아 및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21.4% 및 18.9% 감소하였다.

2007년도 현재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는 107개국으로 전년도 126개국에 비해 19개국이 감소하였으며, 국별 수입비중은 중국 35%, 러시아 13.9%, 일본 8.9%, 베트남 8.8%, 태국 4.9%로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입의 71.5%를 점유하여 전년도의 70.8%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8〉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천\$, %)

구 분	'04	'05	'06	'07	'07/'06
합 계	2,261,356	2,383,574	2,769,348	3,056,368	110.4
중 국	909,536	936,351	1,034,192	1,070,862	103.5
러 시 아	276,783	277,216	347,079	423,392	122.0
일 본	180,620	173,140	224,311	273,477	121.9
베 트 남	143,524	163,642	206,482	267,964	129.8
미 국	136,225	152,555	150,544	144,242	95.8
태 국	106,521	125,147	144,463	149,270	103.3
대 만	61,668	63,533	85,698	83,342	97.3
칠 레	43,935	57,076	83,513	80,050	95.9
캐 나 다	46,582	42,474	50,157	52,544	104.8
노 르 웨 이	35,226	29,146	41,609	61,615	148.1
페 루	23,809	23,910	36,977	37,416	101.2
인 도 네 시 아	29,008	33,630	35,645	55,280	155.1
인 디 아	24,035	19,981	27,350	21,497	78.6
필 리 핀	28,097	21,800	26,788	21,729	81.1
영 국	25,543	30,182	23,594	21,543	91.3
기 타	190,244	233,791	250,946	292,145	116.4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표 39〉

어종별 수입현황

(단위 : 천\$, %)

구 분	'04	'05	'06	'07	'07/'06
합 계	2,261,356	2,383,574	2,769,348	3,056,368	110.4
명 태	274,119	277,687	289,204	363,836	125.8
새 우	159,014	167,451	219,122	246,759	112.6
조 기	130,173	142,713	147,873	164,644	111.3
갈 치	101,903	100,306	102,892	109,767	106.7
오징어	48,916	64,144	85,971	86,192	100.3
꽃 게	89,928	67,717	82,359	82,249	99.9
낙 지	63,278	67,029	81,993	125,526	153.1
어 란	76,887	53,749	79,405	70,231	88.4
아 귀	52,504	60,101	72,062	77,425	107.4
새우살	43,412	46,553	60,496	83,003	137.2
참 치	34,349	48,333	60,455	93,633	154.9
돔	37,700	41,666	57,941	58,464	100.9
연 어	27,204	36,000	56,853	71,509	125.8
문 어	40,716	43,004	51,775	6,191	12.0
계	25,696	35,533	49,068	49,033	99.9
캐비아	30,751	56,714	43,210	34,483	79.8
고등어	47,856	25,839	42,358	56,609	133.6
꽁 치	29,719	28,344	37,938	36,509	96.2
쥐 치	29,206	27,697	34,778	38,113	109.6
대 계	36,289	31,148	33,782	42,888	127.0
기 타	881,736	961,846	1,079,813	1,159,304	107.4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제 5 절 수산물 수급 및 가격*

1. 수 급

2007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 동향은 중국산 수산물 수입증가로 총 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4.3% 증가한 6,454천 톤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4,625천 톤을 소비하였고, 1,211천 톤은 수출하였으며, 나머지 618천 톤은 2008년도 재고물량으로 이월되었다.

공급측면에서는 일반 해면어업 1,152천 톤, 천해양식어업 1,386천 톤, 그리고 원양어업에서 710천 톤 등 3,275천 톤이 생산되어, 국내소비도 1.2%로 늘어났으며, 공급 부족분은 수입 2,604천 톤과 전년도 재고량 575천 톤으로 충당하였다.

〈표 40〉

수산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

구 분		'03	'04	'05	'06	'07	'07/'06
공 급	생 산	2,486	2,519	2,714	3,032	3,275	108.0
	수 입	2,268	2,477	2,557	2,646	2,604	98.4
	전년재고	769	573	531	512	575	112.3
합 계		5,523	5,569	5,802	6,190	6,454	104.3
수 요	국내소비	3,578	3,922	4,169	4,568	4,625	101.2
	수 출	1,202	1,116	1,121	1,047	1,211	115.7
	차년이월	743	531	512	575	618	107.5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2. 소 비

2006년도 기준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4.2kg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한 소비형태를 보였으며, 국민들에 대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비율에 있어서도 수산물 비중은 2005년의 42.1%에 비하여 2006년에는 41.9%로 낮아졌다.

〈표 41〉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단위 : kg/연간,%)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44.7	44.9	49.0	49.5	54.2	109.5
어 패 류	36.3	38.5	41.1	39.9	41.2	103.3
해 조 류	8.4	6.4	7.9	9.6	13.0	135.4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06)』
 주 : 1인당 소비량은 순식품 기준임

〈표 42〉 **동물성 단백질 공급현황** (단위 : g/1인당 1일, %)

구 분	'02	'03	'04	'05	'06	'06/'05
합 계	45.85	46.11	46.66	45.43	46.7	102.8
축 산 물	28.06	27.54	26.61	26.29	27.12	103.2
어 패 류	17.79	18.57	20.05	19.14	19.58	102.3
(점 유 율)	(38.8)	(40.3)	(43.0)	(42.1)	(41.9)	(99.5)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06)』

3. 가 격

2007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은 일반 해면어업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수산식품의 생산자물가(도매물가)도 안정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요 대중성 해면어종인 오징어, 조기 등의 생산량이 증가되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소비자 물가동향

(단위 : %)

구 분	'02	'03	'04	'05	'06	'07
총 소비자물가	90.8	93.9	97.3	100.0	102.2	104.8
수 산 식 품	93.6	95.8	98.6	100.0	100.8	100.9
- 신선어개류	94.9	98.2	101.6	100.0	100.1	100.4
- 해 조 류	86.2	103.1	100.7	100.0	109.6	110.1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자료

주 : 기준년도(2005년) 대비 등락률임

2007년도 수산식품의 소비자 물가는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명태 등은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갈치는 소비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9.2%가 상승한 반면, 오징어는 과잉생산 등으로 14.8%가 하락 하였다.

제 6 절 어업 및 어장환경*

1. 어 황

가. 해역별

2007년도 동해에서는 봄철 북상하는 꽁치를 대상으로 주로 조업이 이루어졌고 전체 어획량은 평년수준이었으나 척당어획량은 순조로웠다. 살오징어는 여름철 이후 동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어황은 전년 및 평년 비 부진하였다. 한편 동해구 중형외끌이어업은 가자미류, 도루묵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어황은 전년 및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남해에서는 멸치어업, 대형선망어업, 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의 조업이 활발하였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 및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는 근해안강망, 기선저인망, 유자망어업의 조업이 활발하였으며, 강달이류, 갈치,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전년 및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나. 어종별

고등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었으며 봄철 난류세력의 강세로 어군의 북상회유가 활발하여 전체적인 어황은 전년 및 평년 비 순조로웠다. 멸치는 기선권현망 및 유자망어업에 의해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해역에서 전년 및 평년수준의 어황을 보였다. 참다랑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주로 남해동부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전년 및 평년 비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다.

기선저인망어업의 주 대상어종인 갈치, 참조기는 내유자원량의 증가로 밀도 높은 어장이 형성되어 어황은 평년 비 순조로웠다. 한편 도루묵은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에 의해 동해 연안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전년 및 평년 비

* 국립수산물과학원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으나, 명태는 여전히 극히 낮은 수준의 어획량을 나타내었다. 살오징어는 여름철 이후 동해 전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어장 형성이 부진하여 전년 및 평년 비 저조한 어황을 나타내었다. 꽁치는 주로 봄철에 동해 연안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평년수준의 어황을 보였다.

2. 자원동향

가. 연근해 어업자원

연근해 부어 및 저어류에 관한 어획량 변동조사는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어업 등 8개의 근해어업과 꽃게 연안유자망 등 5개의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조사하여 자원밀도지수와 자원분포역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조사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참다랑어, 갈치, 참조기, 말쥐치, 붕장어 등 9개 주요 어종에 대하여 어체 측정과 체장조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생산력의 변동과 연급군 분석을 통하여 자원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2007년도 TAC 대상 자원인 고등어와 붉은대게 등 9종과 추가종인 오징어에 대한 자원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자료로 제공하였다.

원양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국제적 어업 관리의 기초를 위해 원양 주요 어업(트롤 등 6개 어업) 및 주요 어종(가다랑어 등 9개 어종)에 대한 생물 특성연구 및 자원평가를 실시하여 어업별 해역별 어종별 자원상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20회에 걸친 국제수산기구 회의에 국별 보고서로 제공되어 원양어장의 지속적 확보에 기여하였다.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국제옵서버 19명을 양성하였다. 양성된 옵서버는 2007년에는 국제옵서버 승선과학조사는 8개 해역

에서 총 13척에 13명이 승선하였으며 이중 의무 승선조사는 남빙양 저연승 3척, 남동대서양 저연승 2척, 지중해 다랑어 선망 1척, 베링공해 명태 트롤 2척, 북태평양 미드웨이해역 다랑어 연승 2척 등의 조사가 이루어 졌다. 과학 승선 조사는 중서부태평양 다랑어 선망 1척, 동부태평양 다랑어 연승 1척, 인도양 다랑어 연승 1척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어획량 통계, 부수어획종 혼획 상태, 어업대상 종의 분포 밀도 및 생물학적 특성치 등을 분석하였다.

3. 연안어장 환경변화

가. 연안어장 오염

해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해역의 상태를 평가하면, 동해의 경우 일부 항만(청초항)을 제외한 대부분 해역에서 해역기준 I, II등급(2 mg/L 이하) 이내로 양호했다. 남해는 마산, 울산, 삼천포항에서 해역기준 III등급(4 mg/L 이하) 상태였으며, 특히, 환경관리해역인 마산만에서 불량한 수질 상태를 보였다. 한편, 서해는 특별관리해역인 시화호, 목포항, 군산연안 등에서 해역기준 III등급 상태였고, 인천연안을 비롯한 대부분 해역에서 해역기준 II등급 결과를 보였다. 2007년 결과는 2006년에 비해 I 등급연안은 증가한 반면, III등급 연안은 감소하였다.

해저퇴적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부영양화가 진행된 진해만, 마산만, 시화호 등의 해역에서 오염퇴적물 기준(20mg/g.d, 일본 수산자원보호협회)을 초과하였고, 산화발성황화물(AVS) 역시 항만 및 반 폐쇄성만(진해만, 마산항, 울산항, 시화호 등)에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나. 적조발생

2007년도는 전 연안에서 총 38건의 적조가 발생하였으며, 일반 적조 17건,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 *Chattonella* spp. 적조 21건이 발생하였다.

C. polykrikoides 적조는 7월 31월 7일 전남 여수 가막만 하단에서 최초발생한 후 전남 완도~경북 울진해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9월 18일 소멸되었다.

2007년도는 남해안에 고밀도 적조가 지속되었고, 8월 냉수대가 조기에 소멸되고, 해류를 따라 적조가 동해안으로 신속히 이동·확산되었으며, 태풍 및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적조가 소멸되었다. 또한 *Chattonella* spp. 적조는 7월 21일 충남 태안~보령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 8월 18일 완전 소멸되었다.

다. 대형 독성해파리의 대량 출현

대형 독성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Nemopilema nomurai*)는 2007년도 5월 말 이어도 해역에서 20,783개체/10,000m²의 고밀도로 분포하였고, 7월 초 제주 서부해역에서 최대 3,000개체/10,000m²의 밀도로 분포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발생지로 추측되는 양자강북부해역의 2007년 5월 표층 수온은 2006년에 비해 2도 가량 높았으며, 이는 해파리의 출현시기를 2주간 앞당겼으며, 그 해의 대량 출현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 된다.

2007년 7~8월 전국 연안에서 해파리로 인한 해수욕객 피해는 약 50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수산업에서는 안강망의 자루그물절단, 자망의 파망, 낭자망의 자루그물 손상, 들망의 그물손상, 정치망 통그물손상, 호망의 자루그물손상 등에 피해를 끼쳤으며, 어획량 감소 10-90%, 상품가치하락 10-80%으로 집계되었다.

제 Ⅱ 편

2007년도 수산시책 추진실적

제 1 장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제 1 절 자율관리어업*

그 동안 정부 주도하의 어업자원관리는 어업인의 정부에 대한 의타심 심화 및 주인의식을 약화시켜 자원남획 및 어업질서 문란을 야기 시키는 등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WTO체제 출범, UN해양법협약 발효,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 등은 국내·외 수산업의 여건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어업환경 악화는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의 한계를 절감케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어업인의 주인의식 및 자조·자립심 함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자율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2월부터 자율관리공동체 63개소가 신청하여 본격 추진되었으며, 시행 7년차인 2007년에는 참여공동체수가 579개소까지 확대되어 기반조성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심화단계로 도약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2007년도에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중 추진실적이 우수한 90개소를 선정하여 118억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육성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의 장애요인인 공동체 또는 업종·지역간의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는 민간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유도하고, 참여공동체에 대하여는 수산사무소의 전담 어촌지도공무원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지도자들로 구성된 전국지도자협의회 활동(2회)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추진기관 담당자들의 이해증진을 위한 권역별 광역워크숍(3회), 지방수산사무소 중심의 지역단위 현장집합교육(110회) 및 우수공동체 견학(15회), 미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양성교육(1회), 민간전문가의 역량강화 워크숍(1회)을 개최하는 한편 우수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는 수산 선진국(일본)의 어업현장 방문(3회)을 실시하였다.

자율관리어업의 활동이 저조하거나 새롭게 참여한 신규공동체에 대하여는 어촌지도공무원 만의 지도·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산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컨설턴트(4명)로 하여금 공동체 특성에 맞는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동체별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화를 유도하였다.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어업인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제5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2007년 6월 28일~29일 충남 보령에서 개최하였고, 우수공동체를 대상으로 사례집Ⅳ(26개 공동체)과 영상물(공동체 2개소와 종합영상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교육·홍보활동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공동체별 등급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6년 8월~2007년 4월)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의 공동체 평가시스템을 개편('07년 7월)하고 2008년도 공동체 등급결정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개편된 평가시스템은 지역간·평가자간 편차의 최소화를 위해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어업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참여유형에 맞는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평가자와 공동체에 제공해 객관적인 확인서류에 근거하여 평점이 부여되도록 하였다.

평가방식도 점수를 부여하는 예비평가(수산사무소 60%, 시·도지역협의회 30%, 시·도지도자협의회 10% 반영)와 한국수산회에 설치된 자율관리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예비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본평가로 이원화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해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종전의 평가시스템 방식으로 이루어진 2007년도 공동체별 등급은 대상 공동체 445개 중 풍요등급 14개소, 모범등급 86개소, 협동등급 345개소로 결정되었으며, 2006년 12월 1일 이후 참여한 공동체 134개소는 참여등급으로 선정하였다.

〈표 44〉 2007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및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동체수	579	15	29	15	19	39	7	49	38	184	69	76	39	
육성사업	지원수	90	2	3	2	5	6	1	10	7	26	9	13	6
	사업비	118	2.5	5	3	7.5	9.5	2	13.5	9	32.5	11	16.5	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제 2 절 수산자원 조성*

1. 인공어초시설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과 수산자원의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971년부터 추진해 온 인공어초 시설은 적지 306,751ha 중 2007년까지 202,141ha를 시설하여 66%를 달성하였다.

또한, 해역별·어종별 특성에 적합한 어초 다양화를 위해 2008년에는 터널형 어초 등 9종을 일반어초로 선정·시설토록 하였고, 탱크카어초 등을 시험연구 중에 있으며, 어초어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7,745백만 원을 투입 기존 시설된 어초어장에 대한 어초위치, 상태조사 및 폐어망 등을 수거하고, 갯녹음현상 발생어장 521ha에 13,393백만 원을 투입 해중립을 조성하였다.

〈표 45〉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실적

(단위 : ha, 백만 원,%)

구분	'04		'05		'06		'07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합 계	5,668	43,976	5,263	42,997	5,450	40,205	4,698	40,335
부산	108	890	104	990	88	900	88	900
인천	492	4,038	522	4,047	328	3,938	244	3,750
울산	52	1,000	68	849	64	788	56	750
경기	324	1,423	178	1,415	192	1,501	193	1,250
강원	350	2,500	354	2,494	240	2,250	230	2,250
충남	612	4,500	772	4,404	516	4,050	528	4,423
전북	535	2,184	176	2,184	1,142	5,000	1,022	5,000
전남	1,341	8,903	1,310	8,832	896	6,750	868	8,716
경북	364	3,045	140	3,045	104	2,507	172	3,293
경남	560	7,333	424	7,332	516	5,771	268	3,028
제주	930	8,160	1,215	7,405	1,364	6,750	1,029	6,97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2. 종묘방류

1971년 국립수산물과학원 북제주수산종묘배양장 개설을 시작으로 국·도립 수산종묘배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수산종묘배양장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여 국립수산종묘배양장을 시험장별로 특성화된 전문연구센터로 전환하여 수산종묘생산 기술개발 연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1986년부터 2007년까지 56,300백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에서 생산된 넙치, 조피볼락 등 정착성 고부가가치 품종 956백만 미를 매입·방류하는 등 연안 수산자원을 조성하였다.

〈표 46〉 국·도립 수산종묘생산시설 종묘생산 방류 현황

(단위 : 천마리, 천개, %)

배양장	시설 년도	주요 생산 품종	'05	'06	'07	'07/'06
합계			127,120	242,249	190,698	△21.3
인천	'02	넙치, 꽃게, 전복, 대하	10,730	5,450	4,555	△16.4
강원	'97	넙치, 전복, 성게, 우렁쟁이	8,080	8,560	8,720	1.9
충남	'06	넙치, 전복, 대하, 농어	-	630	1,436	127.9
전북	'00	넙치, 전복, 대하, 꽃게	30,948	32,668	31,206	△4.8
전남	'99	감성돔, 민어, 전복, 대하	10,082	12,610	35,562	182.0
경북	'98	참돔, 전복, 우렁쟁이, 해삼	3,040	2,930	3,030	3.4
경남	'99	볼락, 굴, 전복, 우렁쟁이	61,840	177,571	104,757	△41.0
제주	'99	참돔, 돌돔, 전복, 오분자기	2,400	1,830	1,432	△21.7

자료 : 국립수산물식품부 자원회복과

〈표 47〉 시·도별 종묘 매입·방류 추진현황

(단위 : 천마리, 백만원,%)

구분	'04		'05		'06		'07		'07/'0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100,670	8,101	92,267	8,958	128,359	10,642	84,728	15,954	△34.0	49.9
부산	488	208	789	254	1,706	400	804	357	△52.9	△10.8
인천	990	711	3,373	917	4,080	1,094	15,541	2,448	281	123.8
울산	1,153	396	2,043	600	1,948	536	3,730	518	91.5	△3.4
경기	1,968	583	1,829	939	1,913	900	1,080	533	△43.5	△40.8
강원	3,322	1,287	4,454	1,293	6,280	1,531	4,548	1,941	△27.6	26.8
충북	1,296	129	723	142	1,295	184	974	146	△24.8	△20.7
충남	44,720	660	24,219	722	43,493	636	26,959	2,702	△38.0	324.8
전북	16,022	649	410	152	9,603	443	2,201	406	△77.1	△8.4
전남	24,201	1,004	46,555	1,002	48,973	908	12,475	1,073	△74.5	18.2
경북	1,180	797	1,947	611	1,881	814	2,181	1,286	15.9	58.0
경남	4,543	861	4,313	862	4,621	950	11,318	2,416	144.9	154.3
제주	787	816	1,612	1,464	2,566	2,246	2,917	2,128	13.7	△5.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표 48〉

어종별 종묘 매입·방류 추진실적

(단위 : 천마리, 백만원, %)

품종별	'04		'05		'06		'07		'07/'0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00,670	8,101	92,267	8,958	128,359	10,642	84,728	15,954	△34.0	49.9
조피볼락	999	299	2,787	783	1,586	674	7,701	2,286	385.6	239.2
넙 치	6,093	1,968	4,482	1,608	3,843	1,236	9,622	2,196	150.4	77.7
감 성 돔	1,988	499	2,967	562	2,598	514	5,214	1,202	100.7	133.9
돌 돔	909	348	1,045	520	2,183	867	2,694	780	23.4	△10.0
볼 락	464	174	920	284	1,887	457	2,771	814	46.8	78.1
해 삼	1,059	253	1,532	358	4,310	997	2,243	558	△48.0	△44.0
대 하	73,435	564	61,214	205	89,903	379	24,660	125	△72.6	△67.0
전 복	3,415	2,885	3,856	2,913	3,516	3,122	5,003	4,111	42.3	31.7
내 수 면	6,724	716	8,744	932	12,541	1,433	10,973	1,730	12.5	20.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3. 바다목장 조성

199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2006년도 사업까지 총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그 동안 통영 바다목장에 조성된 수산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이용체계 확립 및 단위사업별 종합 매뉴얼 또는 사업지침서를 마련하는 한편, 조성된 수산자원의 관리·이용을 위한 사후관리방안도 마련하여 타 해역사업에 참고토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바다목장개발사업에 대하여 제3의 기관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마치고 사업효과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한 자료를 타 바다목장 사업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여수) 다도해형 바다목장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3단계 최종년도 기반 조성사업으로 50억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연구·조사와 더불어 인공어초, 해중림 등 구조물 설치와 감성돔, 볼락류 등 종묘를 방류하는 등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사업총괄기관을 변경하여 전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및 방류사업을 총사업비 대비 약 80%로 확대하여 실제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05년에 1단계 최종사업이 마무리되어 기본계획이 수립된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북제주) 3개소에 대해서도 2007년도에는 사업비를 60억 원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시설사업을 실시하는 등 바다목장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2007년도에는 당초 4개소에서 전북(직도해역), 충남(보령) 및 경남(사천) 3개소를 추가하여 총 7개소로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향후 전국연안적지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4. 총허용어획량제도

TAC(Total Allowable Catch ; 총허용어획량)제도란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관리제도로,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연안국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할권 강화 및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그 동안 수산업법(1995년 12월) 및 수산자원보호령(1996년 12월)을 개정하여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TAC할당, 어획실적보고, 지도·단속 등의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2002년 3월)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고등어·정어리·전갱이(대형선망어업), 붉은대게(근해통발어업), 대게(근해자망, 통발), 개조개·키조개(잠수기어업), 제주도소라(마을어업) 및 꽃게(연근해 자망, 통발 : 연평어장과 서해특정해역 한정) 및 오징어(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등 10개 어종에 대하여 TAC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오징어 자원의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상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4개 업종 민간 자율조정협의회를 거쳐 2007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TAC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TAC할당량에 대한 어획량 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주요 위판장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시·도에 40명의 읍서비요원들을 배치하여 어획량관리, 수산자원의 과학적 자료수집, 관련법령 준수확인 등 적극적인 자원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표 49〉 2007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현황

(단위 : 톤, %)

대상업종	대상어종	TAC(총허용어획량) 현황		
		TAC	소진량	소진율
대형선망	고등어	154,000	125,729	81.6
	전갱이	19,000	9,108	47.9
	정어리	5,000	77	1.5
근해통발	붉은대게	25,500	25,090	100.4
잡수기	개조개	3,700	2,608	70.5
	키조개	3,200	2,733	85.3
마을어업	제주도소라	1,480	1,351	91.3
근해자망통발	대게	1,200	1,135	94.6
연근해자망통발	꽃게	3,350	2,809	83.9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오징어	250,000	143,078	57.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5.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해 2003. 7. 15 시행된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0조에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수면”에 대해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관리·이용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도에서 2007년 말 현재까지 47개소/5,614ha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동 수면에 대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제 3 절 양식어업 육성*

1. 양식어장 개발

2007년도 양식어장개발은 수산업의 대외 개방에 대비하고 양식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정책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수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경쟁력 취약품종, 종묘확보 곤란 및 수급 불균형으로 안정생산이 필요한 품종의 신규어장 개발금지과 유효기간 만료 후 재개발 시 일정 부분을 축소하도록 하였고, 국가 공익사업이 예정된 수면이나 각종 재해 또는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예상되는 수면에 대하여도 신규 어장개발을 금지하고, 부실관리 또는 생산실적이 부진한 어장은 동일 어장으로 재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새로운 품종개발을 위하여 다랑어, 고등어 또는 외해(수중)가두리양식 및 키조개 살포식 양식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험어업을 거쳐 해당 양식어장으로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해역별 특성, 종묘 수급문제 등을 검토한 후 어장개발을 허용하며, 국가공익사업으로 인한 유희수면에 대한 활용을 위하여 한정어업면허의 개발과 기존어장의 여건변화로 양식이 곤란할 경우 적정품종으로의 대체개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2. 환경친화형 양식기반 시설 확충

환경친화형 양식어업을 통한 지속적 생산 증대를 위하여 2007년도에 25,640백만 원(농특회계 14,500, 균특회계 1,300, 수발기금 9,840)을 투입·지원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사업내용은 배합사료 구입자금 지원 1,434ha, 폐사어처리시설 1개소, 질병예방 백신공급 4개소, 외해수증가두리 3개소, 잠수병감압실 지원 1개소, 수산질병관리원 설립 지원 1개소, 생분해성 어구시험사업 1개소, 수협사료시설·운영비 지원 1개소, 양식장 노후시설 개량 7개소, 해삼 양식장 시설 2개소, 축제식 월동장 지원 1개소, 그 밖에 친환경양식 기자재 구입자금 지원 등이다.

제 4 절 내수면어업 개발*

수산용 약품지도 등을 강화하기 위한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및 수산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품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내수면발전 종합대책(2006.11)’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동해안의 연어자원 증강을 위하여 1967년부터 2007년까지 288백만 마리를 생산·방류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강원도 내수면개발시험장 및 경상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 등에서 13,790천 마리를 인공 부화하여 동해안 17개 하천 및 남해안 섬진강유역에 방류하였으며, 2007년도 포획량은 92천 마리로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체포되었다.

〈표 50〉

연어방류 및 체포 실적

(단위 : 천마리, %)

구 분	합 계	'67~'03	'04	'05	'06	'07	'07/'06
방류량	300,228	254,908	12,930	11,250	7,350	13,790	187.6
체포량	1,848	1,659	29	23	45	92	204.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제 5 절 어장정화*

어장환경의 보전·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특별관리 어장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2007년도에 마을어장 및 패류·해조류 어장 등 11,832ha에 대하여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만(灣) 중심의 광역 정화·정비사업으로서 1996년부터 남해안 9개만(전남 4개만, 경남 5개만)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경상남도(진동만) 331ha의 해역에 대해 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어장관리기본계획(2007~2011)에 따라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어장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어장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제 6 절 적조대책*

2007년도 적조는 7월 31일 나로도 인근 해역에서 최초 발생하여 전남 완도군 연안부터 경북 울진군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다 9. 18일 제11호 태풍 “나리”의 영향으로 적조생물(*Cochlodinium*)은 소멸 되었다. 특히, 적조 발생 당시 강한 돌풍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내만 양식장에 “게릴라성 적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전남·경남·경북도 일대를 중심으로 가두리 및 육상양식장에서 조피블락, 돛류, 전복 등 양식생물 총 9,571천 마리가 폐사하여 11,498백만 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적조생물(*Cochlodinium*)은 일반적으로 연안수와 외양수가 만나는 전선대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7년에는 남해안 냉수대의 조기소멸, 잦은 강우로 인한 지속적 영양염류 유입 등으로 적조생물의 확산에 적합한 환경이 형성되면서 고밀도의 적조가 경남도 일대에 지속되었고, 해류를 타고 동해안 까지 확산되었다.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민·관·군·경의 총력대응과 적조발생 초기에 인공 위성, 화상통신망, 적조예보 자동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신속한 적조탐색과 적기예보·전파 등 적절한 대처와 동시에 해양수산부, 시·도(시·군), 수협, 해경,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등 총력 방제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2006년 6월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근거, NSC(위기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작성된 『적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립수산물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시·도/시·군·구), 해양경찰청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적조발생의근원적인 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그러나,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방제활동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조로 인해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어가에 대해 정부지원 등을 통한 복구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51〉 코클로디니움 적조발생시기와 특징

구 분	'03	'04	'05	'06	'07
최초발생일	8. 13	8. 5	7. 19	8. 6	7. 31
소 멸 일	10. 13	9. 3	9. 14	10. 30	9. 18
지 속 기 간	62일	30일	58일	36일	50일
최 초 발생 지역	여수 붓돌바다 ~남해 두미도	거제 둔덕, 남부 여차	나로도 인근	가막만 하단	나로도 인근
발 생 범 위	진도~강릉	완도~거제	완도~거제	완도~남해	완도~울진
발 생 건 수	45건	65건	39건	28건	33건
최 고 밀 도 (개 체 / ml)	48천	6천	25천	22.5천	32.5천
수 산 피 해	215억원	1.2억원	10.6억원	0.7억원	115억원
소 멸 요 인	수온하강	기상변동, 중간경쟁	태 풍 “나비”	수온하강	대풍 “나리”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제 7 절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해면과 인접 육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왔으며, 현재 천수만, 영광, 완도,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남해·통영 I, 남해·통영 II, 한산만, 진동만 등 1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후 20여년이 지남에 따라 해역이용이나 지역 여건 등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행위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안육역에 위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 기준안(2005년 3월 21일)과 조정기준안을 완화하는 지침(2006년 10월 11일)을 마련하여 관련 시·군으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였다.

〈표 52〉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연구용역 결과

구역		지정면적(km ²)			조정후(육지)		최초 지정
		계	육지(A)	해면	면적(B)	비율(A-B)/A	
합계		3,868.08	1,243.03	2,625.05	302.51	75.7%	
충남 (1)	천수만	213.45	82.67	130.78	11.8	85.7%	'78.11.
전남 (5)	완도, 함평만, 가막만, 여자만, 득량만	2,164.61	768	1,396.61	204.64	73.4%	'82. 1.
경남 (4)	한산만, 진동만, 남해·통영 I·II	1,490.02	392.36	1,097.66	86.07	78.1%	'75. 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해양부의 수산자원보호 구역의 지정·변경 결정권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로의 이관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이 2007년 개정되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케 되었다.

제 2 장

신 해양질서에 맞는 연근해어업 재편

제 1 절 어업구조조정 및 재편*

우리나라 EEZ의 자원량은 479만 톤으로 연간 125만 톤 내외의 생산이 적정량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한·중·일 3국 어선들에 의해 연간 160만 톤이 어획되고 있어 약 30% 내외의 과도 어획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어획은 어선의 대형화, 기관의 고 마력화, 어구·어법의 발달, 과다한 어구사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어업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영수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간 정부에서는 어선감척, 허가정수 설정, 업종통폐합 등 구조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동일한 수산자원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업적 특성으로 지역간·업종간 조업분쟁, 어업인의 이기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근해어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최근의 WTO/DDA, FTA 협상전개, 신 국제 어업질서 형성 등 연근해어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근해어업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도에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일반감척으로 연안 어선 2,836척에 1,000억 원, 근해어선 86척에 294억 원을 지원하여 1994부터 2007까지 총 8,456척 10,671억 원을 지원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제 2 절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1.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현재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어구는 유실시 해류에 의해 흘러 다니면서 물고기를 얽혀 죽게 하고, 해저 바닥에 쌓여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파괴시키며 해저에 쌓인 어구를 인양하기 위해서는 노동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시책에 큰 장애가 되고 수산업의 피해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중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개발을 추진하여 생분해성 대게자망 어구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으며, 2007년 처음으로 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경북도 대게 자망어업을 대상으로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에 착수하여 어업인의 호응을 받고 있다.

생분해성 대게자망 어구의 어획성능은 현재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나일론 자망과 대등하며, 2년 정도 지나면 해양의 미생물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며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은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분해성 대게자망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방사, 편망 및 열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제망업계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제 3 절 어업질서 확립*

1. 연근해어업 여건변화와 신 어업질서 확립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이후 체결된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으로 각기 상대국 수역에서 조업제한을 받게 되었다. 주변국은 어업협정에 따라 어획할당량 제한, 입어척수 규제, 조업수역을 제한하는 등 자국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EEZ 및 연근해 어장에서의 지속적인 어업생산과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외국적 불법어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선결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어선들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불법어업 단속과 민간자율 감시기능 강화와 어업인의 준법의식 고양을 위해 TV를 활용한 공익 캠페인, 담화문 발표 및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을 확대, 지정·운영하였다.

가.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재 진입 방지

불법어업의 대명사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2004년 12월 31일)』을 제정한 이후 2005~2006년까지 2개년 간 총 826억 원을 투입하여 2,467척을 매입·정리함으로써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왔던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근절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기존 사용하는 어선 일부를 개조, 일천여 만원 정도의 어구 구입만으로도 언제든지 불법조업이 가능하므로 이들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육·해상 집중단속과 함께 어업인들의 자율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2007년 8월 “불법어업 신고 및 포상금 운영요령”을 제정·시행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아울러, 불법어선 건조 및 어구제작업체들에 대한 육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함정, 시·도 어업지도선과 공조, 초기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한 결과, 2002년도에 1,258건 이던 것이 2006년에는 61건, 2007년에는 42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나. 허가어선의 불법어업 중점지도단속

2007년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어업 건수는 총 3,773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구위반과 조업구역위반 등이 1,696건, 무허가 등 기타어업이 2,077건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기선형망어선 203건, 대형기선저인망 113건, 중형기선저인망 7건, 기타잠수기 등이 3,408건이었다.

한편,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행위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모두 494건으로 영해침범 조업 및 무허가 73건, 특정금지구역침범 70건, EEZ 위반조업이 351건이었다.

〈표 53〉

불법어업 단속실적

(단위 : 건, %)

구 분	'02	'03	'04	'05	'06	'07	'07/'06
합 계	3,102	2,067	3,673	4,054	3,015	3,773	125
소 형 기 저	1,258	888	904	201	61	42	69
중 형 기 저	31	37	40	23	30	7	23
대 형 기 저	39	15	64	70	48	113	235
기 선 형 망	61	39	243	192	194	203	105
잠 수 기	23	27	80	98	73	67	92
기 타	1,690	1,061	2,342	3,470	2,609	3,341	12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2. 안전조업 지도

근해에 출어하는 어선들의 안전조업지도를 위하여 「연근해 어선안전조업지도 대책」을 수립·시달하는 한편, 성어기별 주요 어장에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어로보호 및 조업분쟁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대화퇴·동중국해 등 먼 어장에는 복지모선으로 하여금 조업중인 어선들에 대하여 유류 및 식수 공급과 더불어 긴급환자에게는 치료와 구급약을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경 등과 협조하여 조난 어선 발생시 구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표 54〉 어업인 보급지원 및 조난어선 구조 실적

(단위 : 척, 명)

지 원 내 용	'02	'03	'04	'05	'06	'07
식 수 공 급	4	1	10	-	10	2
유 류 공 급	-	-	-	2	18	1
의 료 지 원	165	52	24	9	20	26
조난어선구조	7	5	-	13	19	2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또한, 전국 주요 항·포구 37개소의 선박출입항신고소(통제소 및 합동신고소)에 배치된 어선안전점검요원 54명을 통하여 출항어선에 대한 항해·통신장비 점검 및 선원수첩 소지, 어선원 안전조업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게 함으로써 출어선에 대한 월선·피랍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였다.

〈표 55〉

어선원 교육 및 안전점검 실적

(단위 : 명, 척, %)

구 분	'02	'03	'04	'05	'06	'07	'07/'06
어 선 원 교 육	62,823	60,450	58,349	56,825	55,964	54,549	97.5
어선안전점검	54,587	57,350	77,636	100,237	117,972	108,633	92.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3.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정부에서는 1965년 한·일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협정업무 이행 및 연근해 어선 안전조업지도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면서, 매일 조업어선의 동태파악, 월선·피납방지, 어업기상예보 방송과 태풍·풍랑 등 악기상 시 조업어선의 안전한 항·포구 대피 지도, 의아선박 발견시 긴급보고 통신업무를 전담하여 대간첩작전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EEZ내 아국 및 인접국 출어선의 위치와 조업실적을 파악 관리하고, 해·어황 예보와 어가유통정보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연근해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어업정보통신국은 전국 37개소(유인국 17, 무인중계소 20)에 1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7년도 어업정보통신국의 주요 운영실적은 교신가입어선 11,480척을 대상으로, 3,207천 통의 무선전보를 송·수신 처리하였으며,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에 의한 EEZ 출어선에 대한 위치, 어획실적보고 157천 통, 입역 및 출역 통보 43천 통 등을 수행함으로써 일본 및 중국수역에 출어하는 우리어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표 56〉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지원 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03	'04	'05	'06	'07	'07/ '06
합 계	10,928	11,480	12,156	11,837	12,249	103.5
인 건 비(운영비)	10,300	10,976	11,305	10,984	11,340	103.2
시 설 보 강 사 업 비	628	504	851	853	909	106.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4. 어업질서확립 지도·홍보 강화

불법어업의 조기근절은 무엇보다 어업인의 의식전환과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법무부·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3부 합동으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대 국민담화문을 발표하였고,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영 KBS-TV에 26회 출연·방영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였다. 또한, 불법어업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이 우수한 8개 어촌계를 선정·포상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하도록 어촌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어업인 준범의식 확산 등 어업질서의 조기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장

수산물 유통개혁과 가공산업 육성

제 1 절 수산물 가격안정*

1. 정부 비축사업

명태·오징어 등 주요품목을 주 생산 시기에 산지수협을 통해 적정량을 수매하여, 성수기 주요 소비지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으로 원활한 구매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냉동오징어·냉동고등어·냉동명태 등 3개 품목 7.2천 톤을 수매할 계획이었으나, 명태 주 어획시기의 생산량 감소로 수매를 실시하지 않아 총 4.5천 톤(107억 원)을 수매하여 수급조절 및 시장 활성화를 기하였다.

〈표 57〉 2007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단위 : 톤, 백만 원, %)

구 분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7,200	20,000	4,508	10,667	62.6	53.3
냉 동 오 징 어	1,500	5,000	3,715	7,235	247.7	144.7
마 른 오 징 어	-	-	137	1,896	-	-
냉 동 고 등 어	1,000	3,000	656	1,536	65.6	51.2
냉 동 명 태	4,700	10,000	-	-	-	-
긴 급 가 격 안 정	-	2,000	-	-	-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2. 민간 가격안정사업

2007년도 민간가격 안정사업에 1,343억 원을 지원하여 오징어·명태·조기·갈치·김 등 372천 톤을 수매하였다.

부문별로는 원료수매 지원사업에 1,048억 원을 지원하여 252천 톤을 수매하였고, 유통보관 지원사업에 295억 원 120천 톤을 수매함으로써 가격안정 및 수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 하였다.

또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산지수협 위관장(공관장 포함)에 출하촉진을 위한 기금 853억 원을 지원하여 1,104천 톤의 물량을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였고, 도매시장의 출하촉진을 위하여 3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수산물유통증진 및 상품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3.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년도 재고 및 2007년도 생산·수입·수출 등 수급동향을 수시로 파악,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등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설날 등 성수기 성수품목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날대책기간(2007년 2월 5일~2월 16일)”, “추석대책기간(2007년 9월 10일~9월 21일)”을 정하여, 명태·고등어 등 수요과다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품을 방출하는 동시에, 민간 보유량의 출하도 권고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물가지도반을 상설 운영하여 재고조사 및 출하독려 등 수급조절기능을 보완하였다

제 2 절 유통구조 개선*

1. 유통시설 확충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확충을 통하여 신속한 양륙과 원활한 공급처리를 위해 2007년도에 29,584백만 원을 투입하여 위판장 5개소, 직매장 8개소,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는 기존의 유통시설 기능인 먹거리 제공과 더불어 볼거리 및 즐길거리 기능이 복합된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58〉 2007년도 수산물 유통보급시설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물 량	사 업 비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 담
합 계	16	44,471	29,584	5,143	5,774	3,970
수 산 물 위 판 장	5	2,900	1,160	-	870	870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설	1	31,443	23,000	5,143	3,300	-
수 산 물 직 매 장	8	3,200	960	-	640	1,600
해 양 수 산 복 합 공 간 조 성	1	1,928	964	-	964	-
노 량 진 수 산 시 장 현 대 화	1	5,000	3,500	-	-	1,5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2. 유통기능 강화

연근해(양식 포함) 수산물 생산량 2,538천 톤의 50.2%인 1,274천 톤을 산지수협에서 상장 매매함으로써, 어업인 수취가격 제고 및 어획물의 신속 분산·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유통을 촉진하였으며, 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취급물량은 382천 톤으로 국내소비량 4,625천 톤의 8.3%를 취급하였고,

이 중 도매시장법인이 270천 톤으로 70.7%, 수협공판장에서 102천 톤으로 26.7%, 상장예외 물량이 10천 톤으로 2.6%를 취급하였다.

그리고 산지위판장(26개소)과 소비지도매시장(14개소)의 시설환경정화 사업을 위해 6,250백만 원을 투입하였고,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중도매인 등 유통중사자와 생산 어업인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수산물의 규격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수산물 33개 품목에 대하여 표준거래 단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표준규격으로 출하시 수발기금에서 170억 원을 연 3%의 저리로 생산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수산사업자 등에 지원하였다.

수도권 3대 수산물도매시장의 실질경매제 조기정착 유도 및 출하량 확대를 위해 스티로폼 어상자 510만개의 구입비 96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수산물유통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2002년까지 73개 산지수협의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수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infofishnet.co.kr) 구축을 통하여 산지수협의 위판정보(물량, 가격 등)를 어업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경락정보 제공을 위하여 강동수산 등 11개 도매시장에 경락정보 DB를 구축하였고, 경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강동수산 등 3개소에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 추진한 영어조합법인등 520개 어가의 홈페이지 구축과 이들 어가등이 참여한 수산물 사이버 직거래 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2006년 762백만 원 → 2007년 942백만 원) 하였다.

〈표 59〉 수산물 규격출하촉진 지원대상품목과 거래규격

품 목	거래단위	거 래 단 량	포 장 재
마 른 멸 치	봉지, 상자	500g, 1kg, 1.5kg, 2kg	비닐, 골판지
북 어	봉지, 상자	5마리, 10마리	비닐, 골판지
마 른 오 징 어	봉지, 상자	5마리, 10마리	비닐, 골판지
굴 비	상 자	5마리, 10마리	골판지
김	봉 지	10장	비닐
마 른 미 역	봉 지	5장	비닐
마 른 실 미 역	봉 지	20g, 50g, 100g, 250g	비닐
마 른 썰 은 미 역	봉 지	20g, 50g	비닐
취 치 포	봉 지	200g, 500g, 1kg	비닐
마 른 새 우	상 자	500g, 1kg, 2kg, 3kg	골판지
마 른 문 어	축	5마리, 10마리	비닐, 골판지
뱅 어 포	속	5장, 10장	비닐, 골판지
마 른 까 나 리	상자	500g, 1kg, 2kg, 3kg	골판지, 지대
간 미 역	봉지, 상자	200g, 500g, 1kg, 3kg, 5kg, 10kg	PE필름, 골판지
새 우 젓	통, 병	1kg, 3kg, 5kg, 10kg	PE용기, 유리용기
멸 치 젓	"	1kg, 3kg, 5kg, 10kg	P.E용기, 유리용기
어 리 굴 젓	"	200g, 500g, 1kg	유리용기, 합성수지
굴	통, 봉지	200g, 500g, 1kg, 3kg, 10kg	비닐, P.E용기, P.S상자
바 지 락	포 대	500g, 1kg, 3kg, 5kg, 10kg, 20kg	P.E그물망
피 조 개	통	500g, 1kg, 3kg, 5kg, 10kg	합석, 스티로폴
고 막	포 대	500g, 1kg, 3kg, 5kg, 10kg	P.P포대
우 령 행 이	통	500g, 1kg, 3kg, 5kg, 10kg	스티로폼
홍 합	포 대	500g, 1kg, 3kg, 5kg, 10kg	면직물, 합성수지
고 동 류	상 자	10kg	골판지
미 더 덕	상 자	1.5kg, 2kg	스티로폴
오 만 등 이	상 자	1.5kg, 2kg	스티로폴
꽃 게	상 자	3kg, 5kg, 10kg	골판지, PVC
냉 동 오 징 어	"	2kg, 4kg, 5kg, 8kg, 10kg, 15kg, 20kg	골판지
명 태	"	1kg, 3kg, 5kg, 10kg, 15kg, 20kg	스티로폴, 골판지
조 기	"	1kg, 3kg, 5kg, 10kg, 15kg, 20kg	스티로폴, 골판지
고 등 어	"	kg,3kg,5kg,8kg,10kg,15kg,16kg,20kg	스티로폴, 골판지
갈 치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폴, 골판지
삼 치	"	1kg, 3kg, 5kg, 10kg	스티로폴, 골판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김 1매의 크기 : 가로 206mm, 세로 189mm 이상, 마른미역 1장의 규격 : 가로 75cm, 세로 15cm 이상

〈표 60〉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물량

(단위 : 톤, %)

구분	시장명	법인명	'03	'04	'05	'06	'07	'07/'06	
중 앙 도 매 시 장	합계(18)	26	379,197	385,851	384,547	382,049	382,373	100.1	
	소 계(5)	11	255,835	252,742	247,325	255,457	255,617	100.1	
	가 락 동	소계	125,685	123,928	121,152	124,311	122,530	98.6	
		강동수산	70,407	70,234	66,061	63,626	61,973	97.4	
		수협공판	25,206	25,860	26,308	29,318	29,252	99.8	
		서울건해	23,491	20,922	20,684	22,404	22,252	99.3	
		상장예외	6,581	6,912	8,099	8,963	9,053	101.0	
	노량진	노량진(주)	105,200	102,191	98,102	98,300	101,049	102.8	
	대 진	소계	6,824	6,102	6,269	6,107	7,822	128.1	
		대진수산	6,410	5,627	5,663	5,520			
		한밭건해	414	475	606	587			
	대 구	소계	10,894	13,116	14,815	19,464	16,888	86.8	
		대구수산	6,740	7,557	8,174	11,466	9,418	82.1	
		대구종합	4,154	5,559	6,641	7,998	7,470	93.4	
		울 산	소계	7,232	7,405	6,987	7,275	7,328	100.7
			중앙수산	3,192	3,215	3,206	3,473	3,285	94.6
	수협공판		3,183	3,673	3,217	3,098	3,368	108.7	
	울산건해	857	517	564	704	675	95.9		
지 방 도 매 시 장	소계(11)	13	96,178	107,175	109,632	100,063	99,307	99.2	
	구 리	소계	58,777	59,847	60,447	55,571	56,151	101.0	
		강북수산	24,176	22,896	25,289	24,348	25,351	104.1	
		수협공판	34,600	35,394	34,310	30,404	29,799	98.0	
		상장예외		1,557	848	819	1,001	122.2	
	수 원	소계	4,114	5,594	6,292	6,323	8,155	129.0	
		수원수산	1,306	2,446	2,829	3,039	3,913	128.7	
		수협공판	2,808	3,148	3,463	3,284	4,242	129.2	
	청 주	청주수산	2,948	2,501	2,223	2,183	1,958	89.7	
	안 산	소계	3,667	4,077	4,317	4,582	4,576	99.9	
		안산수산	3,223	4,010	4,242	4,507	4,536	100.6	
		상장예외	444	67	75	75	40	53.3	
	전 주	소계	3,620	3,484	3,159	3,686	3,008	81.6	
		전주수산	1,947	1,982	1,801	1,925	1,688	87.7	
		수협공판	1,673	1,502	1,358	1,761	1,320	74.9	
		안 양	안양평촌	16,250	18,481	18,878	13,542	12,061	89.1
	충 주	충주수산	959	863	861	935	808	86.4	
	익 산	이리수산	1,064	1,350	1,307	1,516	1,262	83.2	
광 주	수협공판		5,893	7,128	6,484	6,461	99.6		
포 항	포항수산	4,022	4,516	4,479	4,826	4,764	98.7		
경 주	경주수산	757	569	541	415	103	24.8		
단 독 공 판 장	소계(2)	2	27,185	25,934	27,590	26,529	27,449	103.5	
	강 서	수협공판	21,678	20,773	22,403	21,694	22,670	104.5	
	대 구	수협공판	5,507	5,161	5,187	4,835	4,779	98.8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표 61〉 수산부류 도매시장 거래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시장명	법인명	'03	'04	'05	'06	'07	'07/'06	
합계(18)		26	980,524	1,093,646	1,082,112	1,082,561	1,074,994	99.3	
중 양 도 매 시 장	소 계(5)	소계	714,823	777,167	766,329	785,176	788,347	100.4	
		가락동	강동수산	152,709	179,870	168,481	168,516	159,608	94.7
			수협공판	67,198	73,901	72,248	73,518	73,485	99.9
			서울건해	103,798	108,136	125,936	124,086	119,931	96.6
			상장예외	24,133	24,054	25,725	28,122	35,375	125.8
	노량진	노량진(주)	308,595	330,459	310,225	318,138	322,128	101.3	
	대 전	소계	15,026	15,280	15,260	16,178	22,112	136.7	
		대전수산	12,814	12,789	11,920	12,749			
		한밭건해	2,212	2,491	3,340	3,429			
	대 구	소계	21,781	25,600	27,295	33,428	31,880	95.4	
		대구수산	13,013	14,731	15,846	19,232	18,603	96.7	
		대구종합	8,768	10,869	11,449	14,196	13,277	93.5	
		울 산	소계	21,583	19,867	21,159	23,190	23,828	102.8
	울 산	중앙수산	9,371	8,174	8,578	9,522	9,468	99.4	
		수협공판	7,742	8,033	8,332	8,813	9,664	109.6	
울산건해		4,470	3,660	4,249	4,855	4,696	96.7		
지 방 도 매 시 장	소계(11)	13	210,437	254,229	252,734	234,829	226,270	96.3	
	구 리	소계	118,813	126,250	119,932	114,438	116,611	101.9	
		강북수산	50,300	46,294	46,310	47,843	49,608	103.7	
		수협공판	68,512	73,833	67,362	60,258	59,864	99.3	
		상장예외		6,123	6,260	6,337	7,139	112.6	
	수원	소계	8,996	11,669	12,323	12,703	15,780	124.2	
		수원수산	3,486	5,886	6,003	6,207	7,685	123.8	
		수협공판	5,510	5,783	6,320	6,496	8,095	124.6	
	청주	청주수산	5,445	4,652	4,145	4,515	4,242	93.9	
	안산	계	7,434	13,145	11,906	11,749	11,174	95.1	
		안산수산	6,083	11,869	11,719	11,462	10,987	95.8	
		상장예외	1,351	1,276	187	287	187	65.2	
	전주	소계	11,672	11,901	11,523	12,352	9,433	76.4	
		전주수산	5,760	5,885	5,663	5,562	5,162	92.8	
		수협공판	5,912	6,016	5,860	6,790	4,271	62.9	
안양	안양평촌	42,902	50,874	53,081	38,067	28,689	75.4		
충주	충주수산	2,300	2,339	2,124	2,148	1,854	86.3		
익산	이리수산	2,644	3,087	3,140	3,550	2,977	83.8		
광주	수협공판		19,603	23,921	24,420	25,768	105.5		
포항	포항수산	8,041	9,031	9,004	9,649	9,528	98.7		
경주	경주수산	2,190	1,678	1,635	1,238	214	17.3		
단 독 공판장	소계(2)	2	55,265	62,250	63,049	62,556	60,377	96.5	
	강 서	수협공판	39,206	48,089	48,542	48,693	46,961	96.4	
	대 구	수협공판	16,059	14,161	14,507	13,863	13,416	96.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제 3 절 수산물 검사*

1. 수산물검사 강화

WTO체제 및 FTA체결 확산 등 수산물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민 위생안전을 위하여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생조건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간 협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중국과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베트남(2003년), 인도네시아(2005년)에 이어 2006년도에는 태국과 「한·태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수산물을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자국 검사기관에 생산·가공시설을 등록 후 그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하고,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가공한 수산물에 한하여 수출·입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출국의 검사기관에서는 수출전 위해요소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증명서를 발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생약정 국가의 수산물은 수입 신고시 위생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양식산업의 발달과 대량생산으로 양식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의 과다사용 유무 및 휴약기간 준수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품목 지정·운용, 위해정보에 따른 특별검사, 금지약품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검사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따리상의 휴대반입 수산물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규격 미 설정 위해물질에 대한 기준설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신종 위해물질 및 사용 가능 항생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식약청, 관세청 등 유관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외국의 수산식품 위해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인체 위해물질이 함유된 불량 수산물의 수입을 사전에 근절시킬 수 있는 검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수산물 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도 수입검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과 식품검사기관간 수입신고 단일창구를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이 검사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국과 위생약정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출수산물의 생산·가공등록시설에 대한 조사·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함으로써 수입국 요구에 부합된 우량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 생산·출하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활성화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 확보로 불량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62〉 수산물 수출·입 검사실적 (단위 : 천톤, 백만\$, %)

구 분	2005		2006(A)		2007(B)		대비(B/A)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 출	129	362	143	446	255	501	178	112
수 입	932	1,939	1,059	2,424	1,082	2,632	102	109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으로 국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중성 어종과 오염 우려가 높은 해면 및 양식어종 40종 4,970점을 대상으로 항생물질·식중독균·중금속, 말라카이트그린(MG) 등에 대하여 생산단계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검사기능의 강화

수산물시장의 전면개방화에 따른 수입증가와 더불어 불량수산물의 반입도 증가하고 있어 수입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검사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본원 분석실은 화학시험 분야(수은, 납, 카드뮴, 클로람페니콜)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ISO/IEC 17025, 2006년 12월 20일)을 획득하였으며, ISO/IEC 17025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영국의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가 주관하는 외부숙련도 프로그램에도 매년 참가하여 우수한 기술수준을 인정받고 있어 외국 선진 검사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분석 기술수준과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2007년도에는 액체질량분석기 등 첨단 분석검사장비 42종 81대를 확보하여 분석능력을 더욱 보강하였으며, 분석검사원에 대하여는 일산화탄소·항생물질·중금속 등 관련 8개 분야 45명을 국내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석검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제 4 절 수산물 수출·입 대책*

1. 수입 개방에 따른 합리적인 수입 관리대책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3년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1989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국제수지(BOP)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허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는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방을 실시하여 1997년 7월 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로 우리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가수산물 수입으로 초래되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3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를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대상품목 및 조정관세율을 조정·시행해 왔으며 2007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뱀장어(활어), 돔(활어), 오징어(냉동) 등 9개 품목을 지정·운영하였다.

2. 수산물 수출 진흥대책

우리나라 1차산업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왔던 수산업은 연근해 수산물의 생산 정체와 시장개방 등 국내외 여건 악화로 2001년도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래 수출은 정체를 보인 반면 수입은 매년 늘어나 2007년에도 1,831백만\$의 적자를 보였다. 이러한 수입증가는 국내 수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출이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은 수산물 수출 진흥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진단을 통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왔다.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물 수출증대를 통한 잘 사는 수산업·어촌을 실현하고자 「현장 맞춤형 수산물 수출 인프라 확충」 「수산물 가공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강화」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수출촉진」 「수출 지원체계 구축·활성화」라는 5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9개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이 담긴 「중장기 수산물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수출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가. 해외시장 다변화 추진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유망한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199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우수수산물 광고·수출주력품목 육성 등이며 2007년에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나. 수출촉진 및 증대를 위한 수산외교협상 강화

최근 수출 대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수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수산물의 제1 수출국인 일본 또한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어, 대일 수출 확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한·일 양국간 고위급 회담 및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양국간 수산물 교역현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대일 김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지난 2004년 12월 1일 ‘일본의 김 IQ제도가 WTO 규정에 부적합’ 함을 이유로 WTO에 제소하였으며 2006년 1월 20일에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김 IQ물량을 1,200만 속으로 증량하기로 한·일 정부간 합의하였다. 정부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김 IQ 물량의 소진을 위해 국내적으로 우량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김 이물질선별기 구입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의 김 할당방식 및 김 규격 등 김 IQ 제도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본측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다시마 조제품 IQ 물량의 증대를 요구하여 기존의 500톤에서 100톤이 증가한 600톤의 IQ를 확보하였다.

다. 수출업체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책 추진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수산물 수출업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7년에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료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 1,366억 원을 연리 4%(업체 평가결과 최우수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3.0%~3.5%)로 융자 지원하였다.

수산물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국내 생산량, 수출동향 및 일본·미국·중국 등의 해외시장정보 등을 담은 자료를 작성하여 4월부터 매월 수산물 수출업체(500여개사)에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제 5 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1. 가공제품 생산

2007년도 수산물 가공제품생산은 1,384천 톤으로 전년도의 1,547천 톤 대비 89%의 수준으로 생산되었으며, 처리 형태별·품종별 생산추이는 <표 63>과 같다.

<표 63>

수산가공품 생산 추이

(단위 : 톤, %)

구 분	'04	'05	'06	'07	'07 / '06
합 계	1,528,795	1,559,201	1,546,784	1,384,000	89
○ 고차가공품	348,007	316,029	298,386	283,689	95
- 동결처리	60,047	57,213	52,102	72,958	140
- 통 조 립	159,638	138,585	149,487	119,584	80
- 한 천	458	443	329	171	52
- 연 제 품	96,581	88,290	69,350	72,913	105
- 조미가공품	22,486	19,759	19,500	13,421	69
- 어 유 분	8,797	11,739	7,618	4,642	61
○ 단순가공품	1,180,788	1,243,172	1,248,398	1,100,311	88
- 원형동결	993,030	965,868	980,958	992,564	101
- 건 제 품	53,064	58,343	69,259	37,094	54
- 염신장품	34,626	43,534	42,998	30,991	72
- 해조제품	71,265	153,597	135,668	13,659	10
- 기 타	28,803	21,830	19,515	26,003	133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2. 가공산업 지원

수산물 가공제품의 생산증대와 산지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등 시설자금 144억 원과 가공업체 운영자금 100억 원 등 24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용은 <표 64>과 같다.

이와 별도로, 수산물 유통의 One-Stop 체제 구축과 원양어획물의 가공수출 등 물류센터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부산 감천항에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조성 사업비 170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64>

가공업체 지원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04		'05		'06		'07		'07/06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개소	금액	
합 계	93	23,645	37	19,251	45	26,929	53	24,390	91
○ 시설 자금	43	12,700	37	11,251	45	14,929	53	14,390	96
- 냉동냉장시설	5	5,000	4	4,611	3	3,389	4	3,000	89
- 가공시설현대화	2	1,080	3	1,560	4	3,600	6	3,000	83
- 산지가공시설	10	3,740	7	3,700	17	6,680	17	6,070	91
- 선어회가공시설	3	1,500							-
- 기 타	23	1,380	23	1,380	21	1,260	26	2,320	184
○ 운영 자금	50	10,945	-	8,000	-	12,000		10,000	83
- 냉동냉장업	18	5,150							
- 통조림제조업	4	700							
- 조미가공업	1	100							
- 해조가공업	8	1,190							
- 연제품가공업	1	100							
- 기 타	18	3,70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 '05년부터 가공업체 운영자금은 업종별로 분류 않고 통합운영

3.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추진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국가가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증표를 표시하여 시장에 출하하게 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1993년 4월부터 실시된 제도로써 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과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로 구분된다.

수산전통식품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식품의 계승 및 육성을 위해 품목을 지정하고, 공장심사 및 품질심사 후 그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상품에 「물레방아」 마크를 부착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써, 2007년 말 현재 젓갈류·죽류·게장류 등 5개류 47개 품목을 지정하여 82개 업체에서 인증을 받아 생산·출하하고 있으며, 1999년 최초로 송어 어란 제조 기능보유자를 수산물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표 65〉 수산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분 류	대 상 품 목
젓갈류 (30)	○ 젓갈 : 오징어, 명란, 창란, 조개, 꼴뚜기, 까나리, 어리굴, 소라, 곤쟁이, 멸치, 대구아가미, 명태아가미, 토하, 자리, 새우, 오분자기, 뽕뎡이, 자하, 우렁챙이(명게), 청어알, 가리비, 갈치속, 한치, 전복 ○ 액젓 : 멸치, 까나리, 청매실멸치, 새우 ○ 식혜 : 가자미, 명태
죽 류(6)	○ 북어, 대구, 전복, 홍합, 대합, 굴
게장류(3)	○ 꽃게, 민꽃게(돌게), 참게
건제품(2)	○ 굴비, 마른가닥미역
기 타(6)	○ 조미김, 고추장굴비, 재첩국, 양념장어, 부각류(해조류), 어간장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한편,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산지특산물을 대상으로 품질심사 후 그 품질을 인증하여 상품에 「품」자 마크를 표시하여 출하하는 제도로써,

인증대상품목은 수산물의 경우 건제품 15, 염장품 3, 해조류 9, 횡감용수산물 23, 냉동수산물 28개 등 78개 품목, 수산특산물은 조미가공품 9, 해조가공품 2개 등 11개 품목으로서 2007년 110개 업체가 인증을 받아 생산·출하하고 있다.

〈표 66〉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분 류	대 상 품 목
건제품 (15)	○ 마른오징어, 덜마른오징어, 마른옥돔, 마른멸치, 마른한치, 마른꽃새우, 황태, 황태포, 황태채, 굴비, 마른홍합, 마른굴, 콩치과메기, 마른뱅어포, 덜마른한치
염장품(3)	○ 간다시마, 간미역, 간고등어
해조류 (9)	○ 마른김, 마른돌김, 마른가닥미역, 마른썰은미역, 마른실미역, 마른다시마, 마른썰은다시마, 찢돔, 마른김(자반용)
횡감용 수산물 (23)	○ 신선·냉장품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방어, 삼치, 농어, 오징어, 붕장어, 우렁쉥이, 생굴, 홍어, 병어, 전어 ○ 냉동품 : 새조개, 피조개, 새우, 북방대합, 한치, 참치, 학공치, 홍어, 병어, 키조개(개아지살)
냉 동 수산물 (28)	○ 고등어, 갈치, 삼치, 뱀장어, 붕장어, 대구, 꽃게, 가자미, 참조기, 참돔, 눈볼대, 전갱이, 오징어, 문어, 콩치, 청어, 새우, 옥돔, 굴, 병어, 민어, 홍어, 키조개(개아지살), 전복, 주꾸미, 명태, 붉은대게살(자숙, 각육), 붉은대게살(자숙, 봉육)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표 67〉 수산 특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

분 류	대 상 품 목
조미가공품(9)	○ 조미취치포, 조미개량조개, 조미오징어, 조미썬오징어, 조미늘인오징어, 조미썰은취치포, 조미늘인취치포, 송어(훈제), 산천어(훈제)
해조가공품(2)	○ 다시마환, 다시마과립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제 4 장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어항 개발*

제 1 절 어촌개발

1. 어촌종합개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도시 집중, 지역간 또는 도시·어촌 간 불균형, 환경오염 등 개발후유증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1980년대 중반까지의 수산정책도 증산지향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어촌개발은 투입 우선순위에서 밀려 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어가 수는 1997년 100천 호에서 2007년에는 74천 호로 줄어들었고, 도시가계소득에 대비한 어가소득 또한 1997년 74% 수준에서 2007년에는 69.5%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1988년부터 시범적으로 『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어촌계별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어·패류양식 등 소득증대 사업과 도로 등 생산기반시설 및 상·하수도, 어업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을 스스로 선택·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향식 개발방식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정부 사업방식과는 매우 다른 내용의 사업이었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전국에 바다와 접하고 있는 연안시·군중에서 사업대상 연안시·군이 65개임을 고려하여 “1개 시·군에 1개 어촌계씩” 65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하여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간 18,742백만 원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65개 사업 실시 어촌계 중에서 27개가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소득 증가율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촌의 노인·부녀·장년·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고 협의하게 됨으로써 어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전국의 모든 어촌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1994년부터는 여러 개의 어촌계를 묶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총 230개 권역:1단계 160개 권역, 2단계 70개 권역)하고 선정된 권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1994년 7월 농어촌발전특별세의 신설로 투입재원 5,432억 원을 확보한 후, 1995년도부터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당해연도에는 21개 권역에 52,500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2007년도까지 176개 권역에 562,062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68〉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 계		'88~'92	'94~'05	'06	'07
	사 업 량	완 료	217	65	135	17
계 속		18	-	18	-	24
사 업 비	580,804		18,742	487,885	38,646	35,53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 주 : 1. 지원율:(1988~1992년) 국고 70%, 지방비 30%
 (1994~2003년) 국고 50%, 지방비 45%, 자담 5%
 (2004년 신규사업부터)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
2. 사업량 중 1988~1992년 기간은 어촌계수이며, 1994년 이후는 권역수임
3. 본 사업은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03년부터는 2개년사업으로 추진
4. 2단계 70개 권역은 어촌계 수를 기준으로 대(50억이하)·중(40억이하)·소(30억이하)로 구분 시행

〈표 69〉 시·도별 어촌개발사업 지원실적('08년) (단위 : 권역, 백만원)

구분	합 계	부 산	강 원	충 남	전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권역수	24	1	1	1	1	10	3	6	1
사업비	35,531	1,750	1,375	1,375	1,375	15,000	4,125	9,225	1,306
권역명		기 장 · 기장	삼척 · 원덕	태 안 · 태안2	고창 남부	여수 여자 고흥 여자남부 고흥 지죽 장흥 남부 영광 대신 완도 약산 완도 금일 진도 관매거차 신안 팔금 신안 장산	울진 죽변 포항 하정 영덕 삼사	마산 진동만 남해 강진만 사천사천해안 통영통영육지 남해 남면서부 남해 지죽	제주 구좌서부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주 : 기본조사용역비는 제외된 수치임

지원규모는 1단계의 경우 권역당 평균 3,500백만 원이고, 2단계의 경우 대(50억 이하)·중(40억이하)·소권역(30억이하)으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지원조건은 국고 80%, 지방비 15%, 자담 5%이며, 특히 자담 5%이며, 공공부문은 집행주체인 시·군으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여 최대한 어업인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선착장·물량장 등 어선계류시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수산특산물 가공·공동작업장 등 수산업관련 육상시설, 낚시터·직판장·관광낚시어선 등 어촌소득기반시설 등이며, 이 사업은 어업소득과 어업 외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환경개선을 연계시킴으로써 어촌정주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2. 어촌관광 활성화

어장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 어업여건의 악화에 따른 어촌의 어업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WTO/DDA, FTA 협상 등 시장개방 및 보조금 철폐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어촌지원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소득 증가 및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어촌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 도시/어촌교류방안등을 담은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총사업비 4,732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관광모델 24개소(어촌어항 복합공간 7개소, 다기능어항 6개소, 어촌관광단지 11개소)에 대한 어촌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어촌계장 등 어촌마을 리더그룹에 대한 어촌관광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어촌관광 마을 운영 컨설팅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가.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

1) 어촌관광모델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2004년)에 따라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 찾는 관광어촌」을 모토로 우선 어촌관광모델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표 70>와 같이 모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까지 어촌·어항복합공간 6개소, 다기능어항 6개소, 어촌관광단지 8개소 등 20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쳤고, 어촌관광단지인 무창포항에 대한 시설사업이 착수된 데 이어, 어촌·어항복합공간인 마량항은 시범사업으로 시행 완료하였다.

2007년도에는 어촌관광단지 3개소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쳤고, 어촌·어항복합공간 1개(맥전포항)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어촌·어항 복합공간 1개소(안목), 다기능어항 4개소(대포, 격포, 국동, 흥원항), 어촌관광단지 3개소(무창포, 전촌, 법환)에 대한 시설사업을 착수하였다.

특히, 어촌·어항복합공간인 마량항에 대한 어항부문 시설공사가 모델사업 중 최초로 준공됨으로써 본격적인 어촌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표 70〉 어촌관광 모델개발사업(시범사업)

구 분	I형(복합공간)	II형(다기능어항)	III형(어촌관광단지)
개 념	◦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 어촌·어항복합공간	◦ 기존어항 + 관광기능 ⇒ 다기능어항	◦ 기존어촌 + 관광기능 ⇒ 어촌관광단지
사업기간	◦ 6개년('04~'13)	◦ 6개년('04~'13)	◦ 6개년('04~'13)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	◦ 지자체
사업 대상	◦ 7개소('04.12.15선정) 어유정항(인천시 강화군) 정자항(울산시 북구) 강릉항(강원도 강릉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양포항(경북 포항시) 맥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도 남제주군)	◦ 6개소('04.10.25선정) 대변항(부산시 기장군) 대포항(강원도 속초시) 홍원항(충남 서천군) 국동항(전남 여수시) 격포항(전북 부안군) 지세포항(경남 거제시)	◦ 11개소('04.12.15선정) 대항(부산시 강서구) 초지(인천시 강화군) 대송(울산시 울주군) 전곡(경기도 화성시) 대진(강원도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방축(전남 신안군) 전촌(경북 경주시) 학림(경남 통영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사업 규모	◦ 총 1,079억원 -개소당 150억원 · 어항부문:100억원 · 어촌부문:50억원 ·)국비:25억원 ·)도비:25억원 -기본및실시설계비 29억원	◦ 총 2,957억원 -개소당 500억원 · 국가어항부문:300억원 · 민자유치부문:200억원 * 대포항 372억원 -기본및실시설계비 85억원	◦ 총 696억원 -개소당 60억원 · 어촌부문:60억원 ·)국비:30억원 ·)도비:30억원 -기본설계및홍보비 36억원
주요 시설	◦ Fisherina, 녹지공원 복지회관, 생태체험장	◦ Seafood센터, 마리나 해상위락시설, 관광호텔	◦ 수변공원, 산책로 Seafood센터

※ 국회 등 외부기관의 유사사업 통합합 지적에 따라 상기사업의 명칭을 통합운영
 - 어촌관광개발 : 어촌체험마을+ I 모델(어촌부분)+III모델(어촌관광단지)
 - 다기능어항 : I 모델(어항부분)+II모델(다기능어항)

2)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2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은 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마을 등 11개 마을을 조성하였다.

〈표 71〉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조성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76	2	4	8	6	7	4	20	7	12	6
2001	9	1		2	1	1		1	1	1	1
2002	8	-	-	1	1	1	1	1	1	1	1
2003	11	1	1	1	1	-	1	2	1	2	1
2004	12	-	1	1	1	1	1	3	1	2	1
2005	18	-	1	2	1	3	1	5	2	2	1
2006	18	-	1	2	3	4	-	8	1	4	1
2007	11	-	-	-	1	-	-	6	-	4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표 72〉 연도별 어촌체험마을 투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2년까지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사 업 량	112	17	11	12	18	18	11	
사 업 비	합 계	68,222	13,422	5,500	6,000	11,000	13,800	8,100
	국 비	34,111	6,711	2,750	3,000	5,500	6,900	4,050
	지방비	30,700	6,040	2,475	2,700	4,950	6,210	3,645
	자부담	3,411	671	275	300	550	690	40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3) 기타시설

1998년부터 “어촌민속전시관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 민속 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공간 제공과 지역간 균등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어업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 수산·친 해양교육의 산실을 마련코자 2006년까지 전남 완도(60억 원)·경남 거제(60억 원)·강원 삼척(60억 원), 부산 북구(60억 원), 경기 안산(60억 원), 경북 영덕(60억 원), 제주 북제주(60억 원) 등 7개 지역에 420억 원(국비 210억 원, 지방비 21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관광인프라로 활용하는 등 현재 7개소가 개관하여 어촌과 수산업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 어촌관광홍보 및 도시/어촌교류

1) 어촌관광홍보

2007년은 6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름다운어촌 찾아가기 행사(30회 2,160명),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등의 추진과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등 어촌관광 관련 박람회에 참가(2회)하여 어촌관광모델 전시 및 홍보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언론매체 및 지하철 광고판,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어촌관광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73〉 연도별 어촌관광홍보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어촌관광홍보	-	-	-	130	530	580	66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2) 도시/어촌교류

어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 공동화의 지속으로 활력을 잃어 가고 있는 어촌을 되살리고자 도시와의 교류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24일 어촌사랑 선포식과 함께 100개의 기업·단체와 100개의 어촌이 처음으로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하고 교류의 물꼬를 터 2006년까지 총 439개의 기업·단체와 어촌이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는 외연확대와 함께 상호 방문 및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7년에도 114건의 도시·어촌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어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 2 절 어항시설 확충*

1. 어항개발의 개요

수산업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여 <표 74 참조> 지정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 74> 어항지정 현황 (’07.12.31기준)

구 분		항수	지정권자	투입재원	비 고
법정항	국가어항	10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비 100%	
	지방어항	289	시·도지사	국비 80% 지방비20%	
	어촌정주어항	579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비100%	
비법정항	소규모항	1,334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비 100%	육지:534개항 도서:800개항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2. 어항개발 현황

가. 국가어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을 착수한 이후 104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36,049억 원 중 2007년까지 총사업비의 65.5%에 해당하는 23,625억 원을 투입하여 90개 항을 완공하였으며 86.5%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표 75〉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단위 :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수	104	2	5	2	-	14	7	6	30	15	17	6
완공항	90	2	4	2	-	13	5	5	25	14	15	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2007년에는 41개 항에 1,467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 투입중인 전남 가거도 등 5개 항을 완공하고, 시범개발중인 전북 격포항 등 7개 다기능어항에 381억 원을 투입하여 경북 양포항을 완료하고 강원 강릉항 등 4개 항을 개발 착수하였으며, 녹동항 등 4개 항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하였다.

나. 지방어항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지방어항은 1972년에 최초로 255개 항을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완공율이 저조함에 따라 1994년부터 농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집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균형개발특별세 재원으로 56개 항에 646억 원(국비 488억 원, 지방비 158억 원)을 투입 21개 항을 완공함으로써, 전체 289개 항 중 134개 항이 완공(완공율 46%)되었다.

〈표 76〉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 현황

(단위 : 개항)

구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수	289	14	15	4	5	14	29	12	92	23	63	18
완공항	134	10	9	3	3	4	17	3	32	9	34	1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다. 어촌정주어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에 최초로 213개 항을 지정하였으며, 2007년 현재 579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나, 지방어항의 완공율이 부진함에 따라 완공위주의 집중 투입을 위하여 어촌정주어항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77〉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 현황 (단위 : 개항)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579	14	28	13	10	19	16	0	26	4	345	46
완공항	133	1	10	3	4	6	-	-	1	-	108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3.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어촌은 오랜 생활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공간으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어업 여건의 악화와 어촌 정주환경의 변화 및 관광패턴의 변화에 따라 어촌 관광은 어촌 소득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촌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인력을 어촌에 확보하여 어촌의 Amenity를 활용한 다양한 어업외 소득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어촌개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기 추진 사업들을 통폐합하는 한편, 수산업·어촌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어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양식어업인에 대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사업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양식재해보험은 대상품종, 대상재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능 품종부터 시범사업 도입(2008년)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경영기반을 지속 확충할 것이다

제 3 절 어선건조 및 장비·설비 현대화*

1. 친환경 어선건조 지원 및 안전설비 지원

당초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어선 현대화를 위하여 1977년 연근해어업진흥 계획에 따라 「노후어선대체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최근 FRP가 환경오염물질로 밝혀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6년도 부터 예산 800백만 원으로 친환경 재질의 어선건조를 지원하여 충청남도에서 사상 최초로 2척(7.75톤)의 알루미늄 어선을 건조하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배치된다는 국회(2005년 예결위) 지적이 있어 동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알루미늄 재질의 어선 건조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한편, VHF 무선설비는 2006년도에 예산 200백만 원을 투입하여 316대를 설치 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사업에서 지원된다.

2. 어선기관 대체 및 장비·설비 개량 지원

1977년부터 연근해어업진흥계획에 따라 해양사고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 되었으며 1988년 이후 보조 지원을 중단하고, 수산업발전 기금에 의한 용자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에 1,112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600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표 78〉 2007년도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 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보조	융자	소계	자담	
합 계		1,390	-	1,112	278	278	
기	어선 기관대체	5,594마력	895	-	716	179	179
금	장비·설비개량	40척	495	-	396	99	99

자료 : 어선인력과

제 5 장

어업협력 강화 및 원양어업 육성

제 1 절 국제 어업협력 강화

1.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2007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어선이 입어한 연안국은 5대양에 걸쳐 32개국으로서 지난해 28개국보다 증가하였고 작년에 입어하였던 국가인 케냐는 올해 미 입어하였으며 감비아, 라이베리아와 베트남은 재 입어하였고, 몰디브에 최초로 입어하였다.

우리나라가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여 13개국이나, 우리 어선이 입어한 32개국 중 어업협정이 체결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함에 따라, 기 체결된 어업협정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모색 및 연안국에 대한 어업협력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2007년도에 우리어선이 입어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상호 입어하는 일본, 중국과는 입어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우리 원양어선이 일방적으로 입어하는 32개국은 입어료를 지불하고 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가 연안국에 지불한 입어료 총액은 61,081천 \$, 어획량은 712천M/T으로서 2006년도의 입어료 총액 57,972천 \$, 어획량은 639천M/T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오징어 채낚기어업, 참치선망어업 등의 어황 회복에 기인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우리나라 어선이 연안국에 입어하는 조건 즉, 조업수역 및 척수, 어획 할당량, 입어료 등은 매년 정기적으로 어업회담을 개최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 어선의 원활한 입어를 위해서는 연안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특히 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의 하나로써 태평양 도서국(키리바시, 솔로몬, 마이크로네시아), 아프리카 연안국(기니, 기니비사우)에 대해 컴퓨터 및 통신기기 등 337백만 원 상당의 물자공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우루과이, 콜롬비아와 수산협력약정문안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알제리와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표 79〉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현황

국가별	체결일	발효일	비 고
합 계			13개국
중 국	'00. 8. 3	'01. 6.30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일 본	'98.11.28	'99. 1.22	6개월전 통보로 종료
파푸아뉴기니	'92. 1.25	'92. 4.15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러 시 아	'91. 9.16	'91.10.22	6개월전 폐기통보 없을시 매 1년씩 연장
모 리 타 니 아	'84. 1. 7	'84. 1. 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에 쿠 아 도 르	'84. 5.22	'84. 9.19	6개월전 통보시 종료
호 주	'83.11.23	'83.11.24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투 발 루	'80. 6.18	'80. 6.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북 아 일 랜 드	'80. 8.25	'80. 8.25	3개월전 통보시 종료
솔 로 몬	'80.12.12	'80.12.12	12개월전 통보시 종료
키 리 바 시	'80.12.18	'80.12.18	6개월전 통보시 종료
프 랑 스	'80. 9.19	'80.12.19	3개월전 통보시 종료
이 란	'77. 5.11	'78. 4. 1	6개월전 통보시 종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표 80〉 양국간 수산협력약정 체결현황

국가별	체결 부처	체결(발효)	비 고
합 계			4개국
노 르 웨 이	수산부	'02. 1.24	2년마다 정례회의 개최 등
베 트 남	수산부	'02. 4.23	양국 EEZ내 어업활동 상호 지원 등
아르헨티나	경제생산부 농축수산식품처	'03. 9.1	수산·양식 기술의 공동개발 등
알 제 리	수산어로자원부	'07. 10.22	수산·양식업의 공동개발 등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가. 한·일 어업협정*

한·일 양국은 2007년 12월 13일 한국에서 「제10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양국 EEZ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1,000척, 60,000톤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2008년도 총 어획할당량은 양국이 각각 지난 해 보다 500톤씩 감소하였으나 우리의 주력업종인 연승, 중형기선저인망, 선망, 오징어채낚기, 콩치붕수망어업은 전년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축소로 조정하고, 반면 비주력 업종인 대형기저, 외줄낚시, 북어채낚기 등을 축소 조정하여 우리의 실익을 도모하였다.

한편, 일본은 조업금지기간 및 조업금지수역 확대와 어구부설규제 도입 등 조업규제를 대폭 제안하였으나 양국 어업협력 측면을 강조하여 새로운 추가 조업규제 없이 조업조건은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조업하게 되었고, 연말~연초에 걸쳐 계속 조업하는 어선의 조업편의를 위해 2008년 2월 15일까지는 2007년도 조업일지를 계속 사용토록 하여 새로운 조업일지 사용을 위해 조업중 귀항 또는 조업중인 어선에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또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 중 2009년의 어획할당에 관련된 것의 어획동향자료, 자원상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어선간 안전 조업 질서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어선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자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지원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9년도 어업교섭 대책으로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어획할당 대상어종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하고, 어업별 조업실태 조사결과와 관련 어업인·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력어종(어종) 위주의 입어교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표 81〉 2008년 한·일 양국 EEZ 입어동향

(단위 : 척, 톤, %, 2008년 7월 말 기준)

구 분	합 의 사 항		어 획 실 적		
	척 수	할당량	척 수	어획량	소진율
한국어선	1,000	60,000	561	4,952	8.3
일본어선	1,000	60,000	120	2,718	4.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나. 한·중 어업협정

한중 양국은 2008년도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하여 2007년 12월 7일 중국에서 제7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담에서 우리어선의 중국EEZ 입어규모는 1,600척 68,000톤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하였고, 중국어선은 금년보다 58척 930톤이 감축된 1,859척 71,000톤으로 확정하였다.

특히, 감축대상 어선 58척중 어획강도가 큰 타망어선 44척을 감축함으로써 중국어선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한중어업공동위원회는 업종별, 어종별 어획할당제 도입시기 및 추진방법을 2008년 12월 제8차 어공위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중국측은 우리측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제도운영 실태를 시찰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측의 조사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공동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중국어선의 어획생산량 축소보고 차단을 위해 운반선에 대하여도 어획물 전재량을 일일보고토록 하고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이중이상의 자망어구의 적재 및 사용을 제한하고 쌍타망 어선의 이중이상 자루그물 사용을 단속하기로 중국측과 합의하였다.

또한, 서해특정금지구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에 관한 영상자료를 중국측에 제공함으로써 동 수역에 대한 불법어업 실태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어업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촉진하기로 하고 양국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상호승선 교류 및 어업지도단속 공무원의 상호방문을 통해 조업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82〉 2008년 한·중 양국 EEZ 입어동향

(단위 : 척, 톤, %, 2008년 6월 말 기준)

구 분	합 의 사 항		어 획 실 적		
	척 수	할당량	척 수	어획량	소진율
한국어선	1,600	68,000	166	4,215	6.2
중국어선	1,859	71,000	1,033	9,058	12.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다. 한·러 어업협정*

1991년 9월 체결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쿼터에 의한 입어 등을 협의해 오고 있다.

러시아 수역은 다른 원양수역과는 달리 우리 바다와 연접해 있어 어장간 거리가 짧아 어업경비 소요가 적고 조업관리도 용이(러시아 15일, 남미·대서양 60일, 인도양 45일)하는 등 장점이 많아,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3대 어종인 명태의 총 생산량 중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어장이다.

특히,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이후 북해도 수역 명태트롤어선이 철수함에 따라 북양트롤어선은 대체어장이 전무한 상태로 현재 러시아어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 어장은 명태 외에도 청어·대구·꽂치·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자원량이 풍부하여 수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자원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어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83〉

명태생산 추이

(단위 : 톤)

구 분		'02	'03	'04	'05	'06	'07
합 계		63,761	168,213	128,792	165,416	156,925	214,737
원 양	소 계	63,546	167,971	128,728	165,391	156,865	214,702
	정부쿼터	24,952	21,975	19,997	26,004	26,248	20,200
	합 작	38,594	145,996	108,731	139,387	130,617	194,502
연 근 해		215	242	64	25	60	3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러시아 수역에서의 어획쿼터는 1991년 9월 체결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간 교대로 개최되는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정부간 쿼터가 결정되고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있으며, 어선별 배정은 정부간 쿼터가 확정된 이후 한국원양산업협회 “북양트롤 위원회”에서 어선별 톤급과 마력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에 따라 배정하며, 어획쿼터 배정이 확정되면 러시아연방 “수산청”로 부터 어업허가를 받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게 된다.

러시아측은 제16차 한·러 어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측에 34,115톤 중 명태 20,500톤, 대구 2,650톤, 청어 250톤, 가오리 800톤, 가자미 300톤, 꽁치 2,500톤, 오징어 7,000톤, 복어 115톤의 정부간 어획쿼터를 할당하였고, 한국측은 정부간 어획쿼터 34,115톤중 총31,146.15톤(91,3%)을 소진하였으며, 어종별로 명태 20,200톤, 오징어4,632톤, 대구2,644톤, 가오리797톤, 청어79톤, 꽁치 2,494톤, 가자미 300톤, 복어0.15톤을 소진하였다.

그리고 2008년도 입어를 위한 제17차 「한·러어업위원회」는 2007년 12월 서울에서 개최하여 명태, 20,500톤, 오징어 7,000톤, 꽁치 5,000톤, 가오리 800톤, 청어 250톤 등 총 36,615톤의 정부쿼터를 할당 받았다.

〈표 84〉 연도별 한·러 어획쿼터 및 조업실적

(단위 : 톤)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59,300 (33,839)	51,800 (31,244)	32,050 (25,339)	38,250 (34,250)	38,825 (36,205)	34,115 (31,146)
○ 명 태	25,000 (24,952)	22,000 (21,975)	20,000 (19,997)	26,500 (26,004)	26,250 (26,248)	20,500 (20,200)
- 정 부	25,000 (24,952)	22,000 (21,975)	20,000 (19,997)	26,500 (26,004)	26,250 (26,248)	20,500 (20,200)
· 오호츠크	- (-)	- (-)	- (-)	- (-)	- (-)	- (-)
· 베 링	22,000 (21,954)	22,000 (21,975)	20,000 (1,997)	26,500 (26,004)	26,250 (26,248)	20,500 (20,200)
· 남 쿠 릴	3,000 (2,998)	-	-	-	-	-
○ 청 어	- (-)	-	- (-)	6,000- (-)	6,300 (4,840)	250 (79)
- 정 부	- (-)	-	- (-)	- (-)	325 (31)	250 (79)
- 민 간	- (-)	-	- (-)	- (-)	- (-)	- (-)
○ 대 구	7,000 (5,332)	2,500 (2,499)	2,650 (2,648)	2,650 (2,644)	2,650 (2,649)	2,650 (2,644)
- 정 부	2,500 (2,497)	2,500 (2,499)	2,650 (2,648)	2,650 (2,644)	2,650 (2,649)	2,650 (2,644)
- 민 간	4,500 (2,835)	-	- (-)	- (-)	- (-)	- (-)
○ 오징어	7,300 (2,259)	7,300 (2,586)	4,000 (2,294)	6,000 (2,517)	6,300 (4,840)	7,000 (4,632)
○ 풍 치	20,000 (1,296)	20,000 (4,184)	5,000 (-)	2,500 (2,489)	2,500 (1,839)	2,500 (2,494)
○ 가 오 리	- (-)	- (-)	400 (400)	600 (596)	600 (598)	800 (797)
○ 기 타	- (-)	-	- (-)		(복어)200	(복어) 0.1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 () 소진실적

2. 국제 수산기구와의 협력*

가. 국제 어업 변화 동향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발효 1994년 11월), 1995년의 『유엔공해어업협정』의 채택(발효 2001년 12월) 및 1995년 FAO의 『책임 수산업 규범』 채택 등으로 국제수산자원관리에 있어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국가간 협력과 책임 있는 어업이 강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요 상업어종에 대한 남획이 증가함으로써 자원남획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수산기구의 노력이 강화되었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는 해산(海山) 등에서 행해지는 저층어업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말까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및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 FAO 및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수역에서는 각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저층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FAO는 저층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어업관리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7년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9년 FAO 수산위원회에서 최종 채택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별로 해산 등에서의 저층어업활동이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월 일본 고베에서는 전 세계참치기구 합동회의가 개최되어 행동지침(Course of Action)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는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고가 참치어종의 자원감소와 함께 광우병 등의 여파로 참치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 세계적인 참치자원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참치자원관리기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행동지침의 주요내용은, 첫째, 자원이 고갈되었거나 과도하게 개발중인 참치자원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자원평가 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원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예방적 접근법의 적용을 통하여 어업관리를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하기로 하였다. 둘째, 어획량 통제, 어획노력 통제 등을 통하여 참치어획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증가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셋째, IUU 어업방지를 위한 감시·통제·검색제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어획물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전 세계적인 IUU 선박목록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넷째, 참치자원관리 기구로서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제 수립하여 각 참치기구의 운영 실적을 검토·개선시키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참치어장인 중서부태평양의 참치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4년 6월에 설립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참치자원 악화에 따른 어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동 기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공해상 승선검색 절차를 채택하여 제3국 검색선이 중서부태평양 공해상에서 어선을 승선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등 기존 기구에서도 “어종별 총 허용 어획량(TAC)제도”, “선박감시체제(VMS)” 및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자원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신 국제어업질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원양 어업의 지속적·안정적 조업 보장과 책임 있는 원양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기존에 설립되었거나 설립중인 지역수산관리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채택된 국제어업규범의 이행을 위해 국내적으로 어업관련 법규 정비 및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나.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에의 참여 및 가입 추진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수산기구에 참여하지 않고는 공해조업이 곤란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의 동향을 상시 파악

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동대서양 공해상의 어류, 연체류, 갑각류 및 정착성 어류 자원 관리를 위해 2001년 설립된 남동대서양수산물기구(SEAFO : South 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와, 남인도양 공해상의 비참치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연승 및 트롤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채택된 남인도양수협정(SIOFA :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태평양 공해상의 비참치어종, 특히, 전갱이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중인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설립협상과, 북서태평양의 저층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중인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NWPRFMO ; North Western Pacific 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 설립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동 기구설립협상 제2차 회의를 2007년 1월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비준을 미루어온 유엔공해어업협정을 2008년 2월 1일자로 비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다. 국제수산물기구에서의 주요활동 상황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기 가입한 16개 수산물기구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입 추진 중이거나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수산물관련 국제기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도모는 물론, 장기적인 어장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7년도에는 7개 지역수산물관리기구(5개 참치관리기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기구 및 북서대서양수산물기구) 관할 수역에서 전체 원양생산량 711천톤의 48%인 340천톤을 어획하였으며, 이중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가 관리하는 수

역에서는 참치 285천톤(원양생산량의 40%, 참치생산량 300천톤의 95%)을 어획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서부태평양에서의 지속적인 참치어장확보가 앞으로 원양어업의 지속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보고, 별도의 협상대책단을 구성하여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제수산기구 중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주요 기구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표 85>와 같다.

<표 85>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 (2007년 12월 기준)

번호	기구명	본부 (설립일)	가입일	회원국	주요활동
1	FAO 수산위원회	로 마 (1965. 5)	1965.12	일본, 미국 등 190개국	세계 수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방안 논의
2	OECD 수산위원회	파 리 (1961. 9)	1996.12	OECD 가입 30개국	회원국 수산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3	APEC 수산실무그룹	싱가포르 (1991. 3)	1991. 3	APEC 회원국 21개국	역내 수산자원관리 기술이전 등
4	국제포경위원회(IWC)	케임브리지 (1946.12)	1978.12	일본, 미국 등 81개국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
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위원회(CCAMLR)	호 주 (1982.4)	1985. 4	칠레, 아르헨티나 등 25개국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이용
6	중부베링해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CBSPC)	시 애 틀 (1995.12)	1995.12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존
7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NAFO)	캐 나 다 (1979. 1)	1993.12	캐나다, 러시아 등 12개국	북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
8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CECAF)	로 마 (1967. 9)	1968. 1	미국, 일본 등 34개국	중동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9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WECAFC)	로 마 (1973.11)	1974. 1	이태리, 스페인 등 35개국	중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10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APFIC)	방 쿡 (1948.11)	1950. 1	일본, 베트남 등 20개국	회원국의 합리적 수산정책 수립 지원

번호	기구명	본부 (설립일)	가입일	회원국	주요활동
11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ICCAT)	스페인 (1969. 3)	1970. 8	스페인 등 43개국	대서양 다랑어자원 보존 및 이용
12	인도양다랑어위원회 (IOTC)	세이셸 (1996. 3)	1996. 3	호주, 인도 등 24개국	인도양 다랑어자원 보존이용
1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호주 (1994. 5)	2001.10	일본, 호주 등 5개국	남방참다랑어 자원 보존관리
14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 (WCPFC)	마이크로 네시아 (2004. 6)	2004.10	호주, 뉴질랜드 등 25개국	태평양 수역 고도회유성 어종 보존관리
15	북태평양소하성 어족위원회(NPAFC)	벤쿠버 (1993. 2)	2003. 5	캐나다 등 5개국	연어자원의 보존관리
16	남동대서양수산물기구 (SEAFO)	나미비아 (2003. 4)	가입 추진중	앙골라 등 4개국	남동대서양 수산자원 최적이용
17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ATTC)	미국, 라호야 (1950.3)	2005.12	미국, 일본 등 16개국	동부태평양 수역 다랑어자원 보존관리
18	아·태지역 양식기구 (NACA)	방콕 (1990. 1)	미가입	북한, 중국 등 14개국	양식기술 정보교환 등
19	태평양공동체사무국 (SPC)	뉴칼레도니아 (1947. 2)	"	프랑스 등 27개국	다랑어관련 자료수집, 과학조사
20	남인도양수산약정 (SIOFA)	미정 설립준비	가입 추진중	호주, 뉴질랜드 등	남인도양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21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 (NWPRFMO)	일본(임) 설립준비	가입 추진중	러시아, 일본, 미국 등	북서태평양 저층생태계 관리 등
22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SPRFMO)	뉴지(임) 설립준비	가입 추진중	EC, 중국 등 약 25개국	남태평양 비참치어종관리 및 잠정조치 채택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라. 책임 있는 어업의 이행 및 기타 사항

책임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각종 국제어업규범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업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지역수산기구를 비롯하여 각 연안국에서는 관할 수역내 조업어선들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어선위치 확인 등 인공위성을 통한 선박감시체제(VMS)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도모하고 조업 위반여부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명확한 증빙자료 확보와 선박조난 발생시 수색 구조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9년에 VMS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2007년 원양어선 200여척 및 러시아수역에 입어하는 근해채낚기 어선 100여척 등 총 300여척의 어선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표 86〉 선박자동위치감시시스템(VMS) 설치 실적 (2007년 12월 기준)

구 분	계	북 양 트 롤	공 치 봉수망	원 양 선 망	저연승	참 치 연 승	해 외 트 롤	원 양 오징어 채낚기
어선척수	382	7	20	28	20	169	119	29
설치현황	232	7	20	25	9	169	2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특히, 지역수산기구에서는 규제조치 준수여부 감독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생물학적 정보 수집을 위해 조업어선에 읍서버 승선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따라 외국인 읍서버 승선에 따른 우리 어선의 조업불편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2002년에 국제읍서버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태평양도서지역사무소에서 2002년

에는 국제오피서버 요원 5명에 대하여, 2003년도부터는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오피서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3년 5명, 2004년 4명, 2005년 5명, 2006년 4명, 2007년 6명을 선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다랑어 연승어선 등에 오피서버가 연 12회 승선하여 과학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한편, 급변하는 국제어업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과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전문적인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국제기구별로 지정된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 사전에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아울러 회의 참석시 대표단 자문 등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의 참석 후에도 결과 보고서를 통한 feedback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토록 하였다.

2007년의 경우 8명의 민간 전문가가 총 12회에 걸쳐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하였고, 그 동안 취약했던 수산물 관련 국제협력분야의 민간 전문인 양성에도 기여하는 등 부수적 성과를 거두었다.

3. 남북수산물협력 추진*

남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2005년 6월 21일~6월 24일)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5년 7월 9일~7월 12일)에서 남북수산물실무회담 개최 문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제1차 남북수산물협력실무협의회가 200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열렸다.

동 실무협의회에서 남북은 서해상 공동어로, 서해상 제3국 불법조업 통제 협력,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사업 진행, 우량품종개발 및 수산분야 기술교류 추진, 제3국 어장 공동 진출 등 5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농림수산물부 어업교섭과

가.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이후 수산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

일 자	회 담	주요 회담내용 및 결과
2006. 3. 2 ~ 3. 3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 근본적인 재설정을 주장하여 서해공동어로 및 바다목장 사업 등이 논의되지 못함
2006. 3. 15	남북수산실무 회담 개최제의	군사회담과는 별개로 동해공동어로를 위한 수산 실무회담(실무접촉포함)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군사회담과 서해공동어로의 선행을 주장하며 거부
2006. 4. 22 ~ 4. 24	제18차 남북 장관급 회담	서해공동어로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실천적인 대책을 취해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함
2006. 5. 16 ~ 5. 18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군사회담과 동일하게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서해공동어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논의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회담이 결렬
2006. 6. 3 ~ 6. 6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남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개최 지연
2007. 2. 27 ~ 3. 2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북핵 6자회담 타결로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었으며, 남북은 4.18~21일까지 평양에서 제13차 남북경추위를 개최하기로 합의
2007. 4. 18 ~ 4. 22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 위 원 회	남북 수산협력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합의
2007. 5. 8 ~ 5. 10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서해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고 공동어로 수역설정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함
2007. 7. 24 ~ 7. 26	제6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별다른 합의 도출없이 종료 · 남측은 NLL기준으로 동일 면적에서 시범적 설정 주장 · 북측은 NLL이남 수역에 설정 주장
2007. 8. 5	제2차 남북 정상회담	'07.8.28~8.30 평양에서 개최 합의하였으나, 8.18일 북측에서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10.2~10.4일간 개최하기로 합의

나. 기타 추진실적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수산협력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우선 학계, 업계, 법조계, 언론계, NGO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남북수산협력자문위원회(2005년 11월 16일)를 발족하였으며, 이를 통해 3차례의 『남북수산협력포럼』 개최하여, 수산부분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고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 및 정책을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제3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 직후인 2006년 3월 15일에는 제10차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을 개최하여 남북수산협력의 추진계획 및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사업자,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 검증을 받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2006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수산분야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남북 수산물교역 사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하는 등 대북 협상력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06년 7월에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북 고성을 방문하여 북한 의 활어 생산 실태 및 소비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남북협력사업 검토를 위한 현장 답사를 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관련업계와 중국을 방문하여 2006년도 북·중간 공동어로 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남북수산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서해 평화정착 T/F’에 일원으로 참여하여 제3국 어선불법 조업과 공동어로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부처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제 2 절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및 경쟁력 제고*

1. 기존 어장의 확보

가. 참치어업

우리나라 참치어업은 1957년 지남호(230톤급)가 인도양에서 시험조업으로 출어한 이래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세계의 참치주 조업국으로 성장하였다.

참치어업의 주 어장은 연승어업의 경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중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키리바시, 솔로몬 등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으며, 선망어업은 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아, 마이크로네시아 수역 등에서 주로 조업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연승어업은 169척이 출어하여 45천 톤을 어획하였으며, 선망어업은 28척이 출어하여 253천 톤을 어획하였다.

나. 오징어어업

우리나라 오징어어업은 1985년 남서대서양(포클랜드)어장이 개발되면서 채낚기어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여 1993년 페루어장 진출, 1995년 알젠틴 관할 수역내에 용선형태의 입어, 1997년 우루과이 어장 진출 등으로 해외어장을 확대하였다.

1997년도에 오징어 과잉생산으로 어가 폭락과 더불어 1998년도에 불어 닥친 IMF 영향에 따른 출어척수 감소로 어획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포클랜드 어장의 어획 호조로 309천 톤의 어획량을 보임에 따라 재고누적으로 업계 자율적인 어획량 감축을 실시하여 2000년에는 178천 톤을 어획하고, 2001년도에는 이보다 15천 톤이 감소된 163천 톤을 어획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하지만 2002년도에는 엘리뇨 현상으로 포클랜드 어장의 어황 저조로 전년대비 13% 감소한 141천 톤을 어획한 후, 2004년도에는 극심한 어획부진에 따라 포클랜드 정부의 조업 조기종료 선언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오징어채낚기 업체의 건의로 정부에서는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19척을 감척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도에는 포클랜드 원양오징어 어장의 어획 회복으로 전년대비 211% 증가한 88천 톤을 어획하고 2007년도는 전년대비 33% 증가한 117천톤을 생산하였다.

다. 트롤어업

(1) 북양 트롤

북양트롤어업은 1966년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과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의 베링해 공동시험조업 실시를 효시로, 1967년 삼양수산(주) 등 민간업체들에 의한 상업조업 개시로 본격화되었으나 1977년 3월 “미·소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를 계기로 소련의 감차카 근해 및 미국 수역에 출어 중이던 북양 트롤 어선들이 전면 철수하게 되었으며, 이중 일부 미국수역에 남아 쿼터조업과 공동어로사업으로 조업하던 어선마저도 쿼터조업은 1987년에, 공동어로사업은 1991년을 끝으로 완전히 철수하였다.

1987년부터 시작된 베링공해조업도 1992년 8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차 베링공해관련국제회의” 결과에 따라 1993년부터 2개년 간 잠정적으로 조업중단이 이루어졌고, 1994년 6월 서명한 『중부베링해명태자원의보호및관리에관한협약』에 의거 명태 자원 량이 167만 톤이 될 때까지 조업을 계속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호츠크공해에 대하여도 1993년 11월 15일 한·러 어업위원회시 양국간 합의사항이 원만히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오호츠크공해 조업을 자제키로 함에 따라, 1993년 4월 25일 이후 실시된 조업중단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 한·러 국교 수교에 따라 민간쿼터를 이용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기 시작한 북양트롤어업은, 1991년 9월 『한·러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본격적으로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게 됨에 따라 매년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쿼터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미·러 수역에서 철수한 북양트롤어선들은 일본 북해도 영해 외측에서 조업하여 오다가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1999년 11월 전면 철수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측은 어업자원 및 자국어업인 보호를 이유로 외국정부용 쿼터량을 감축하고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 오호츠크해에 대하여 외국어선의 조업을 전면 금지하였고, 2001년부터 민간쿼터가 국제입찰로 제도가 변경되어 자국민에게 우선 입찰을 실시하고 잔여량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에게 입찰을 허용하고 있어,

2002년도 민간쿼터 명태 입찰에서 전량 러시아 자국민이 낙찰 받음으로써 우리나라는 민간쿼터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우리 어선들은 안정적인 조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6년도는 정부쿼터 26천 톤의 명태쿼터를 확보하고 2007년도는 정부쿼터 20천톤을 확보하여 각각 소진하였다.

(2) 태평양 트롤

1977년 미·러의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 동 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선 일부가 뉴질랜드 수역으로 어장을 이동하였으며, 1978년에는 양국간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쿼터조업을 하여 왔다. 그러나 뉴질랜드정부의 자원자국화 정책에 따라 외국에 대한 쿼터량이 계속 감소되다가 1992년부터는 정부쿼터가 종식되고 현재는 민간 개별협력에 의해 쿼터량을 확보하여 조업중에 있다.

또한 1986년부터 진출한 인도네시아수역 등은 최근 외국어선의 과당 경쟁으로 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연안국들이 자원자국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날로

어업여건이 어려워져 기존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와 병행하여 새로운 어장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006년도는 해외트롤어업 생산량(210천 톤) 중 태평양 수역에서 73천 톤을 생산하고 2007년도에는 해외트롤 생산량(245천 톤) 중 동 수역에서 38천톤을 생산하였다.

(3) 대서양 트롤

1966년부터 진출한 대서양트롤어업은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1970년대에는 100여척으로 출어척수가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중서대서양의 자원감소에 따라 출어척수가 감소되자 어선들은 남서대서양을 비롯하여 NAFO수역, 인도네시아 등 신 어장으로 진출하여 다소 활기를 찾았다.

그러나 NAFO수역에서도 캐나다 정부가 가자미 등 경계왕래어족자원의 보호 조치를 취함에 따라 1993년 4월 29일 동 수역에서 조업하던 3척이 완전 철수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대서양 트롤어선은 기니수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아프리카수역과 앙골라수역 및 남서대서양 공해수역 등 어장에 출어하여 조기, 민어, 오징어 등을 주 포획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나, 주 어장인 기니 꼬나끄리 수역의 경우 외국어선의 과당 경쟁으로 어장이 황폐화됨으로써 어업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도 생산량은 포클랜드수역 오징어 어획 호조로 전년대비 38% 증가한 90천 톤을 생산하고 2007년도에는 64천 톤을 생산하였다.

(4) 인도양 트롤

1970년대 중반에 새로운 어장확보 차원에서 진출한 인도양어장에서는 그 동안 관련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민간교섭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업을 유지하여 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인도양에 출어하는 우리 원양어선 세력의 증가가 둔화되어, 현재는 오만, 소말리아 등에 진출하여 새우, 갑오징어, 한치 등을 주 포획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만 등 연안국 정부의 조업규제 강화와 과도한 단속으로 동수역의 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30% 감소한 11천 톤을 생산하고 2007년에는 어획이 부진하여 약 5천 톤을 생산하였다.

(5) 중남미 트롤

1969년에 수리남 파라마리보를 중심으로 하여 진출한 새우트롤 어업은 가이아나, 불령가이아나, 브라질 등에 진출, 새로운 수출업종으로 각광을 받아 왔으나 1977년 가이아나의 200해리 수역 선포, 1981년 이후 프랑스령 가이아나의 쿼터 삭감 및 어획물 양륙조건부 허가와 1988년 9월 이후 브라질의 외국어선 입어규제 등으로 동 어장에서 철수 후, 현재는 수리남, 멕시코 수역에서만 극히 일부어선이 조업해 오고 있다.

2.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57년에 처음으로 인도양에 진출한 이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총 수산물 생산량 327만 톤의 약 22%인 71만 톤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68%를 국내에 공급하는 중요한 식량산업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1994년 11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주요 연안국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 및 자원자국화정책 강화로 해외어장이 축소되고,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UNFSA) 및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국제수산기구에 의한 조업규제 강화로 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또한 WTO/DDA 및 FTA협상과 관련 수산보조금의 제한 및 관세인하가 추진됨에 따라 조정관세 등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주요 원양업종의 경쟁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원양업체의 영세성과 자본구조의 취약성, 원양어선의 노후화가 가속 등으로 원양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대응하여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확보·유지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 31일 「원양어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2006년 8월 9일에는 원양어업의 원양산업화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경영구조개선 추진, 신상품 개발 및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원양산업화 기반 구축,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국제어업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 및 선원수급 안정화 등이다.

3. 해외 신어장 개발

최근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공해조업규제 강화 등 국제적인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 유지를 위하여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와의 어업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어구·어법의 시험과 국제관리수역에서의 우리나라 어획쿼터 확보에 노력하였다.

정부는 1999년도부터 근해어선 해외어장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외수역에 대한 정보부족 및 어획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귀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1년도부터 정부에서 직접 해외수역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에게 제공하여 해외수역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사업추진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2002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2,550톤급 시험조사선 탐구1호를 인도양에 투입하여 서남부 심해어장에 서식하는 ‘오렌지 라피(Orange roughy)’ 등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에는 ‘꽁치’어장확보를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소속 360톤급 실습선인 갈매기

2호를 임차 투입하여 북태평양공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고, 425톤급 갈매기호에 과학자를 승선시켜 러시아 남쿠릴북부수역 ‘꽁치’ 자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수역의 꽁치 자원분포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3년에도 갈매기호를 이용한 ‘꽁치’어장 자원조사를 북태평양동부수역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상업조업이 가능한 자원량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꽁치조업 어장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어기가 길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2,550톤급 시험조사선 탐구1호와 민간조업선 2척을 남태평양동부수역의 부어 자원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예상보다 자원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상업조업과 연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04년도에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1호와 민간조업선 1척을 투입하여 북태평양중부수역 ‘돔’어장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북양명태트롤어장과 연계조업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도 1척(사조산업, 503오룡호)이 진출하여 약 690톤을 어획하는 실적을 거뒀다.

2005년도에는 원양오징어채낚기(인성실업, 701인성호) 및 근해어선 6척(쌍끌이 2통, 근해오징어채낚기 2척) 등 7척을 투입하여 북태평양빨간오징어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풍부한 자원량을 확인하였으며, 2006년도에 근해채낚기 5~6척이 자체적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근해통발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대체어장 확보를 위해 근해통발어선(제318 성덕호, 제101 광민호)을 투입하여 마살수역에 대한 시험조사를 추진하였으나, 해저지형이 산호초로 구성되어 있고 환초에서 조금만 멀어도 수심이 깊고 해저의 굴곡이 심하여 조업시 많은 통발을 투망할 어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남빙양수역과 연계한 남동대서양 이빨고기 어장개발을 위해 FAO 47해구에 대한 시험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한국 참치연승어선의 주조업 수역인 태평양 중서부 어장의 수익성 한계 및 지구 온난화에 따른 어장 이동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새로운 참치어장 개발을 위하여 미드웨이 참치어장에 조업선 3척을 투입하여 자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부가가치의 눈다랑어를 어획하는 등 상업조업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09년초 중부베링 공해의 경쟁조업으로 '93년부터 조업이 중단됨에 따라 북양트롤의 조업어장 부재 등 대체어장 개발을 위하여 중부베링 공해에 2척의 명태트롤어선을 투입하여 시험조업을 실시하였으나, 광범위한 어장, 단기간 조업에 따른 한계성 등으로 어장을 개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명태어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자원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

2005년도 연료비 절감을 위한 모델시스템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중·고속 사용 엔진 원양어선, 근해어선 등까지 사용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어선 연료비 절감을 위한 저급유 사용시스템 표준화 연구를 추진중에 있다.

동 연구는 원양어선 등에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혼합유의 규모별(마력, 엔진 연료 소모량 등)로 더욱 저급한 혼합유의 사용 한계치와 절감장치 시스템의 표준화 연구를 위해 2006. 8부터 2008. 12까지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과제(3억원)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1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원양 참치연승어선 및 동해어업지도선을 대상으로 저급유의 배기가스 계측 및 엔진 상태 연소시험 등을 실시하고 대형선망수협, 오징어채낚기연합회 등에 대하여 어선연료비 절감 연구 사업 설명회와 시험선 제공 요청 등을 추진하였다.

제 6 장

어업인력 육성과 수산기술의 개발·보급

제 1 절 어업인력 육성*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협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에게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수산사무소)으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착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지도·교육 및 각종 수산관계 정보 보급 등을 통하여 단계적(일반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경영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 어촌지도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시에는 장기저리의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 계획에 따라 일반후계자의 경우 1인당 40~50백만 원, 전업경영인의 경우 1인당 50~100백만 원을 지원하여 1981년부터 2007년까지 17,380명에게 총 410,100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어업인후계자 선정제도를 선정 후 지원체제로 바꾸어 융자금 대출여부와 상관 없이 선정과 동시에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표 87〉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합 계		'06까지		'07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7,380	410,100	16,992	394,400	388	15,700
○ 일반후계자('81부터)	14,829	275,526	14,538	265,063	291	10,463
○ 전업경영인('92부터)	2,490	129,349	2,401	124,912	89	4,437
○ 선도경영인('95부터)	61	4,225	53	4,425	8	8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제 2 절 어업인 정보화교육 및 어촌정보화 인프라 구축*

어업인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어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생업에 정보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10,323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어업인, 어촌청소년을 대상으로 「제4회 전국 어업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어업인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어업인들이 컴퓨터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지역 493개소에 “어촌 정보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특성상 어업인들이 조업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어업인들이 원격으로 수산기술상담 및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31개소 수산사무소에서 「원격영상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원격영상시스템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정보화 업무담당자 혁신마인드 고취를 위해 어촌정보화사업 워크숍(1회)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5년 전보다 어촌지역 컴퓨터 보급률은 22%, 인터넷 이용률은 17%, 어업인 정보화 수준은 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제 3 절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어촌의 국내외 여건변화는 어촌주민의 생산의욕과 생활의욕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보다 빠른 어촌인구의 노령화는 어촌의 활력 저하와 어촌지역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촌주민에게 어촌 비전을 제시하고 어촌주민이 지역 혁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하여 「어촌지역리더 육성과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어촌개발리더의 육성실태 및 문제점, 국내외 지역리더 육성사례와 시사점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어촌개발리더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수산인력개발원에 여성어업인 전문교육과정을 신설(28명 수료)하고 여성어업인의 정책결정 참여를 위해 지자체 수산관련위원회 여성위촉('06 10.1-→'07 11.1%) 및 수협 대의원 등 임원비율(3.4%)을 확대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제 4 절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법”(’04.6 시행)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05.4 수립)에 따라 수립된 2007년도 수산분야 8개 과제 대부분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수산분야 8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촌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은 '07년도 어선원보험 가입율이 전년 74%보다 2%상향 달성하였고, 어촌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소형어선(다목적)인양기 설치, 양식어장 정화사업,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사업 및 디지털어촌구축사업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 부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어촌관광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

사 업 명	성과지표	'07목표	실 적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보험가입률	76%	76%
어촌종합개발사업	소득증가율	3.3%	5.7%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설치대수	29대	29대
양식어장 정화사업	사업추진 진척도	11,531 ha	11,531 ha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사업	폐사어 처리시설	100개소	100개소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어업인 정보화교육	7,000명	10,373명
어촌체험마을 조성	마을조성수	11개	11개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사업비 지원액	120억원	120억원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제 5 절 해양수산교육*

수산인력개발원(구 해양수산인력개발원)은 세계 5대 해양강국을 선도하는 해양인재 양성과 정부혁신 및 해양의 미래를 여는 창조적 교육 실현을 목표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해양교육, 어업인교육, 국제교육, 열린교육 등 6개 분야에 총 65과정 192회, 15,437명의 교육훈련을 거두어 계획대비 149%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공직자들의 정부혁신 내재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혁신교육 프로그램인 공감행 정전략 등 8과정, 13회를 운영하였으며, 수산 및 해양 정책현장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을 39과정, 52회 실시하는 한편, 7·9급 신규공직자에 대한 기본교육을 2회 개설하여 공직적응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 독도꿈나무 캠프, 수산해양과학교실, 독도역사교육 순회강좌, 수산식품 식생활 시민강좌 등을 통한 범국민 해양사상고취에 주력하였으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업인 경영관리 및 전문기술교육을 집합·원격·현지교육의 방법으로 9과정, 59회 실시하였으며, 아시아·아프리카 15개국, 18명의 외국인을 초청 하여 수산식품 HACCP분야 KOICA 국제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 수산인력개발원

제 6 절 해양환경 연구*

1. 해양변동 연구

가. 해양조사 및 예측

미국의 NOAA 열감지 위성으로부터 매일 4~6회 위성수온자료를 수신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양자료속보(185회 발간)”로 FAX 및 E-mail 전송(6천여 회)하여 활용케 하였다. 또한, SeaWiFS 위성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연근해역의 기초먹이생물 분포를 정량화하였으며, MODIS 위성으로부터 해수색(ocean color)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동중국해, 동해, 서해, 남해의 196개 정점에서 분기별 및 격월로 실시한 정선해양관측 자료와 연안 35개 관측점에서 측정된 연안수온, 기상자료와 위성이 관측한 광역 수온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주간 및 월간 해황변동을 64회 예측하여 “주간 해황예보”, “월간 해황정보”로 배포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또한 전국 연안 25개소에 실시간 연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장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이상해황에 의한 수산생물 폐사 원인 규명 등에 활용하였다.

나. 해양자료 관리 및 서비스

한국해양자료센터(KODC)는 국제기구인 정부간 해양과학위원회(IOC)가 공인한 국가해양자료센터(NODC)와 정부 지정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

국가차원의 해양과학 정보관리 체제 구축과 해양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7개년(1999년~2005년)에 걸쳐 해양과학정보시스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가해양조사계획(NOP), 해양조사요약보고(CSR/ ROSCOP), 해양조사자료(TESAC)를 수집하여 국제해양자료정보교환시스템(IODE)을 통해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2. 해양환경 오염 연구

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운영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은 한반도 연·근해, 총 109개 해역 363개 정점에서 표·저층 해수, 해양생물 및 해저퇴적물 조사를 수행하였다. 해수는 15개 일반 항목에 대해 4회 조사, 8개 미량금속 항목에 대해 2회 조사하였으며, 지속성 유기오염물질은 1개 항목을 1회 조사하였다.

해양생물은 클로로필-a, 총대장균군, 동·식물 플랑크톤을 4회 (2, 5, 8, 11월) 조사, 지표생물에 대한 미량금속 7개 항목과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4개 항목에 대해 1회 조사하였다. 해저퇴적물은 일반항목 4개, 미량금속 7개 항목과 지속성 유기오염물질 3개 항목에 대해 1회 조사하였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일반 수질지표 성분을 연 4회 조사하였고, 내수면의 경우 퇴적물 4개 항목을 1회 조사하였다. 어류상 조사는 특정 내수면에 대해 2회 조사하였다.

3. 적조대책 연구

가. 적조예찰 및 예보연구

적조감시체제의 일환으로 90개 정점에 대해 3월부터 10월까지 적조예찰을 실시하였고, 적조 발생의 조기 예측을 위해 남해연안에서 광역조사를 실시하여 코클로디니움 유영세포 출현을 확인하였다.

나. 적조생물의 생리·생태 특성 연구

한국과 일본의 어류폐사종의 활성산소, 점질물질의 양을 비교한 결과, 한국종과 일본종의 별 차이가 없었고, 코클로디니움은 점질물질, 차토넬라는 활성산소가 높은 양을 나타내었다. 코클로디니움 적조발생현장에서 활성산소를 비교한 결과, 실내배양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 나타나, 복합적인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Chattonella 적조가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 연구로 실내대량배양 *Chattonella ovata*에 대한 조피볼락과 쥐치의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 폐사는 보이지 않았으나, 혈액분석결과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반드시 현장에서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분자생물학을 이용한 적조생물탐색 및 한국연안 적조생물의 유전정보 분석에서는 유해적조생물 피스테리아와 유사종을 신속·정확히 검출할 수 있는 real-time PCR법을 개발하였으며, 코클로디니움 적조발생시 공존하는 와편모조류의 유전정보를 분석하였다.

적조생물 종 보존 연구로 2007년도에 Raphidophyceae의 *Chattonella* sp. 1종, Bacillariophyceae의 *Eucompia zodiacus* 1종, *Skeletonema costatum* 2종, *Chaetoceros cwisetus* 1종 모두 2강의 5종이 추가되었으며, 총 41종을 보유하고 있다.

다. 적조피해 경감대책 연구

현장에서의 제어세균 분포와 코클로디니움과 차토넬라 제어 적조생물을 분리하여 16S rDNA분석과 제어물질이 포함된 배양액의 수산생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와 간세포 및 당대사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황토살포가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피조개 유생의 경우, 황토농도에 따른 생존율의 큰 변동이 없었고, 황토에 직접 노출되

었을 경우도 높은 생존율을 보여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황토살포해역의 저질환경을 살펴본 결과, AVS, 산화환원전위 값은 황토살포해역이 비살포해역에 비하여 양호한 환경상태를 보여주었고, 해역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서생물상은 황토살포해역과 비살포해역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해파리 대량발생 연구

가. 해파리 광역 모니터링 및 지역 모니터링

한국연근해 출현 해파리의 종조성 및 시공간 분포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서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2003년도부터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량출현하고 있는 노무라입깃해파리는 2003, 2005, 2007년 대량출현 하였으며, 2005년 8월 서해의 노무라입깃해파리 표층 출현 밀도는 16,229개체/100m²였으며, 2006년 8월에는 1,341개체/100m², 2007년 8월에는 4,505개체/100m²였다.

한국연안에서 출현하는 독성해파리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유령해파리, 꽃모자갈퀴손해파리, 라스톤입방해파리, 꽃우산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등 8종이 있다.

나. 해파리 생리 생태 특성 연구

보름달물해파리의 폴립 1개체는 실온(22~27°C)에서 두 달간 최소 37배 최대 155배 증식하였다. 노무라입깃해파리의 폴립은 보름달물해파리에 비해 저염 환경에서도 생육상태가 좋았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구완과 스카플렛의 가장 자리에 위치한 약 1mm 정도의 구멍을 통해 요각류, 미충류, 단각류, 어류유생, 난바다곤쟁이류 등을 현장에서 비선택적으로 섭이하였다.

다. 해파리 독성 연구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독성은 호주의 맹독성 box jellyfish (*Chironex fleckeri*)와 매우 유사하나 강도는 약 1/5 수준이다.

라. 해파리 모니터링체제 구축 및 운용

대량출현 해파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2005년부터 해파리 정보센터를 운영하였다. 해파리모니터링 체제는 266명의 어민과 11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청 담당공무원을 해파리 모니터링 요원으로 지정하여, 해파리 출현 정보를 제공받고 해파리 정보센터에서 출현 자료를 취합, 분석하여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제 7 절 어업자원 조사연구*

1.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연구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의 근해어업과 꽃게 연안유자망 등 5개의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조사하여 자원밀도지수와 자원분포역의 변동을 분석하였고,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참다랑어, 갈치, 참조기, 말쥐치, 붕장어 등 9개 어종에 대하여 어체 측정과 체장조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생산력의 변동과 연급군 분석을 통하여 자원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2007년도 TAC 대상 자원인 고등어와 붉은대게 등 9종과 추가종인 오징어에 대한 자원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 자료로 제공하였다.

2. 원양 어업자원 조사연구

원양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국제적 어업 관리의 기초를 위해 원양 주요 어업(트롤 등 6개 어업) 및 주요 어종(가다랑어 등 9개 어종)에 대한 생물특성연구 및 자원평가를 실시하여 어업별 해역별 어종별 자원상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20회에 걸친 국제수산기구 회의에 국별 보고서로 제공되어 원양어장의 지속적 확보에 기여하였다.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국제옵서버 19명을 양성하였다. 양성된 옵서버는 2007년에는 국제옵서버 승선과학조사는 8개 해역에서 총 13척에 13명이 승선하였으며 이중 의무 승선조사는 남빙양 저연승 3척, 남동대서양 저연승 2척, 지중해 다랑어 선망 1척, 베링공해 명태 트롤 2척, 북태평양 미드웨이해역 다랑어 연승 2척 등의 조사가 이루어 졌다. 과학 승선

* 국립수산과학원

조사는 중서부태평양 다랑어 선망 1척, 동부태평양 다랑어 연승 1척, 인도양 다랑어 연승 1척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어획량 통계, 부수어획종 혼획 상태, 어업 대상종의 분포 밀도 및 생물학적 특성치 등을 분석하였다.

제 8 절 수산공학기술 개발*

1. 환경친화적 어구·어법 개발

생분해성 수지로 방사된 단일섬유 직경 0.2, 0.3, 0.4mm 그물실에 대하여 견사와 습시의 직선강도와 매듭강도, 신장률을 측정하여 기존의 PA 및 PE 그물실과 비교하였다. 직선강도는 기존 PA 및 PE 그물실의 약 73~95.3% 수준이었으며, 매듭강도는 73.5~100.6% 수준이었다. 생분해성 그물실을 사용하여 제작된 어구의 해상시험은 동·서·남해안에서 수행되었다. 남해안에서는 조기 유자망과 대구자망, 봉장어 통발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여, 어획성능 측면에서는 기존 어구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조기 유자망에서는 강도 보강 및 유연성 개선이 요구되었다. 동해안에서는 오징어 유자망과 새우통발을 대상으로 비교 시험을 하여, 오징어 유자망인 경우에는 기존 어구보다 어획성능이 낮게 나타나 더 가늘고 유연한 그물실이 요구되었으나 새우통발에서는 어획성능 차이가 없었다. 서해안에서는 꽃게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였으나 어획성능은 기존어구와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양식분야 적용을 위해 다시마 양성시험용 생분해성 로프를 사용한 결과 생산량이나 생장도에서 일반 PP로프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일반 PP로프를 대체하여 다시마 양식에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자원관리형 어업기술 개발

새우조망어구가 해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혼획·투기를 줄일 수 있는 어구 개발을 위하여 시험한 결과 새우조망에 의한 해저면에 대한 물리적 압력은 빔 양쪽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예망한 곳과 예망하지 않은 곳의 화학적 변화는

* 국립수산과학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혼획 저감을 위해 그물로 제작한 BRD를 설치한 어구의 해상시험결과 기존어구에 비해 새우류의 어획은 차이가 없었으나 새우 외의 혼획은 15%정도 감소하였고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혼획어는 60%정도 감소효과가 있었다.

연근해 어업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회복 주요 대상종인 도루묵과 대구에 대해 자망과 저인망, 꽃게에 대해 홀자망과 닛자망, 그리고 낙지 연승에 대한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자료를 토대로 어획성능지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수중관찰장비를 이용하여 대게류의 분포 밀도를 추정하고 조사용 트롤 및 상업용 자망, 통발 어구의 대게 어획효율을 추정하였는데, 조사해역에서 대게류의 평균 분포밀도는 17.9(마리수/1000m²)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구 자망 및 도루묵·대구 저인망에 대해 일반선형모델(GLM)을 이용하여 노력량 및 CPUE를 표준화하였으며, 어획능력을 측정하고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서해안 문치가자미와 꽃게 자망에 대하여 삼중자망과 홀자망의 어획성능을 비교 분석하고, 꽃게에 대한 망목선택성 곡선을 추정하였다.

3. 어업자동화 시스템 기술 개발

어선의 조업경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고성능 저비용 집어등 개발을 위하여 오징어 채낚기 어선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안어선의 경우 집어등은 1.5kW 메탈할라이트등을 총 60~66개 사용하고 집어등 2개당 안정기 1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어획고의 약 40%를 집어등 유류비, 집어등 및 안정기 수리 교체비용 등 집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LED 램프의 색상에 따른 오징어 행동 수조실험결과 청색등과 백색등에 많이 유집되었고 적색등과 황색등에는 회피행동을 보였다. LED를 이용한 집어등을 설계함에 있어서 오징어에 대한 유집 성능이 가장 좋고 수중 투과율도 높은 청색계열 파장의 빛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며, 청색과장 계열 집어등은 아랫방향으로, 백색 집어등은 횡방향으로 비추도록 배열하는 것이 집어등 구조 설계 배열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시설물의 기능 극대화를 위한 생태계 제어형 구조물을 개발하여 수리모형실험 결과 파랑스펙트럼해석으로 입사파주기의 피크치와 실험치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중구조물 배후역에는 정온영역이 확보되어 해조류 및 어류의 서식환경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중구조물의 기능 중에 한가지인 강제쇄파 현상을 뚜렷이 볼 수 있었으며, 설계파에 상당하는 파랑에 대해 안정하였으며, 특히 수중구조물 설치지점에서의 입사파고 6.89m, 주기 12.59sec에서 파괴율은 5% 이내로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을 만족하여 기존의 TTP의 안정성과 크게 차이는 없었다.

4. 인공어초에 관한 종합연구

우리나라 동·서·남해 및 제주 해역에 시설된 어초에 대해 어류의 군집, 어획량, 또는 해중립 조성 등의 생물적 특성과 시설어초의 규모와 시설방법 등과 관련된 공학적 특성 등을 분석, 그 결과를 어초시설 기준 및 시공 방법에 적용함으로써 연안 어초어장의 생산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동해, 서해해역에 시설된 인공어초 연구

동해해역에 시설된 패조류형 어초의 기능분석(2종, 신요철형어초, 세라믹어초) 결과, 2개 어초간의 어획량 차이는 없었으나 부착생물은 개체수와 생체량 모두에서 세라믹어초가 신요철형보다 높았다. 또한 부착해조류 현존량에서는 세라믹어초가 신요철형어초보다 높았다.

그리고 어류용 어초종류별 효과조사(2종, 사각어초, 잠보형어초)에서는 두종류 어초어장 간 어획 개체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생체량에 있어서는 사각어초가 잠보형어초보다 높았다. 부착생물량에서는 개체수, 생체량 모두

에서 차이가 없었고, 해조상은 사각어초가 잠보형어초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해해역에 시설된 패조류용 어초의 기능분석(3종, 정삼각뿔어초, 신요철어초, 뿔삼각어초) 결과, 부착동물은 정삼각뿔은 12종, 241개체, 신요철 11종, 49개체, 뿔삼각어초 11종, 111개체였고, 갯지렁이류, 방석고둥, 보리무늬 등이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수심별 어초 기능분석에서 수심 10m이하의 정삼각뿔에서는 애기다시마 1~2개체/m²가 부착 서식하였으나 신요철형어초와 뿔삼각어초에서는 없었다.

나. 남해동부 및 서해해역에 시설된 인공어초 효과조사

남해동부에 시설된 굴패각어초 및 다기능성 연구어초 효과조사 결과 총 어획개체수 및 총 어획량에 있어서는 비교구인 사질대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었으나 굴패각어초인 경우 어획시기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어류의 먹이가 되는 동물플랑크톤 출현량조사에서는 어초시설지인 굴패각어초에서 조사 시기별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사질대에서 가장 적게 출현하였다.

남해서부해역의 인공어초시설 규모별 효과조사(시설규모, 50개, 100개, 200개) 결과는 50개 시설어초에서는 조피볼락과 참돔이 많이 어획되었고, 100개의 경우 참돔과 두툽상어, 가오리의 어획률이 많았고, 200개시설지의 경우는 참돔, 두툽상어, 쥐치의 어획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시설규모별에 의한 뚜렷한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 제주해역에 시설된 인공어초에 대한 연구

제주해역에 기시설된 인공어초의 재시설을 통한 효과분석 결과 재시설된 어초의 표면은 일반적으로 새로 제작되어 시설되는 인공어초에 비해 해조류 부착효과가 빨라 약 2개월 후부터 해조류 유엽이 관찰되기 시작하였고, 16개월 경과 후에는 17종의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하였다. 또한 인공어초

표면의 기질교체를 통한 해중립 조성 효과조사 결과는 교체블록식 인공어초에 이식한 감태는 탈락개체가 비교적 많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부착하여 성장하였으나 고수온기인 7월부터 끝녹음이 발생하고 유엽이 탈락되면서 초기밀도보다 낮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온이 낮아지는 동계에는 다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 9 절 양식기술 개발 연구*

1. 양식기술 및 관리시스템 개발

양식산업 표준화 연구를 통해 전복의 양식 경제성 분석 보고서와 양식표준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뱀장어 양식 표준화 연구의 일환으로 뱀장어 양식 현황 및 양식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피볼락 번식 메커니즘 구명 연구로 FSH β 와 LH β 유전자에 의해 난 성숙이 조절되는 것을 규명하였고, 호르몬 처리로 양식산 뱀장어의 자연산란을 유도하고, 부화자어의 사육과 초기사료 탐색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강도다리 정자와 넙치 알을 수정시켜 정자의 냉장, 냉동 보존 기법을 기술을 확립하였다.

고등어 양식기술개발로 수정란 공급 및 치어 종묘생산 기술을 확립하였고, 제주해역에 시설한 한국형 외해가두리에서 자체 개발된 배합사료로 양성된 돌돔의 양호한 성장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대상 품종 개발을 위해 고등어 종묘 생산 시험을 추진하였고 잠재 외해양식 대상품종 개발을 위해 외해가두리 고등어 양식 시험을 실시하였다.

2. 해역별 양식어장의 지속적 이용 및 관리기술 연구

동해안 신 양식 품종으로 민들조개, 곰피의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양식 보급종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참가리비 양식기술 표준 지침서를 발간(ED-2007-AQ-006)하였다. 참가리비 어장정보 관리시스템 통합 운영체제를 통하여 실시간 어장환경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폰 단문서비스를 통해 제공하였다. 그리고 동해안 해역특성에 적합한 양식방법 개발을 위해 전복/해삼 복합 패널형 양성기를 개발, 기술이전, 보급하였다. 서해안 해삼 양식 산업화시험에서는 해삼 적정 방류 시기는 4~5월에 채묘 된 종묘는

* 국립수산과학원

10~11월, 6~8월 채묘 된 종묘와 이월된 종묘는 수온이 10~14℃에 이르는 3월 하순~5월 상순이 방류적정시기로 규명되었다. 남해안 특산종인 황점볼락 가두리 적용시험에서는 생존율 93%를 나타냈으며, 고등어 양식기술개발에서는 LHRHa 혼합 호르몬 처리에 의한 수정란 확보, 대량종묘생산, 산업화 기술을 확보하였다.

3. 고부가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새로운 양식품종인 강도다리의 안정적·생산을 위하여 배합사료 공급은 수온 17.0~22.3℃, 1일 2회 공급이 성장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치어 사육시 알테미아 영양강화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규명되었다. 대구는 인공채란 후 종묘 2,000마리를 생산, 생존율은 15.4%로 조사되었다.

참굴 품종개량 연구에서 우량 모패군으로부터 각장, 각고, 전중, 육중, 및 각중 중의 하나의 형질을 육종하면 다른 형질도 개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조개 양식산업의 복원화 기술개발에서 피조개는 수온 15℃와 25℃, DO 3ppm 이하에서 각각 7일 및 4일 이상 지속되면 생존이 어려운 환경으로 조사되었다.

새우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밀도 육상수조 사육실험에서는 일반 종묘부화장의 10배, 축제식양식장의 15배 이상의 생산량 향상 기술을 획기적으로 확립하였고, 새우 양식장 이동병원을 운영하여 질병 및 수질환경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건강 꽃게 종묘 생산 기술을 확립하였으며, 공식 방지망은 종묘생산 과정에서 공식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조류 양식 생산성 향상 연구에서 참김(진도) 유전적 순계 3계통 주를 확보했으며, 형질 특징 파악 및 교잡 육성중이며, 모자반은 여름철 수중광량의 표준화 자료 확보를 통하여 포복지의 월하 적정수심, 수중 광량을 도출하였으며, 감태 유엽의 초기 배양 조건 규명하였고, 적정 가이식 수심은 2m, 가이식 시기는 12월 말이나 1월초가 적정시기로 나타났다. 멩게 양식산업 안정화 연구에서 물렁증의

원인병원체(혈구내 포자충이 감염) 특성과 미세구조를 밝혔고, 정상 및 물렁증 개체간의 발현 유전자를 비교하여 물렁증 유발 유전자를 선별하였으며, 멧게의 단백질 분해효소 증가와 당을 만드는 효소 생성인 빈약하여 멧게 피낭의 세포 조직이 느슨해져서 물렁증이 발생됨을 규명하였다.

양식용 배합사료 연구에서 개발된 넙치 성어용 배합사료(07FEP)는 증체율, 사료효율, 사료계수, 일간성장률, 단백질 전환효율, 생존율 등에서 사육성적이 양호하여 산업화 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피볼락 성어용 배합사료(07REP)가 MP보다 사육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부가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상어류 양식기술 개발연구에서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쓸베감펍, 쓸종개, 셋별돔 등 13종과 외국산 파랑돔, 셋별돔 등을 확보하여 어미로 사육 중에 있으며, 국내(제주)산 해마 종묘 생산과, 파랑돔류 수정란 50,460개를 생산 후 707마리 사육중이며, 인공번식 및 사육에 성공하였다.

4. 양식생물 질병방제기술 개발

양식생물 질병 모니터링 및 역학 조사를 통하여 수산 정책지원(174건), 간행물 등 기술정보제공(2건), 양식생물 질병검사 대어업인 진단서비스 수행(총 265건) 및 논문발표(게재 4건, 국내·외 발표 7건)를 하였다. 수산용약제의 약리학 적 효능성 연구를 통하여 수산 정책지원(6건), 간행물 등 기술정보제공(86건), 논문발표(게재 2건, 국내·외 발표 5건) 및 양식 어류의 수생균 및 어병 세균 구제방법으로 특허출원(제2007-0059950)을 실시하였다. 양식어류 백신개발 및 임상효과 연구를 통하여 어류의 에드워드병과 베타용혈성 연쇄구균증에 대한 혼합백신 및 그 제조방법으로 특허출원(제2007-0080555)을 실시하였으며 어류의 연쇄구균증 예방백신, 그제조방법의 특허를 산업체 3곳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수산생물방역지원반 운영으로 4회, 50개 양식장 대상으로 넙치 등 7종 총 243건의 어병진단 및 처방을 실시하여 직접적인 대 어민 진료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어류방역센터 홈페이지 운영 결과, 총 방문자수는 3,510,000명, 회원가입자수는 58명, 웹 진단서비스의 요청은 20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5. 첨단 생물공학기술의 양식 실용화

주요 양식생물 (넙치, 참전복, 참굴, 조피볼락, 명게, 새우, 꽃게)에서 약 50,000개의 발현유전자를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website를 운영하고 있다. 넙치, 참전복, 참굴에 대하여 유전자 칩을 만들어 유용 유전자 탐색에 이용하고 있으며, 넙치에서 바이러스, 세균 감염으로 유도되는 면역관련 유전자를 확보하여 내병성 유전자의 탐색 연구를 하고 있으며, 참굴에서는 발생과정에서 대량폐사와 세균성 감염에 따른 급성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탐색하고 있고, 참전복은 고수온과 관련된 유전자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9.6 x coverage 의 넙치 게놈 BAC library를 만들어 보관중이다.

해양생물 유래 유용단백질의 생산을 위하여 신호서열절편을 이용한 융합유래 접착성 단백질의 발현 증가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단백질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요 해산어 및 담수어 20종에 대한 DNA barcode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바지락, 까나리 등에 대한 계군 분석을 수행하여, 이들 집단의 유전적 구조를 규명하였다. 또한, 종, 집단, 계군 및 원산지 판별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전자 marker를 개발하였으며, 특히, 멸치, 민어 등 10여종에 대해서는 microsatellite DNA marker를 개발하였다. 분석이 완료된 다양한 유전자 정보 및 유전적 특성은 유전자은행 및 유전정보 DB에 수록하여 관리함으로서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portal site를 운영하고 있다.(<http://portal.nfrdi.re.kr/external/biotech/mgrbd>)

넙치의 육종연구를 위한 유전자지도 작성에 사용된 유전자 marker는 특정 유전자 2개, EST marker 31개, microsatellite DNA marker 210개를 이용하여 총 24개 연관군으로 구분되었다. 넙치 sequence size는 1001.3cM으로 추정되었고, 유전자간 평균밀도는 4.8cM의 넙치의 연관 유전자지도가 작성되었다. 작성된 유전자지도를 바탕으로 성장관련 QTL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20여개의 QTL 위치가 확인되어 품종개량에 이용될 유전정보를 확보하였다.

수산물고부가가치 산업화연구에서는, 100종의 해양생물소재를 대상으로 생리활성물질을 추출하여 암세포독성, 혈압조절, 대사계조절, 면역계조절, 항산화 활성 및 항균활성의 6개 항목을 평가하여 올해까지 총 308종의 해양생물에 대해, 총 1848개의 DB화 정보를 확보하여, 수산생물활성소재 DB(MBRBD, <http://portal.nfrdi.re.kr/mbrbd>)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조류로 인 톳으로부터 항노화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고, 카르복실화알긴산을 이용한 중금속 세정기능성 화장품을 4종 개발하여 특허출원 및 상품화하였다.

6. 친환경적 내수면 양식기술개발 및 관리기술 개발

내수면 어류자원 증강 및 양식어가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비단잉어 외 4종의 치어 141천마리를 생산하여 64개소에 분양하였고, 내수면 자원증강용으로 대농갱이, 동자개, 붕어, 잉어 치어 450천마리는 경남과 전남지역의 저수지 및 강에 방류하였다.

담수 고유종 상품화 연구에서는 묵납자루 1,300마리(5개소), 잔가시고기 5,000마리(4개소) 분양, 1,000마리 방류하였고, 냉수성 어종으로는 산천어 20천 마리를 분양하였으며, 무지개송어 자성발생 2배체어 3,500마리 생산, 생리적으로 전환된 가짜수컷을 이용하여 185천개를 채란하여 52.9% 부화율을 나타내었고, 100% 전부 암컷으로 전환된 전 암컷 생산 성공을 하였으며, 회유성 어종인 연어는 12,000천 마리를 생산하여 9개 하천에 표지 방류하였다.

제 10 절 수산식품 위생관리기술 개발*

1.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위생조사

수산물에 대한 국민보건위생 안전확보 및 미국·EU·일본 등과 체결한 『수출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하여, 지정해역 7개소(조사면적 63,800 ha, 지정면적 34,385 ha) 및 주변 육상 오염원에 대한 위생조사를 매월 1회씩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지정해역 내 해수와 패류의 위생상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준에 부합하였고, 주변 오염원도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확대와 수출품종 다양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충남 태안군의 바지락 생산해역(5,500 ha), 2003년부터 경남 통영시 용남·광도의 굴 생산해역(5,000 ha), 2004년부터 충남 서천군 비인만 해역(10,000 ha)에 대한 위생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 이들 해역 중 충남 태안군 바지락 생산해역에 대한 지정해역 설정을 위하여 현지 어업인 및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2. 수산식품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가. 생물학적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남해안 주요 패류양식장에 대한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패혈증비브리오균(*V. vulnificus*) 및 콜레라균(*V. cholerae*) 등 해양상재 병원세균과 설사성바이러스(Norovirus)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장염비브리오균은 수온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하절기에 주로 검출되었으나, 병원성 인자 보유 균은 약 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패혈증비브리오균 및 콜레라균은

* 국립수산과학원

전 조사기간 검출되지 않았다. 노로바이러스는 수온이 낮은 동절기에 도시하수 유입 인근해역에서 산발적으로 검출되었다.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스템의 전기분해 해수 및 자외선 살균 장치를 이용하여 대장균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패류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 결과, 양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정화효과가 확인되었다.

나. 이·화학적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외국과 체결한 위생협정에 따라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관리를 위하여 동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에 대한 잔류 항생물질(테트라싸이클린계 4종), 유기 염소계 농약(14종), 다환방향족 탄화수소(16종) 및 다이옥신 모니터링을 각각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전 잔류화학물질은 거의 검출되지 않거나 일부 검출된 경우에도 국내외의 기준치에 미달하는 미량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항생제 관리를 위하여 LC-MS/MS를 이용한 수산물 중의 에리스로마이신 신속·정밀 분석법을 확립하여 국가표준법(식품공전)으로 등재하였다.

다. 독물학적 위생안전 위해관리 연구

연안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설사성패류독소 및 기억상실성패류독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마비성패류독소는 3월 초순부터 5월 중순까지 출현하였으며, 출현지역은 경북 구룡포에서 전남 목포에 이르는 동·남해안에 집중되었다. 설사성패류독소는 일부 해역에서 간헐적으로 마우스 시험으로는 기준치에 해당하는 독량이 검출되었으나 LC-MS/MS로 확인한 결과는 유독성분은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였다. 기억상실성패류독소는 일부 해역에서 산발적으로 미량 검출되었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설사성패류독소의 분석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기기를 이용한 분석법 확립을 위하여 LC-MS/MS를 이용한 신속·정밀분석조건을 확립하여 모니터링에 활용하였다. 외국과 체결한 위생협정 운영을 위하여 지정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원인 플랑크톤 모니터링 결과, *Pseudo-nitzschia* spp.는 다수 출현하였으나, *Alexandrium* spp., *Gymnodinium* sp. 및 *Dinophysis* spp.는 간헐적으로 소수 출현하였다.

제 11 절 수산기술 지도·보급*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 보급

가. 수산기술 개발 보급

국립수산과학원에 배치된 어촌지도·수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국 1,96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실용기술 중점 보급을 통해 활력 있는 어촌개발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도모하였다.

먼저, 부산지역 다시마를 이용한 기능성 넙치양식 적용시험 등 총 32개 과제를 연구·교습어장으로 운영하면서 해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함께 지역어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수산사무소별 “지역 으뜸품종(상품)”을 개발·육성함으로써 고소득품종 보급 확대 및 지역특산품 발굴에 기여하였다.

또한 굴·피조개·가리비·새고막 유생조사(108개 지점)를 통한 채묘 적기에 보를 통하여 어촌지역에서 「최신수산기술개발보급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해역별 주요 양식단지에 대하여는 어장환경과 품종별 작황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과학적인 어장관리를 도모하였고, 4월~11월 사이 적조 발생 우려해역 135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순회예찰을 실시하는 등 적조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기여 하였다.

또한 전국에 29개의 「어병예찰진단반」을 연중 설치·운영하여 증상별 원인·치료대책을 강구하였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지도를 통해 어병 확산방지와 어병에 대한 각종 기술상담·정보제공 등 지도기관으로서 대어업인 이미지를 향상 시켰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나. 어업인 교육 및 홍보

해역별 주요 어업시기에 어업인 8천여 명 대상으로 수산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양식품종의 신기술보급과 수산자원회복관리, 수산물 안전성 확보, 해양수산시책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홍보하였다.

2. 선진어업경영기반 구축

어업인들에게 기존의 관행적인 어업경영방식을 탈피하여 시장경쟁체제에 알맞은 과학적인 경영기법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양식종인 넙치·김·대하·전복 등 4종의 양식어가 36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2005년도 양식 품종별·지역별 소득에 관한 자료집 200부를 발간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및 시·도 등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어업경영 진단·설계 및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3. 수산기술보급 관리기반 조성

수산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부안수산사무소 기술지도선 신조(FRP 20톤급)로 수산기술보급 활동의 기동력을 향상시켰으며, 어류질병·적조 예찰·수질분석 등에 필요한 과학적 장비도 60여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어업경험이 풍부하고 동시에 덕망과 지도력을 겸비한 지역사회의 지도급 인사 250명을 명예어촌지도자 또는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산기술 보급사업에 자진 참여토록 함으로써 민·관 유대강화와 대 어업인 신뢰도를 제고 하였다.

제 12 절 수산특정연구개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거 농어촌개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동 사업은 “수산기술개발사업(현장으로, 첨단기술)”과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공립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7년도 수산기술개발사업은 “외해 심층가두리를 이용한 대구·참치 등 양식 기술 개발” 등 총 63개 과제(신규사업 28과제, 계속사업 35과제)를 선정하여 5,650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이러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2007년도 말까지 총 545개 과제에 대하여 78,359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는데, 이 가운데 447개 과제가 연구 완료되었고, 나머지 98개 과제는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 수산특정연구사업으로 연구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는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토록 하고, 특허출원 및 수산정책사업에 반영하여 어업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직접 활용토록 하는 한편,

수산업종사자 교육 등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과제는 현재 연구기관 및 업계에서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표 88〉 수산특정연구개발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6/'05
합 계	과제수	90	92	77	83	87	73	63	-
	금 액	5,631	6,136	5,348	6,100	5,905	5,650	5,650	-
수산기술 개발	과제수	76	77	63	69	73	73	63	-
	금 액	4,888	5,351	4,634	5,350	5,155	5,650	5,650	-
수산정책 연구	과제수	15	14	14	14	14	-	-	'06년 사업종료
	금 액	743	785	714	750	750	-	-	

자료 : 농림수산식품 어선인력과

〈표 89〉 수산특정연구개발 주요성과

○ 산업재산권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수산기술개발	수산정책
국제특허	출 원	13	13	-
	등 록	11	11	-
국내특허	출 원	194	183	11
	등 록	130	120	10
실용신안	출 원	22	21	1
	등 록	18	17	1
저작권	출 원	9	8	1
	등 록	9	8	1
상표	출 원	9	7	2
	등 록	9	7	2
의장	출 원	3	3	-
	등 록	3	3	-
S/W		2	2	-

○ 국내외 논문 및 학술회의 발표 실적(국제 643건, 국내 2,564건)

(단위 : 건)

구 분		합계	'96까지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국제	SCI	130	-	2	8	10	18	10	14	14	21	8	10	15
	일반	61	1	6	4	2	6	9	7	1	5	16	3	1
	학술회의	452	12	18	16	26	25	34	55	50	77	30	16	93
국내	SCI	16	-	-	-	1	2	-	-	2	3	6	-	2
	일반	897	27	69	110	125	95	86	88	84	51	78	40	44
	학술회의	1,651	66	91	133	167	148	185	172	184	128	134	76	167

* SCI(science citation index) : 과학기술논문(미국) 색인검색

○ 경제적 성과

구 분	합 계	'96까지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기술이전(건)	43	-	-	5	8	7	6	4	3	1	2	4	3
매출액(억원)	2,792	30	40	26	57	181	291	333	1,001	508	139	186	-
수출액(억원)	165	-	-	-	-	6	27	29	63	40	-	-	-
고용창출(명)	2,028	4	2	1	10	12	41	37	799	485	479	158	-

○ 어업인 등 지도교육 활용 및 정책활용 실적

(단위 : 건)

구 분	합 계	'96까지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지도교육	576	8	29	43	68	62	44	61	57	61	42	42	59
정책활용	113	6	2	3	9	16	11	24	15	21	2	4	-

제 7 장

어업인 지원 강화

제 1 절 수산자금 공급 확대*

1. 영어자금

영어자금은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어업활동에 필요로 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 수산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영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허가어업·면허어업·신고어업을 대상으로 매년 영어자금 소요액을 조사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조사한 영어자금 소요액은 원양어업을 포함하여 4조 1,29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영어자금 총 공급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1조 5,050억 원으로 연근해어업 분야에 1조 4,250억 원, 원양어업 분야에 800억 원을 공급하였다. 이 영어자금 공급액 1조 5,050억 원은 영어자금 총소요액인 4조 1,299억 원의 36.4%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연근해어업 분야의 공급액은 소요액인 3조 6,364억 원의 39.2%에 이르는 규모이며, 원양어업 분야의 공급액은 소요액인 4,934억 원의 16.2%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어자금 공급액 중 2007년말 현재 어업인들이 실제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영어자금은 연근해어업 분야에 1조 3,149억 원, 원양어업 분야에 763억 원으로 총 1조 3,912억 원에 이르고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있으며, 이는 공급액 대비 약 92.4%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러한 영어자금은 어업인에게 연리 3%로 대출하고, 상환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자금 상환연장은 상환실적 등을 평가하여 연장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상환실적 평가시 당초 대출액의 10% 이상 상환자에 대한 배점을 전년에 비해 10점 상향하여 20점으로 하는 등 영어자금 운용의 건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말 영어자금 연체율은 전전에 비해 0.99%P 낮아진 8.6%로 호전되었다.

영어자금 운용규모인 1조 5,050억 원 중 300억 원은 재해 등 특수한 상황 발생시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영어자금으로 운용하였다. 이 특별영어자금 중 52억원은 이상수온 등의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어획부진이 심화되고, 고유가 지속 등으로 어업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대형트롤어업에 지원하였으며, 2007. 9.14 ~ 9.17 기간 중 발생한 태풍 “나리”에 의해 피해를 입어 어업경영 자금 확보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어업인에 대해서도 이 특별영어 자금 145억 원을 배정하였다.

〈표 90〉

영어자금 공급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04	'05	'06	'07	'07/'06
소 요 액		36,928	38,920	41,199	41,299	100.2
공 급 액		14,050	14,050	15,050	15,050	100.0
(공 급 율)		(38%)	(36%)	(37%)	(36)	-
조 달	재 정 자 금	5,636	5,636	5,636	5,636	100.0
	수협신용자금	3,933	3,933	4,433	4,433	100.0
	수협상호자금	4,481	4,481	4,981	4,981	100.0
운 용	연근해어업	12,900	13,400	14,250	14,250	100.0
	원 양 어 업	1,150	650	800	800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2. 수협 자체자금

수협은 2007년 국내 최고 수준의 신용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영업마케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체자금 등 총 17조 8,059억 원을 조달하여 영어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보다 2조 2,57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수산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9,292억 원, 고객 예수금이 1조 4,998억 원 증가하였다.

〈표 91〉 국내·외 신용평가 등급

구 분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국내 신용평가기관	
	Moody's	S&P	한국신용정보(주)	한국기업평가(주)
신용평가등급	A2(S)	A-(S)	AAA(S)	AAA(S)

註) Positive는 등급의 상향 조정 가능성 있음. Stable는 등급의 변동 가능성 없음.

〈표 92〉 수협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07년		증감률 (%)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조	○ 자 체 자 금	117,088	75.3	139,687	78.4	119.3
	- 예 수 금	90,811	58.4	105,809	59.4	116.5
	- 특별회계자금	8,022	5.2	6,331	3.6	78.9
	- 수산금융채권	18,255	11.7	27,547	15.5	150.9
	○ 차 입 금	14,719	9.5	14,097	7.9	95.8
달	- 한 은	759	0.5	312	0.2	41.1
	- 재 정 자 금	6,568	4.2	6,121	3.4	93.2
	- 제 기 금	7,392	4.8	7,664	4.3	103.7
	○ 기 타	23,680	15.2	24,275	13.6	102.5
합 계	155,487	100.0	178,059	100.0	114.5	
운	○ 원 화 대 출 금	103,799	66.8	121,605	68.3	117.2
	- 금 융	89,860	57.8	108,450	60.9	120.7
	- 재 정	13,939	9.0	13,155	7.4	94.4
용	○ 타 사업자금	787	0.5	1,384	0.8	175.9
	○ 기 타	50,901	32.7	55,070	30.9	108.2

자료 : 수협중앙회 금융기획부 (주 : 상호금융, 신탁, 공제적립금 제외)

제 2 절 어업인 부담 경감*

1.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

2001년 1월 8일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라 매년 어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어가부채경감대책은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원방식은 대출기관인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에서 어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어가부채경감대책에 해당되는 자금에 대해서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조치 등을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대출기관의 이자손실에 대해 이차보전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의 대출조건은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연리 1.5~5.0%로서 5~20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어업인에게 지원된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의 대출잔액은 2007년말 현재 약 6,97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말 8,352억 원에 비해 상환 등으로 1,380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이 자금의 대출잔액을 각 대책별로 보면, 2000년 이전의 대책에 의해 지원된 자금의 잔액이 211억 원이며, 2001년 대책에 의한 잔액이 872억 원, 2003년 대책에 의한 잔액이 567억 원에 이르고, 2004년 대책에 의한 잔액은 4,138억 원에 달해 전체 대출잔액의 약 59.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6년 대책으로서 2007년 상반기까지 지원된 자금의 잔액은 1,184억 원에 이르고 있다.

어가부채경감대책 추진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취급시 취한 담보형식을 보면, 2007년말 현재 기준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대출잔액이 전체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대출잔액의 약 63.7%를 점유하는 1,486억 원에 이르고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있으며, 부동산 담보취급은 10.6%인 740억 원에 불과하고 이어서 신용대출 9.6%, 선박담보 8.6%, 양식장 담보 6.7% 등이다.

2. 각종 이차보전

각종 수산정책자금은 수협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의 재원을 재정자금과 수협의 금융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들 자금의 조달금리가 실수요자인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대출금리 보다 높아 이 자금을 취급하는 수협에 대해 금리차이의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이차보전 사업이다.

가. 영어자금 이차보전

영어자금의 대출금리를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근해와 원양으로 구분하지 않고 연리 3.0%(종전 4.0~4.5%)로 2004년 3월 1일부터 인하·적용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2007년도에 1조 5,050억 원의 영어자금을 저리로 지원함에 따른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와의 금리차액에 대해 수협에 약 52,990백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교부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영어자금을 저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수산피해복구 이차보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를 입은 수산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한 복구용 융자금은 수협중앙회의 예수금으로 조달하여 연리 1.5%(2006년 1월 1일부터, 종전 4.0%)의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2007년에 1,565백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교부하여 어업인들의 이자부담경감에 기여하였다.

또한, 2005년도 1월 및 3월에 발생한 대설·풍랑피해와 8월의 호우 및 적조 피해, 9월 태풍 ‘나비’ 및 호우, 10월 강풍·풍랑 등의 피해발생 당시 피해어가에서 이미 대출받아 사용 중인 영어자금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상환기한을 1~2년간 연장하고, 연리 3%인 이자도 같은 기간동안 480백만 원을 면제토록 함에 따라 수협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어업인의 금융비용을 덜어 주었다.

다. 어가부채경감대책 이차보전

『2000년 어가부채경감대책』, 『2001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 『2004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 및 『2006년도 어가부채경감대책』으로 지원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연대보증피해특별자금 등에 대한 수협의 이차수입 손실 등에 대해 22,430백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교부함으로써 어업인들도 같은 규모에 해당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덜게 하였다.

3.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적조, 가격폭락, 어·패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어가 또는 어업용 부채가 2,500만 원 이상인 수산업 경영체(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중에서 각 수협에 설치된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를 거쳐 회생이 가능한 경영체의 경영자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경영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어업인에 대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수산업경영회생자금(재원 : 수협자금)을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6,262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제 3 절 수산 관련 세제 개선*

1. 수산세제 지원 연장

정부가 어업인들의 어업생산 활동지원 및 소득보전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비롯한 세제감면제도를 시행으로 2007년도 기준으로 수산분야에는 연간 약 8,897여억 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

특히 가장 세제지원효과가 큰 어업용 면세유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일몰제로 운영되어 있는 바,, 2007년 6월까지의 전액 면제,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75% 감면, 2008년부터는 전액 과세되도록 하고 있었다.

최근의 어려운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한 결과, 2012년 6월까지의 전액 면제,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75% 감면, 2013년부터는 전액 과세되도록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하였다

2. 수산세제 지원대상 확대

2007년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총 627만 드럼으로서 어업인들의 면세 혜택 금액은 7,542억 원이며, 공급대상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잠어업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 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등이다.

어업인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을 확대를 추진한 결과, 2007년 9월부터는 수산물 자숙·건조장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어민의 범위 포함시켜 어업용 면세유의 공급이 가능해졌다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표 93〉 2007년도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적 (단위 : 천 드럼, %)

구 분	'05	'06	'07	'07/'06
합 계	6,391	6,318	6,266	99.2
경 유	5,204	5,184	5,206	100.4
중 유	473	421	365	86.7
M F - 3 0	-	49	55	112.2
휘 발 유	682	634	605	95.4
운 활 유	32	30	35	116.7
면세액(억원)	6,564	7,092	7,542	106.3

※ 수협중앙회 공급분

제 4 절 수산발전기금 조성·운용*

수산발전기금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비롯한 국제어업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수산분야의 유일한 기금으로 2001년 7월부터 운용을 개시하였다.

수산발전기금 설치당시에는 자체재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출연금에 의존하였지만, 2005년 1월 농림부에서 운용하던 농수산물가격안 정기금중 수산부문사업(3,694억 원)을 이관하고, 공유수면점·사용료 편입('06), 수산물공매납입금 신규 확보('07) 등 자체재원 확충을 통해 2007년 말 현재 7,496억 원을 조성하였다.

〈표 94〉 수산발전기금 조성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 적		
	2006까지	2007	누 계
순조성액(A-B)	701,047	48,530	749,577
총조성액(A)	827,682	82,434	910,116
○ 출연금(정부, 민간출연금)	247,000	20,000	267,000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74,742	16,009	90,751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1,073	1,073
○ 수산물공매납입금	-	4,123	4,123
○ 공유수면점·사용료	9,751	11,680	21,431
○ 수산물판매대금	52,704	10,976	63,680
○ 이자수입	50,191	18,202	68,393
○ 농안기금이관	369,378	-	369,378
○ 기타수입 등	23,916	371	24,287
사용액(B) (경상지출 등)	126,635	33,904	160,539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2007년도 수산발전기금 운용 실적은 총 6,054억 원으로서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융자금회수 등 상대적인 증가와 수산물공매납입금을 신규 부과 하였으나, 수산물판매수입과 여유자금 회수액 감소 등으로 인해 수산발전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3.4% 감소하였다.

사업별로는 경상 및 융자사업을 포함하여 25개 사업에 5,479억 원을 지원 하였다.

〈표 95〉 2007년 수산발전기금 조달 및 운용계획 대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획(A)	실 적(B)	비율(B/A)
조 달	【자체수입】	513,881	500,974	97.5
	○ 융자금이자수입	12,868	12,621	98.1
	○ 여유자금이자수입	6,078	4,428	72.9
	○ 법정부담금	30,010	21,073	70.2
	- 해양환경개선부담금	24,010	16,208	67.5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	742	-
	- 수산물공매납입금	6,000	4,123	68.7
	○ 공유수면점·사용료	16,639	12,376	74.4
	○ 채고자산매각대	13,748	10,976	79.8
	○ 융자금회수	434,538	439,087	101.1
	○ 기 타	-	413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20,000	20,000	100.0
	【여유자금회수】	71,500	83,882	117.3
합 계		605,381	604,856	99.9
운 용	○ 기금관리비	414	402	97.1
	○ 사업운영비	903	834	92.4
	○ 경상사업비	38,000	29,715	78.2
	○ 융자사업비	487,354	490,257	100.6
	○ 여유자금운용 등	78,710	83,648	102.3

〈표 96〉

2007년 수산발전기금 조달 및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당초계획 (A)	수정계획 (B)	실 적 (C)	증△감	
				C-A	%
계	599,381	605,381	604,856	5,475	0.9
1. 기금운영비	1,164	1,317	1,236	72	6.2
o 기금관리비	414	414	402	△12	△2.9
o 사업운영비	750	903	834	84	11.2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	662	662	630	△32	△4.8
- 우수수산물대축제	40	40	40	-	-
- 수산물도매시장평가	48	48	32	△16	△33.3
- 수산물공매납입금징수비용	-	153	132	132	100.0
2. 사업비	525,354	525,354	519,972	△5,382	△1.0
가. 경상사업	38,000	38,000	29,715	△8,285	△21.8
o 해양환경개선	14,500	14,500	15,039	539	3.7
-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2,300	2,300	2,272	△28	△1.2
-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9,800	9,800	9,592	△208	△2.1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자치단체보조)	2,400	2,400	2,400	-	-
- 해사채취행위의친환경적관리	-	-	458	458	100.0
- 오염퇴적물정화복원체계구축	-	-	317	317	100.0
o 수산물가격안정	23,500	23,500	14,676	△8,824	△37.5
- 비축사업	20,000	20,000	11,678	△8,322	△41.6
- 출하조절	3,500	3,500	2,998	△502	△14.3
나. 용자사업	487,354	487,354	490,257	2,903	0.6
o 어업경영자금지원	58,685	54,635	57,828	△857	△1.5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17,000	15,000	15,000	△2,000	△11.8
- 양식어업지원	15,840	15,760	15,459	△381	△2.4
- 어망생산운영및어구제작비지원	1,000	1,330	1,330	330	33.0
- 어선기관및장비개량	1,112	1,112	1,112	-	-
- 어업인후계자육성	18,000	15,700	15,700	△2,300	△12.8
-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5,733	5,733	9,227	3,494	60.9
o 수산물가격안정	271,027	271,027	270,936	△91	-
- 수산물수매지원	134,427	134,427	134,336	△91	△0.1
- 우수수산물지원	136,600	136,600	136,600	-	-
o 유통·가공시설지원	35,143	39,193	39,193	4,050	11.5
- 가공시설및운영지원	30,000	34,050	34,050	4,050	13.5
-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	5,143	5,143	5,143	-	-
o 수산물유통개선	122,499	122,499	122,300	△199	△0.2
- 산지및소비자유통개선	122,499	122,499	122,300	△199	△0.2
3. 여유자금 운용	72,863	78,710	83,648	10,785	14.8

제 5 절 어업인정책보험 운영*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이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한 보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을 2003년 3월 19일 제정(법률 제6866호)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07년도에는 연근해어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어선세력이 일부 감소한 결과 어선원 보험에 가입한 35,815명(2006년 대비 2.8% 감소)의 어선원과 어선보험에 가입한 5,397척의 어선에 대하여 20,127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97〉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실적

(단위 : 명, 척, 백만 원, %)

구 분	'04	'05	'06	'07	'07/'06
○ 어선원보험료					
- 인 원	35,658	36,431	36,846	35,815	97.2%
- 보 조 액	6,546	7,958	8,573	9,829	114.7%
○ 어선보험료					
- 척 수	2,753	4,925	5,015	5,397	107.6%
- 보 조 액	2,058	1,491	2,007	2,615	130.6%
○ 위탁운영사업비					
보 조 액	5,241	5,502	7,420	7,683	103.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한편, 2007년도에는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시행 5차년도로서 신속한 재해보상 및 어업경영의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2007년 6월 12일~6월 14일까지 (구)해양수산부와 수협이 합동으로 정책보험 실태조사를 위해 어촌현장방문을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실시하여 자기부담금보상특약 신설, 취급수수료율 및 어선평가표 조정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함으로써 어업인의 의견을 보험제도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한편,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일선 영업점을 대상으로 업무지도 내용을 점검하고 영업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보험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였다.

또한, 보험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회(어선원·어선주 대표 및 공익대표 등 15인)를 개최(1회)하여 보험제도의 개선과 적용보험요율을 결정하였으며,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의 재심사를 위한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어선원·어선주 대표 및 보험전문가 등 15인)를 개최(12회, 16건)하여 어업인의 보험급여 관련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재해보상보험 안내장, 포스터, 플래카드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어업무선방송을 연중(495회) 실시하였으며, 어선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2007년 5월부터 전국 주요 항·포구에서 기관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보험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상납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연체어선(1년이상 2,978건)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미납자에 대해서도 조건부 압류해제 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 8 장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제 1 절 일선수협 구조조정

1.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94개 일선수협에 대하여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3개월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순 자본비율 산출 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여부 평가 및 적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등 전반적인 경영평가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상태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결과 46개 조합을 부실 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요구)으로, 7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 명령)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경영상태가 악화된 조합(37개 조합)에 대해서는 임직원 제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등 추가 적기 시정조치를 시달하여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2. 부실수협 구조조정

2007년 6월 21 일 개최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합병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된 7개 부실조합 중 흑산도, 삼척, 장흥군, 완도군수협 등 4개 조합은 2002년 9월 대비 순자본비율이 악화되거나 이월결손금이 증가하여 2007년도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동해시, 전남서부어류수협 등 2개 조합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에 대해서는 자구노력 및 경영개선자금의 계속지원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2006년말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 부실조합 등 42개 조합에 대하여 MOU를 체결하고, 2007년 말 현재 42개 조합 6,715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되어 있다.

2006년도 중 총 483억 원의 경영개선자금 이자를 지급하여 지속적 경영정상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부실책임조사 실시

일선수협의 부실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합의 손실보전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조사대상 : 50개 조합)을 대상으로 부실원인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귀책사유를 규명하는 등 부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9개 조합 임직원 71명 (17건, 부실책임액 26,311백만 원)에 대하여는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함으로써 일선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였다.

제 2 절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 추진

1. 수협중앙회 경영개선자금 지원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 투입시 지도사업의 결손금(475억원)과 경제사업의 자본잠식액(943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으로 이를 보전해 줌으로써 어업인 교육지원과 원활한 유통사업 추진 등 지도 사업과 경제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경제사업부문 자본잠식액(943억 원)은 2003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7년까지 943억 원을 지원하여 경제사업부문 유동성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여 원활한 유통사업 추진을 통한 어업인 지원기능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지도사업부문 손실금은 2004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7년까지 125억 원을 지원하여 수협의 기본임무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교육훈련 등 지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은 금융시장의 개방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진 금융기법의 최신 전산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데도 일선수협은 부실로 인하여 전산분야에 신규 투자가 곤란하고, 중앙회는 공적자금을 지원으로 일선수협 지원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 '04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여 단위수협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54억 원을 지원하여 여신종합관리시스템, 재해복구센터, 전략정보계시스템, 전산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IT투자 및 조합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일선수협의 급유시설 노후로 인한 유류누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노후 유류탱크 개보수 자금 8억 원을 지원하였다.

2. 신용사업부문의 『BLUE I 0708』 1차년도 운동 전개

신용사업부문은 2001년 『New Start 180운동』, 2002년 『Jump 2&2운동』, 2003년 『DASH-3M운동』, 2004년 『NICE 2004운동』 및 2005년~2006년 『OK ACE 0506운동』의 성공적 결실을 바탕으로, 2007년~2008년에 걸쳐 『BLUE I 0708 운동』을 계획하였으며 2007년에 『BLUE I 0708』 1차년도 운동을 전개하였다.

『BLUE I 0708운동』은 일류해양수산은행 비전 달성을 위해 개척해야 할 ‘Blue Ocean’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나(I)로부터의 Innovation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세부내용은 첫째,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은행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Basic Innovation**,

둘째,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은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은행을 건설하며 직원이 보람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문화 창출을 목표로 한 **Love Innovation**, 셋째, 해양·수산금융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타행보다 한발 앞서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Unique Innovation**,

넷째,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산출하며 영업 및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Efficient Innovation**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년 종결된 1차년도 『BLUE I 0708운동』 결과 세후 당기순이익 879억 원, 예수금 10조5,809억 원, 일반대출금 9조 5,155억 원을 달성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성공적인 운동추진으로 인해 2007년 말 총자산은 전년 말 대비 2조 2,572억 원이 증가한 17조 8,059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BIS 자기자본비율 11.4%, 총 자산이익률(ROA) 0.80%, 1인당 조정영업이익 2.7억 원, 순고정이하 여신비율 0.7%를 달성함으로써 재무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였다.

제 3 절 수협 혁신방안 수립 추진

수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도사업, 경제사업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지난 2001년 공적자금 투입으로 자주적인 조직체로서의 위상이 크게 손상 되었으며, 공적 자금 상환 전까지는 수협의 기능 및 역할 수행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수협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경쟁력이 확보된 일류 협동조합으로 도약 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조직 혁신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임직원 스스로 인식·공감 하여 2004년 7월부터 T/F팀을 본격 가동하고, 혁신방안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주)능률협회 컨설팅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5년 4월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함과 동시에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라는 수협의 원대한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2005년 5월 (주)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제출한 용역결과 보고서와 수협이 자체적으로 의견수렴한 제안내용 등을 토대로 수협정체성 정립 및 의식개혁, 지도사업 활성화 등 총 6개 부문 35건의 혁신과제로 이루어진 전사 차원의 수협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협은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을 혁신도입기로서 단기과제 추진을 통한 혁신분위기 조성에 주력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수협 정체성 정립 및 임직원 의식개혁을 위하여 윤리경영 및 클린 카드제를 도입하고, 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 및 당선인 결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수요포럼 개최를 정례화 하였다.

또한, 조직혁신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부문간 신입직원 동시채용 및 승진고시 관리를 일원화하고, 비전 및 전략과 연계한 성과관리시스템(BSC)를

도입하였으며, 전산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MRO)의 온라인 통합구매를 통한 경비절감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주력하였다.

일선수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도·지원역량 강화 등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와 어촌간 이해증진 및 상생기반 구축을 위하여 어촌자매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더불어 2007년도에는 공제사업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객상담사제도 및 D/M제도 실시, 어업인을 위한 합리적 여신신용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경제사업 경쟁력 강화와 싱싱회 보급확대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별해별미 가맹점을 2007년말 현재 29호점을 개설하였고,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는 「바다愛찬」 브랜드 확대개발('07년말 83개종)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On-Line)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전문 쇼핑몰(www.esuhyup.co.kr)을 구축하였다.

제 Ⅲ 편

2008년도 수산시책 추진계획

제 1 장

기 본 방 향

제 1 절 수산업의 여건변화*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50년대에 수산업 성장의 기초가 마련된 이후, 1970~1980년대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선진수산국으로 도약하면서, 국민 식량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제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1996년 11월)에 따른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체결(1998년 11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여건과 공해조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고, 연근해어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한·중간에도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 되어 2001년 6월 발효되었고, 러시아가 자국의 EEZ 내 어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명태 등의 어획 쿼터를 점차 줄여 나가는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본격적인 EEZ가 적용되는 신 해양질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에는 수산물의 국내 수요증가와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특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이 채택되고, 2004년 8월 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DDA협상 기본골격이 합의되어 2005년 12월 18일 홍콩에서 막을 내린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금년도 협상타결을 목표로 구체적인 협상일정을 합의함에 따라, 향후 수산보조금 및 관세철폐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을 예고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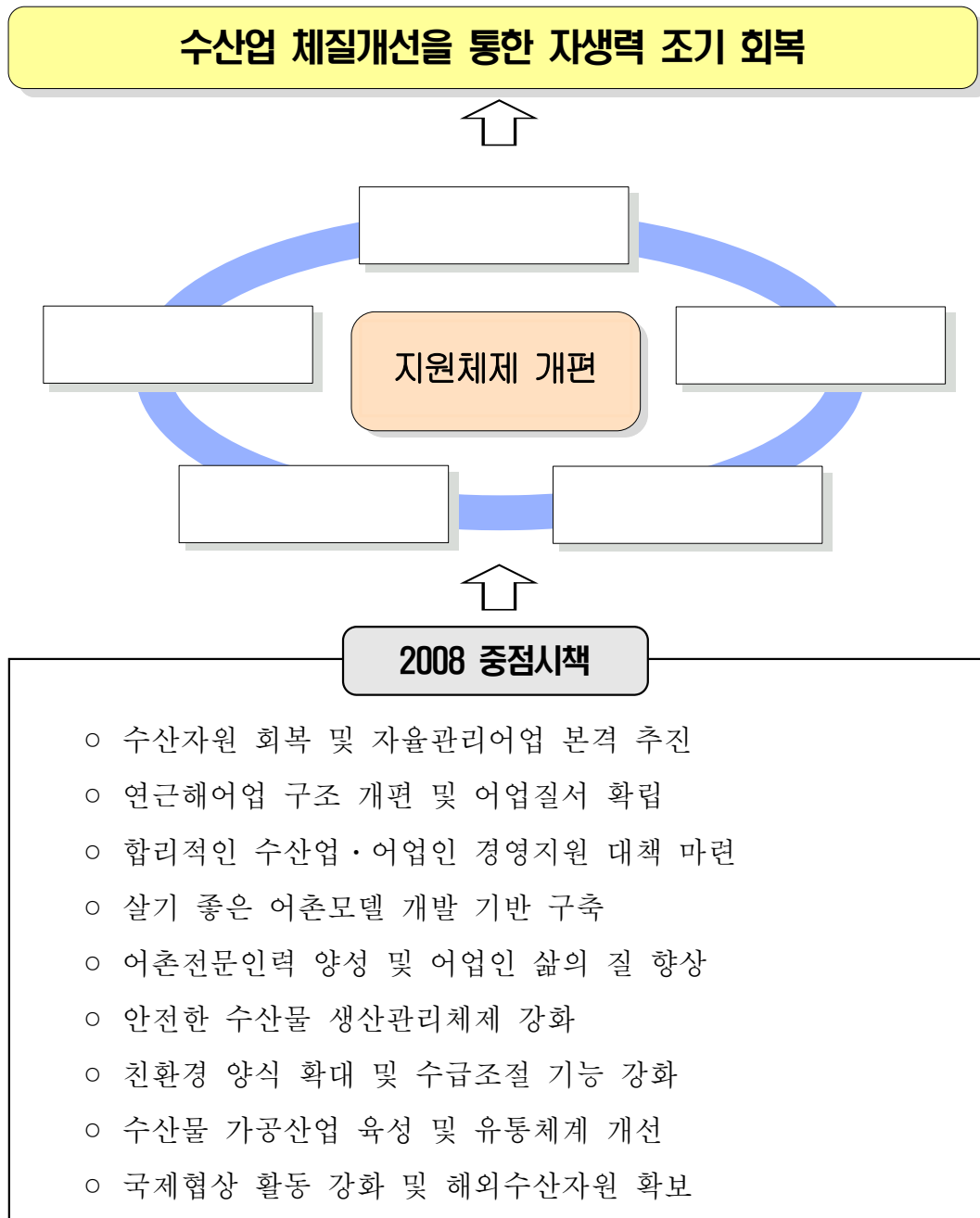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한·일 FTA 및 한·싱가포르 FTA를 추진하여 한·싱가포르 FTA는 2005년 8월 협정이 체결되어 2006년 3월 발효되었으며, 일본과의 FTA는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계획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현재 협상이 중지된 상태이다.

또한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는 2005년 협상이 타결되어 2006년 9월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한·미 FTA는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2007년 4월 최종 타결되었다. 수산분야 협상에서는 명태, 민어, 고등어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하여 최장 15년까지 이행기간 부여와 TRQ 도입을 통해 민감성을 반영하였고,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참치 통조림(35%)에 대한 단계적인 관세 철폐와 양식산 활넙치 체장제한을 해제하는 등 향후 수출확대의 길을 열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그 간 매립·간척에 의한 연안어장의 축소와 산업화에 따른 연안오염의 심화, 수산자원의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조성과 불법어업의 집중 단속 등에 힘입어 2007년도의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152천 톤으로 전년 1,109천 톤 대비 약 3.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수산업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소득·고용기회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어업현실과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대처·극복하고 21세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제 2 절 중점 추진시책*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2008년도는 WTO/FTA 등 국제 어업질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의 구조조정, 자유회복사업 정착 및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중점 추진하여 시장개방 확대와 자원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수산정책 기본방향에 따른 중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도에 수립된 「수산자원회복 세부 실천계획」의 조기정착과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원회복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따라 연차적인 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를 위해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정책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자원량 감소 및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어업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으로 수산자원관리정책의 효과가 저감되고 있음에 따라 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연근해 어선세력을 축소하고,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을 통해 어획노력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한·미 FTA 등 수산시장 개방협상 확대에 따라 국내 수산업의 경영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개방에 대비한 수산업·어업인지원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영어자금, 수산발전기금 등 정책자금의 지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업 및 선도경영인 지속 육성과 어업인이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양식재해보험」 도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수협중앙회 및 일선조합

(94개)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어업여건의 전반적 악화로 인해 어업생산 활동 지원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어촌지역 공동화를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어촌의 다원적 면을 활용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은 새로운 차원의 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탈어업, 탈어촌, 고령화 현상 등에 어촌지역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청·장년층의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해 종래 어업인 후계자 선정을 확대하는 한편 어업인턴제와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적극 추진 하는 등 수산 경영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검사 비율 상향조정과 과거 부적합 이력이 많은 품목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국내 생산·출하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HACCP 제도를 활성화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불량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일곱째, 친환경 양식생산 기반을 확대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권역별 외해 수증가두리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배합사료 개발로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사용율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여덟째, 종래 생산위주의 어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유통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 수산물 가공산업과 수산벤처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연안 시·군 명품 수산물을 우수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 단계 및 유통마진 축소를 위해 직매장 설치, 인터넷 수산시장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홉째, WTO/DDA 수산분야 협상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산보조금은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 되고 유예기간 및 단계적 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는 한편, 수산물관세는 수산물이 무세화(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감 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FTA는 협상의 전 단계인 산·관·학 공동 연구회도 적극 참여하여 FTA 체결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등을 미리 발굴하고, 자료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등을 통해 협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원양어업의 경영여건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 2 장

수산자원 회복 및 자율관리어업 본격 추진

제 1 절 수산자원회복 계획*

1.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수산자원회복계획은 해역별·어종별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명확한 회복목표를 설정한 후, 정부·지자체·어업인·학계 등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여 회복수산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자원회복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별정책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조치하는 체계적·종합적인 자원관리계획이다.

동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수산자원회복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수산자원회복 세부실적계획을 2005년 12월에 마련하고 수산자원회복 시범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조기정착과 자원회복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꽃게(서해-연평), 도루묵(동해), 낙지(남해-무안), 오분자기(제주-성산)를 대상으로 자원회복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참홍어(서해), 참조기(서남해), 대구(동남해) 등 3개 어종을 추가하여 총 7종으로 자원회복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그리고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별 목표 설정 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차별 개선·발전 방안을 도출, 개별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각 정책별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단계별 실행전략의 이행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회복대상어종을 추가하여 2010년까지 12종, 2015년까지 20종으로 회복사업을 확대하여 최적의 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범실시 대상어종 특징

어종명	꽃게	도루묵	낙지	오분자기
해역	서해(연평)	동해	남해(무안)	제주(성산)
관리주체	우리부	우리부	지자체	지자체
어종	갑각류	어류	두족류	패류
업종	연안자망, 근해자망, 연안통발, 개량안강망	동해구기저, 연안자망, 동해구트롤 등	연안연승, 연안통발, 외끌이서남해기저	나잠어업
어종특성	회유성	국제적 관리	연안정착성	연안정착성
어업특징	어선어업	어선어업	어선어업	마을어업
추진방향	광역자율관리 제도권 수용을 통한 광역해역관리	산란장 주변보호를 통한 일반어업 관리	자율어업관리 제도권 수용을 통한 소해역 특화관리	마을어장 생태계복원을 통한 회복
주요내용	금지체장 상향조정, 산란장 보호	산란장(해조장)보호 및 복원, 광역자율 관리 유도	산란장, 산란기보호	재생산관리

한편, 동 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간담회, 워크숍, 설명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중장기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발전·보안하여 나갈 계획이다.

2. 총 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총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TAC) 제도는 개별어종에 대한 연간 총 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어업자원관리제도로서 어획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총 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업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TAC제도 실시대상 업종 및 어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2008년도 TAC 사업은 고등어·전갱이·정어리·붉은대게·개조개·키조개·제주소라·대게·꽃게·오징어 등 10개 어종을 대상으로 394천 톤의 TAC를 정하여 10개 업종에 약 1,200여척(통), 100개 어촌계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도루묵, 참홍어 등 예비어종에 대해서는 TAC 도상연습을 거쳐 2009년부터 TAC를 실시할 계획이다.

어종별 TAC 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총 허용어획량을 설정하였으며, 할당량의 배분에 있어서도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배분하도록 하였다.

또한, TAC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7년까지 판매장소를 113개소로 확대하였고 TAC 제도가 시·도 및 시·군·구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TAC 제도 참여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경영개선자금의 용자한도를 영어자금 소요액의 13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 TAC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98〉 2008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단위 : 톤)

대상업종	대상어종	TAC	비고
합계		394,890	
대형선망	고등어	159,000	'08. 1. 1~'08. 12. 31
	전갱이	21,000	"
	정어리	5,000	"
근해통발	붉은대게	27,700	"
근해통발·근해자망	대게	1,500	'07. 11.01~'08. 5. 31
잠수기어업	개조개	3,200	'08. 1. 1~'08. 12. 31
	키조개	3,200	"
마을어업	제주도소라	1,400	'09. 9. 1~'08. 5. 31. * 유보량(100)
연근해자망 및 통발	꽃게	6,890	'08. 1. 1~'08. 12. 31
대형선망·동해구트롤 대형트롤·근해채낚기	오징어	166,000	'07. 7. 1~'08. 6. 30 * 유보량(84,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3. 인공어초 시설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197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인공어초사업은 어초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와 건설 시공의 정착, 해역별·어종별·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의 개발과 시설, 어초어장의 시설보전과 기능제고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갯녹음(백화)현상이 발생한 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중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99〉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단위 : ha)

구 분	기 시설(1971~2007)	2008년	누 계
합 계	198,176	3,965	202,141
부 산	2,490	72	2,562
인 천	9,863	196	10,059
울 산	2,236	74	2,310
경 기	3,941	352	4,293
강 원	22,630	250	22,880
충 남	16,783	-	16,783
진 북	13,021	848	13,869
전 남	41,013	829	41,842
경 북	22,832	164	22,996
경 남	35,454	268	35,722
세 주	27,913	912	28,82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이를 위해 2009년에도 사업비 41,065백만 원을 투입하여 약 4,398ha에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3,976백만 원의 사업비로 약 12,000ha의 어초어장에 대한 위치·상태 확인 및 폐그물 수거, 어초어장도 작성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가며, 4,938백만 원의 사업비로 갯녹음(백화) 발생어장 146ha에 대해 해중립 조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4. 종묘방류 및 종묘배양장 기능 조정

방류어류의 생존율 향상 등 종묘방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어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수산종묘를 방류토록 하여 어업생산성을 제고하며, 가급적 야성화 훈련이 실시된 종묘를

매입·방류할 계획이며, 방류어종의 다양화를 기해 2008년 41종에서 2008년에는 42종으로 품종을 확대하여 방류할 계획이다.

수산종묘방류 총사업비의 5%를 방류효과조사 사업비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방류대상 품종에 대한 질병유무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여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종묘가 방류되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방류어종 검수 및 방류시 종묘생산자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어업질서의 재편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도립수산종묘배양장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한·중·일의 새로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조업어장의 축소, 환경오염의 심화 등으로 정체 또는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해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바다목장 조성

199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006년까지 총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도에 완공됐다.

이어 2001년 시작한 전남(여수) 다도해형 바다목장은 2010년까지 총 3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2008년도에 47억 원, 2009년도에 40억 원의 투입하여 사업기간내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6년부터 본격적인 시설사업이 시작된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북제주) 3개소에 대하여 2008년도에 사업비를 75억 원 편성하여 시설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는 9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형 바다목장으로 조성되는 동해와 제주 바다목장은 2009년부터 홍보전시관 건립, 수중테마공원, 수중전망대, 바다체험장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2008년까지 9개소에서 2009년에는 부산(기장), 전남(신안) 및 제주(강정) 3개소를 추가하여 총 12개소로 사업을 확대하여 연안해역에서 효율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 2 절 자율관리어업*

자율관리어업은 정부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및 질서유지에 참여토록 하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실천적 새 어촌운동이자 어촌 의식개혁운동으로서, 자율관리 공동체 운영 및 참여확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2008년도에는 어업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2007년 말 현재 579개소에서 695개소까지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어선·복합어업 및 광역공동체로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어선어업 중심의 임의단체(1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 결과를 관계기관(지자체, 수산사무소, 수협 등)에 제공함으로써 미 참여어업인 교육 및 신규공동체 발굴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극히 부진한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체에서 관리하는 주요 대상어종에 대하여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평가(16개소)를 통해 대상어종의 자원수준을 고려한 자율관리로 자율관리어업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 공동체중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선정된 우수 공동체에 대하여는 육성사업비를 지원(141개소, 143억 원)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율관리어업을 성실히 이행한 공동체에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 공로가 큰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공동체간 우수추진사례를 교환하기 위한 제6회 자율관리어업전국대회(11월), 전국을 5개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관리과

권역으로 구분한 광역단위 워크숍(5회), 미 참여지도자 및 수협담당자에 대한 자율관리어업 이해 증진교육(1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8년도에는 자율관리컨설턴트와 명예홍보위원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지방수산사무소 중심의 지역단위 확산교육도 미 참여 공동체와 활동실적이 저조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토론회 등의 현장중심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우수공동체에 대한 현장견학 및 선진수산국 해외연수 실시(3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는 우수사례집과 영상물로 하는 한편 제작,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발간 등 대어업인·대국민 홍보활동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6년도부터 도입한 공동체 등급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본 평가인 자율관리평가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부에 구성하여 현장 확인·검증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등급화 결과에 따른 육성사업비 차등 지원과 함께 우수공동체 지정패를 수여하고, 우수공동체 지도자에 대하여는 정부포상과 수산선진국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자율관리어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참여공동체가 늘어나면서 정부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정부와 어업인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 기능의 활성화, 공동체별 등급결정을 위한 자율평가위원회 사무국 운영,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자율관리어업 지원기구(시·도별 지역협의회, 지도자협의회)에 대한 활동에 대하여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 3 절 환경친화적 낚시관리제 도입*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가족단위의 여가생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낚시인구는 현재 573만명(민물낚시 378만명, 바다낚시 19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00〉

출조빈도에 따른 낚시인구

(단위 : 천명)

구분	계	잠재낚시인구	일반낚시인구	전문낚시인구
계	5,730	3,222	2,097	411

자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한국수산회, 2005)

낚시활동 지역으로 내수면에서는 강·하천, 댐·호소, 저수지 등이 낚시장소이며, 이 중 저수지가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다낚시는 갯바위, 방파제, 선상 등에서 이루어지고 이 중 약 80%가 갯바위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수면과 바다 등에는 가족단위의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배출되고 강과 저수지, 바다 등은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과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무인도서나 갯바위 등 수심이 깊고 위험한 지역에서 낚시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낚시인구 증가와 낚시도구의 발달 등으로 물고기 포획강도가 높아지고 각종 낚시대회가 유치되면서 더 크고 더 많은 물고기가 포획됨으로서 수산자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물고기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낚시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표 101〉 유어행위에 의한 조획량과 상업적 어업의 어획량 비교

(단위 : 천MT, %)

구 분	조획량(A)	어획량(B)	비교(A/B)
계	300	1,909	15.72
바 다	116	1,142	10.16
내수면	184	767	23.99

자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한국수산회, 2005)

따라서 낚시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서민들의 레저활동인 낚시를 발전시키고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낚시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06년도에 『낚시관리제』 도입 등 (가칭)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민간인 주도의 “자율관리제”를 근간으로 하는 『낚시관리법률(안)』을 마련하여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 3 장

연근해 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확립

제 1 절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1. 연근해어선 감척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업 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출어경비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화된 연근해어업 경영수지 개선과 감소추세에 있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 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수산동·식물의 주산란·서식지 보호와 연안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04년부터 '08년까지 '03년 말 연안어선 세력의 10%수준인 6,300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07년 말 현재 5,913척을 감척하였고, '08년 2,000척을 추가 감척하면 당초 목표보다 26% 초과한 7,900여척 감척이 예상된다.

근해어선은 WTO/FTA에 대비하고 자원회복과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해어선에 대하여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5%인 1,280척을 감척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근해어선 84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표 102〉

2008년도 시·도별 연안어선 감척계획

(단위 : 척)

시·도별	척 수	시·도별	척 수
부 산	71	전 북	319
인 천	63	전 남	478
울 산	18	경 북	122
경 기	3	경 남	454
강 원	153	제 주	184
총 남	135	합 계	2,000

※ 근해어선 : 사업대상자 결정 후 시·도 물량배정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제 2 절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1.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친환경어업 실현을 위하여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을 경북 울진군 대게자망 어업인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추진중에 있다.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어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및 어업인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07년 처음으로 경북도 대게 자망어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어업인의 호응을 받고 있어, 2008년에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250척의 어선에 생분해성 어구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자망어업뿐만 아니라 통발어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어업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할 필요성 제기됨에 따라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과제 연구조사」를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어·혼획을 저감을 위한 어구·어법을 개발하고, 어구·어법 규제방식에서 어종별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3. 연근해어업 총조사 실시

변화하는 어업여건에 대해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근해어업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간 23억 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업 총조사」를 실시한다. 동 조사에서는 시도별·어선규모별·어업별 어획실태, 어장이용 수준 및 어기별 어획상황에 대한 조사와 어종별 주 조업어장, 어업별 사용어구 규모, 어구·어법 변화상황, 어획물 체장조성, 생식소 속도지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추정(ABC) 등의 어업전반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

연근해어업 총조사가 완료되면,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 TAC(총허용어획량) 실시, 어업구조 개선(감척사업 등) 등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주요 어종별 어획강도 및 어획수준에 따라 허가정수를 재설정하고, 동 조사의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TAC 산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어구·어법의 발달에 따른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어업현안 발생(자원량 증감 논란 등)시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한·일, 한·중 어업협정, FTA/DDA 체결 등 국제 어업관련 협상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등 어업정책 방향 설정의 근간 자료로 활용된다.

4. 어구와 어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

그간 어구나 어법에 대한 법제화 없이 전통적·관행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어구와 어법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어장축소, 자원감소 등으로 자원선점을 목적으로 어구나 어법을 임의 변형하여 자원남획은 물론 업종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어업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관행적이고 전통적인 어업방식을 탈피하고, 시대의 변화와 합리적 기준에 의한 어업방식으로서의 전환과 업종간 분쟁예방,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어구와 어법에 대한 “가칭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고시』 제정”하여 법제화를 추진한다.

46개 업종별 어구와 어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비를 해소하고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포획·채취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어구와 어법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어업별 표준 어구와 어법을 제시하며, 어구겨냥도, 조업모식도, 어구설계도를 부도로 첨부하여 국민적 이해를 높이는 한편, 업종간 시비가 되는 부분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어구형태와 조업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추가로 어구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한편 어업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고 불법어업 예방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업질서를 조기에 확립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 3 절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은 광물자원과 달리 생명력이 있고 생태계내에서 스스로 조절하고 먹이에 따라 이동하며 연안오염 등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변동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수년간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획량 할당과 노력량 규제등 양적관리와 산란장 보호, 어선감척, 종묘방류 등 질적규제를 병행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정부정책의 적극 시행과 어업인들의 참여와 협조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근절되고 감소하던 연근해 어업생산량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선진인류 수산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어업질서가 조기에 확립되어야 하고 일방적 단속보다는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예방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강화하고 그간 업종간 분쟁요인이 되어왔던 어구·어법 기준 및 어구 인증제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어업질서 확립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어업질서의 선진화 구현

법과 원칙에 맞는 책임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업종간 분쟁 등 사회적 과장이 큰 자원남획형, 분쟁야기형, 불법어업조장형 등 3대 불법유형을 매월 1회이상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중점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퇴출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재진입 방지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 불법조업선의 “몰수” 등 강력처벌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해 나가고 불법어업 신고포상도 병행 실시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5월 어패류 산란기 3부 합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및 10월 어패류 성육기 TV캠페인과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을 700척

*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으로 확대하는 등 일방적 단속보다 예방·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불법어업 단속처벌규정 강화

일부 어업의 경우 처벌강도가 약해 상습적·의도적으로 불법조업을 일삼는 사례가 있다.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트롤어선과 오징채낚기 어선간 공조조업이 그 예이다. 이는 불법어업으로 얻는 수익이 과징금 등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어업의 이익이 과징금보다 큰 업종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어업정지 일수도 상향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사용된 어선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몰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제 퇴출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첨단 어업지도선 및 장비 확충

한·일/한·중 어업협정발효(1999년 1월 22일/2001년 6년 30일)로 우리 관할 수역이 약 4배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국가 어업지도선을 확충하기 위해 2002년~2008년까지 38척으로 증척계획에 따라 그 동안 국가어업지도선 확충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예산 사정상으로 2007년까지 8척을 건조하여 현재 33척의 국가 어업지도선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국가 어업지도선의 신조선 건조가 미루어지게 됨에 따라 선박의 성능과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하여 해난사고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선령 25년 이상 노후지도선을 우선 대체건조하고 2008년도에는 기동성 확보를 위한 연근해 전담선 150톤급의 건조설계와 2007~2008년 까지 2개년 사업으로 500톤급 1척을 건조중이며 연말에 취항 예정으로 있다.

또한, 불법어선의 지도·단속 장비현대화를 위해 실시간 타깃 추적이 가능한 첨단 알파레이더와 단속용 쾌속보트 및 전자해도시스템 등을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4. 어업지도선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대책 마련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출동예정 해역의 어·해황, 어선분포 등 종합적 분석을 통한 포인트 중심의 현장단속 실시로 유류절감과 단속실효성을 제고하고 불법어업 의심선박 등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감독공무원의 수사실무 등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무연수원 등 외부 위탁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연말에는 어업질서확립 우수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5.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 확대 등 어업인 참여 유도

민간자율에 의한 불법어업감시기능 강화 등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을 현재 600척에서 700척으로 확대, 지정·운영하고 불법어업 없는 우수단체, 어촌계 10개소를 선정·포상하여 어촌사회에 준법어업 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 4 장

합리적인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제 1 절 시장개방 피해 특별대책 마련*

그간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10년간 수산분야에 12.4조 원을 투융자 하는 내용의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반면, 한·미 FTA 추진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수산정책의 방향과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현장 어업인 중심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수산업·어촌 종합대책」 투융자계획 12.4조 원을 수정·보완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업그레이드 할 것이다.

1. 수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장 여건이나 수산자원의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 채 과도한 노력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WTO/DDA 협상을 비롯한 무역자유화 조치가 진행될수록 어려움이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통상과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낮은 업종이나 경영체를 정리하고 잔존 경영체들은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연안어업 중심의 수산업 구조조정 범위를 근해어업까지 확대하여 적정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 어업인 전업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 어업인 및 어업 종사자의 전업·전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할 것이다.

2.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수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성립하는 산업으로 자원량은 수산업의 존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즉, 수산자원 없이는 수산업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생산성 확대가 수산업 자생력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130만 톤(2007년 115만 톤) 이상의 안정적인 어업생산량 달성을 목표로 어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회복계획을 2005년에 마련하였다. 이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해 2015년까지 상업성이 큰 20개(2007년 7개) 어종에 대한 자원회복 세부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3. 수산가공·유통산업의 육성**

21세기는 감성적이고 개성적인 소비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사회이다.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들의 입맛이 세계화 되면서 수산식품에 대한 시장수요도 탈지역화, 탈계절화 되고 있고 그들의 구매 파워가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의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미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수산식품은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소비자 수산물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안전한 식량산업으로 인식되도록 소비자 중심의 생산·가공·유통 관리체제 구축토록 할 것이다. 우선, 소비자들의 건강과 영양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된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을 위해 '바다에서 밥상까지' 철저한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 수산업은 전통적인 수산업의 영역인 식량 공급 차원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바이오 수산자원 이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수산 생물로부터의 신물질 개발, 생명공학을 응용한 양식기술개발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수산벤처사업 지원 확대하는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할 것이다.

4. 어촌을 살기 좋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개발*

어촌은 오랜 생활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문화공간으로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어업 여건의 악화와 어촌 정주환경의 변화 및 관광 패턴의 변화에 따라 어촌 관광은 어촌 소득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촌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인력을 어촌에 확보하여 어촌의 Amenity를 활용한 다양한 어업외 소득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어촌개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기 추진 사업들을 통폐합하는 한편, 수산업·어촌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산업·어촌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어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사업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양식재해보험은 대상품종, 대상재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가능 품종부터 시범사업 도입(2008년)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업 경영기반을 지속 확충할 것이다

5. 수산보전제도 본격 도입*

농업분야 직불제 본격 도입('97) 이후 어업인 소득보전 대책으로 수산 직불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가시화 등으로 어업인들의 직불제에 대한 요구는 강해지고 있으나, WTO/DDA 보조금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수산분야 금지보조금 범위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등 직불제 확대를 위한 대외 여건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WTO체제하에서도 지원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어가소득 보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농업 등 타 분야에서 시행하는 직불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수산보전제도를 발굴하여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수산보전제도는 정부가 예산(국고 보조)을 어항정비, 유통시설 확충, 기반 정비 등에 투입해도 어업인의 직접적 소득 증대와 연결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WTO/DDA 체제하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보조금을 발굴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으로,

추후, 시장개방 체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가능한 '허용성' 보조금을 수산 보전제도 형태로 개발하되 시혜적이고 무조건적인 직불금 지급은 지양하고, 수산업 자생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원관리형, 환경친화형, 공익기능 유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통상과

** 수산보조금이 논의되는 규범(Rules) 협상그룹 의장이 대부분의 수산보조금(면세유, 영어자금, 어선건조, 어항건설 등)을 금지대상으로 분류한 의장안 발표('08. 7)

이를 위하여 정부는 향후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 보전제, 조건불리 지역 보전제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유류 의존도가 높은 근해어업에 대해 금어기가 아닌 소형어 출현시기에 일시 조업중지 어선에 대한 자원보호형 휴어보전제(어린고기 보호 직불제)를 우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중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폐어구 수거), 친환경 배합사료 사업, 생분해성 어구지원 등 수산보전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수전보전제도로 통합하여 수산보전제의 실효성과 시너지효과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제 2 절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1. 영어자금 공급 및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가.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

2008년도 영어자금은 대 정부 상환분 58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2007년과 같은 규모인 1조 5,050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이중 연근해 어업분야에 1조 4,250억 원, 원양어업 분야에 8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표 103〉 2008년 영어자금 공급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소 요 액		36,928	38,920	41,199	41,299	41,685
공 급 액		14,050	14,050	15,050	15,050	15,050
공 급 율		(38)	(36)	(37)	(37)	(36)
연근해	소 요 액	31,624	33,854	36,088	36,364	36,668
	공 급 액	12,900	13,400	14,250	14,250	14,250
	공급율	(41)	(40)	(40)	(39)	(39)
원 양	소 요 액	5,304	5,066	5,111	4,935	5,017
	공 급 액	1,150	650	800	800	800
	공급율	(22)	(13)	(16)	(16)	(16)
재 원 별	재정자금	5,814	5,636	5,636	5,636	5,636
	수협자금	3,844	3,933	4,433	4,433	4,433
	상호금융	4,392	4,481	4,981	4,981	4,981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전체 공급자금 1조 5,050억 원 중 500억 원은 어선조난, 흉어, 재해,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영어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영어자금 500억 원 중 250억 원은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업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도 영어자금 공급재원별로는 정부의 재정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636억 원, 수협중앙회의 신용자금에서 4,433억 원,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자금에서 4,981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대출된 자금에 대한 연체감소 등을 통해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적극적 추진할 계획이다.

나. 어업인 금융부담 완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각종 수산정책자금을 어업인에게 저리로 공급하고, 기존의 대출금에 대해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면제를 위해 2008년에 약 756억 원에 달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어가의 금융비용 및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이차보전금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어업인에게 연리 3%로 대출하는 영어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530억 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연리 1.5~5%로 지원하는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185억 원, 각종 재해발생시 피해복구용으로 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 등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4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104〉 2008년 어업경영자금이차보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예산(A)	2008예산(B)	증 감(B-A)	B/A(%)
어업경영자금이차보전	82,722	75,604	-7,118	-8.6
· 영어자금이차보전	52,500	52,970	470	0.9
· 피해복구이차보전	2,045	4,171	2,126	103.9
· 어가부채경감이차보전	28,177	18,463	-9,714	-34.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다. 대손보전기금의 건전화

정부에서 어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해 오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 기금잔액 부족 등으로 대출기관에 대한 대손보전이 적기에 이행되지 못하는 등 기금운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업인에게 수산정책자금을 원활히 대출하여 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대출기관의 경영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손보전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재정으로 65억 원을 기금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 7월 1일부터는 수산정책자금의 신규 신용대출은 물론 기존 신용대출의 연장에 대해서도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를 1인당 1,000만 원으로 제한하여 기금의 건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2008년도 수산발전기금의 운용규모는 5,998억 원으로서 전년도 운용계획 5,994억 원 대비 0.1% 증가하였다.

조달계획을 보면 비축사업 및 여유자금 운용규모 증가로 수산물판매수입 및 이자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관 및 FTA피해 지원관련 장기 용자사업 편성으로 용자원금 회수액 등의 감소로 자체수입이 축소 편성되었고, 정부내부 수입(정부출연금)은 FTA피해 지원을 위해 20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자체재원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시행(2007년 8월 3일)됨에 따라 수산물공매납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편입조치 하였으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도 하반기중에 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해 나갈 전망이다.

운용계획은 크게 기금운영비, 사업비, 여유자금 운용으로 분류되며 가장 비중이 큰 사업비의 규모는 전년도 수정계획 5,254억 원 보다 다소 증가한 5,479억 원으로 용자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89.0%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의 사업비는 해양환경개선추진, 정부가격안정, 자원관리형어업육성 및 어업경영지원, 품목별경쟁력강화 및 직접피해지원, 민간가격안정, 유통가공시설개선, 산지 및 소비자유통개선 등의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완료 및 신규 사업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부합되도록 2007년도 9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의 과목 구조를 2008년도에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WTO/DDA 협상, FTA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서의 기금의 지원역할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 3 절 수산경영구조 선진화*

1. 일선수협 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가. 일선수협 경영평가

일선수협의 순 자본 비율 및 경영상태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부실 조합 등에 대해 지정·해제 및 강력한 적기 시정조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선수협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적기 시정조치를 취하고, 분기마다 적기 시정조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미 이행 시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체결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일선수협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MOU 이행사항을 점검, 미 이행시기 지원된 자금에 대한 회수는 물론 임직원 에 대한 신분상 제재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경영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경영개선자금 추가지원 및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갱신

2002년 9월말 일선수협 경영진단시 매각대상 고정자산이 아니었으나, 이후 MOU 약정체결에서 매각대상 고정자산에 추가되어 매각손실이 예상되는 18개 조합에 총 194억 원을 2006년부터 융자 지원하여 이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이자를 2010년까지 연간 14억 원씩 5년간 총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2008년 중 MOU를 체결한 37개 조합에 대하여 총 409억 원의 경영개선자금 이자(MOU 관리 비용 7억 원 포함)를 지급하는 등 지속적 경영정상화를 수행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다. 부실조사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실조사 대상조합 50개에 대하여 부실원인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귀책사유를 규명하는 등 부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실조합 결과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9개 조합 임직원 71명 (17건, 부실책임액 26,311백만 원)에 대하여 단순한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MOU목표 미달조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자금지원을 받은 조합에 대한 철저한 부실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부실에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조합 경영진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조합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기 경영정상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라. 조합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실시

기존의 경영지도는 해당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적기 시정조치 사항 등 일반경영상황에 따른 일률적인 경영지도로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 경영정상화 지연 및 추가 부실화에 대한 우려 상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경영지도의 실효성을 높여 일선수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 경영컨설팅 요원 선발 후 장기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조합 경영현황 및 지역적 특성 등을 분석 후 이를 토대로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경영컨설팅 실시할 계획이다.

2008년 중 시범적으로 컨설팅요원 2명을 양성하고 5개 조합에 대해 컨설팅 실시 후 향후에 모든 조합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에 일률

적으로 실시하던 경영지도는 전문 경영컨설팅과 MOU 및 적기시정조치 현장점검(이행독려), 회계지도로 세분화하여 실시해 부실을 차단할 계획이다.

2. 수협중앙회의 지속적인 경영정상화 추진

가. 수협중앙회 경영개선자금 지원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지도사업 및 경제사업 부문의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사업부문 자본잠식액(943억 원)은 2007년까지 943억 원을 모두 지원함은 물론 분할 지원에 따른 2008년은 167억 원의 이자발생 비용의 지원을 추진하여 경제사업부문의 유동성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자립경영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업부문 손실금(475억 원)은 2008년까지 165억 원을 지원함은 물론 지원 잔액(310억 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원을 마무리하여 수협의 기본임무인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교육훈련 등 지도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경영개선자금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원조합 감사업무 수행비 5억 원을 지원하고 일선수협의 채널통합시스템 구축에 1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일선수협 유류탱크 교체지원을 위해 7억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 경제사업부문의 「3-step 2008」 운동 전개

경제사업부문은 전 임직원의 전사적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된 「Go! Best 2006」운동과 「U-Fresh 2007」운동을 계승 정착화하기 위해 「3-Step 2008」운동을 전개하였다. 「3-Step 2008」의 "3"은 2008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집중 추진과제로 직원 의식개혁, 매장정비, 마케팅 강화를 뜻하며, "STEP"은 세 가지 집중 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신속한 업무처리(Speed),

실질적인 교육(Trainig), 진실된 생각과 올바른 행동(Ethics), 지속적인 실천·실행(Practice)을 뜻하며, 이는 철저한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재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이다.

이 운동의 전개로 2008년에도 차별화된 활어회·초밥 전문 외식공간인 ‘바다회상’을 점진적으로 전문 회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다. 신용사업의 「BLUE I 0708」 2차년도 운동 전개

일류해양수산은행 비전달성을 위해 개척해야할 ‘Blue Ocean’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나(I)로부터의 Innovation을 주요 내용으로 2007년부터 추진한 「BLUE I 0708운동」은 2008년에도 그 경영혁신운동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은행 구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속적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구조 개선 및 자본 확충 노력 지속추진, 자본시장통합법 대응역량 확충, 예금기반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최우선 과제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강화, 영업점 마케팅 지원확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개선 및 구축 추진 등을 지속적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3. 수협 혁신방안 추진

수협은 2005년부터 추진한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협이 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체성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회원조합과 연계체제 강화로 수산물 도매 마케팅 확대를 위하여 대형 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및 전산시스템 구축, 수산물 가공처리로 선진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산물 가공시설 완성,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를 위한 설계 및 착공, 회원조합 경영컨설팅 기능강화를 통한 회원조합 경영정상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예금 14조원, 대출 10조원 달성을 위한 「1410 운동」을 전개하고,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대응방안 수립 및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수협발전 5개년 계획’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협동조합으로서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고 확고한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2008년 경제사업부문은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는 바다에찬 브랜드 신상품개발을 지속 추진하여 수산물 소비촉진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업의 미래전략사업으로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부지확보를 추진하고, 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 HACCP시설을 갖춘 인천 물류가공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 4 절 어업 보험 확충*

1. 어업인 정책보험 확대

2008년도에는 정책보험 도입 5차년도로서 신속한 재해보상과 어업경영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재해보상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보험사업의 문제점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업인이 보험제도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료에 대한 보조율이 3년째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 상승등에 따른 보험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국고 보조율 상향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105〉 어선규모별 보험료 지원율

(단위 : %)

구 분	어선원 보험료					어선 보험료		
	10톤 미만	30톤 미만	50톤 미만	100톤 미만	100톤 이상	10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2006	62.0	54.0	30.0	22.0	14.0	62.0	54.0	14.0
2007	62.0	54.0	30.0	22.0	14.0	62.0	54.0	14.0
2008	62.0	54.0	30.0	22.0	14.0	62.0	54.0	14.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2.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양식수산물은 1990년대 이후 양식기술의 안정화 및 양식어가의 대형화·기업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는 태풍과 적조 등의 어업재해 발생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수산생물에 대한 복구비는 치어입식대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양식수산물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시장경제하에서의 보험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가 관여하는 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7.12.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여 수협중앙회를 보험사업자로 선정하여 2008. 7. 1부터 육상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07년 기준으로 넙치 양식어가수는 674가구이며, 연간 생산량은 41,171톤, 생산금액으로 4,389억 원에 이르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4대 자연재해(태풍·폭풍·해일·적조)를 원인으로 한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피해를 담보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사업비 70%를 국고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총보험료의 41%만 자부담하면 된다.

또한, 자연재해특성상 발생빈도가 낮고 심도는 거대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손해를 140%초과시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두어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었다.

제 5 절 HEBEI SPIRIT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07.12.7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 호 유류오염사고로 해안선 280.3km(충남 167km, 전남 113.3km), 도서 101개(충남 59개, 전남·북 42개), 양식장(34천ha), 해수욕장(15개소)등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라 충남 6개 시·군(태안, 보령, 서산, 홍성, 당진, 서천, 07.12.11)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필요시 전남 지역 등에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오염사고 발생일 정부는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유류 오염보상기금(IOPC Fund)으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어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피해지역 어업인의 생계안정과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42천 세대에 긴급 생계안정자금 1,172억 원을 지원('07.12)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업재개를 추진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정된 위판장(7개소)에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며, 기타 항포구의 경우 지자체, 수협 등의 관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지역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필요시 피해지역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식량 및 의약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원활한 조업활동을 위하여 특별 영어 자금 및 정책자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유류오염방제를 위해 참여한 지역주민의 방제비도 조속히 지급되도록 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휴가철 태안찾기 캠페인,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이러한 생계안정대책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태안지역에 현장대책반과 농림수산물부내에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어업인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유류피해지역의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특별법 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 5 장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 구축*

제 1 절 어촌종합개발사업체계 개편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개발 잠재력과 협업능력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수 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권역을 정하여 개발하며, 대상사업은 어선계류시설·어업지원 등 생산 기반시설과 어촌환경시설 및 어촌소득기반시설 중에서 어업인이 선택하였다.

권역당 2~3개년간 사업비로 30~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국고 지원율은 2004년 이전 사업은 50%, 2004년 이후 사업은 80%로 2008년도에는 3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개 권역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 동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역숙원사항 위주로 분산 추진되고, 정형화된 사업계획이 하향식으로 시행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어촌개발 여지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사업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주요 개편내용은 사업 대상권역별 투자방식·투자규모·대상권역 규모 등의 변경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직접 수립토

*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록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즉, 어촌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별 특화개발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중심으로 권역별 사업비의 차등지원 방식 등의 도입이 되겠다.

제 2 절 어촌관광 S/W지원 강화

국민들의 소득 및 주 40시간 근무확대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업인에게는 어업외소득증대와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휴식 공간제공을 하고자 어촌관광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치중되어 국내 관광수요를 어촌관광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중 30개 마을을 선정 사무장 보수를 지원(100만원 한도, 국비 50%)하고 체험마을 운영 컨설팅(16개소)을 확대 실시하여 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S/W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컨설팅은 1지역 1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07년도에 운영중인 어촌체험마을중 30개 마을을 선정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www.seantour.org) 구축(정비)」 사업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도 30개 마을을 선정·지원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관광포털(www.seantour.com)과 연계하여 도시민에게 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등 S/W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연간 27회/2,100명 이상)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어촌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각종 박람회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협의 어촌지원 TF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자매결연 사업 등 도시/어촌 교류사업의 양적확대는 물론, 내실 있는 교류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지원할 계획이며 총 500사 500촌 자매결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제 3 절 어항시설 확충

1. 국가어항

2008년도 국가어항투자 방향은 완공위주의 집중 투입으로 완공시기를 단축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긴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지보수사업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43개 항에 1,751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 선진포항 등 2개 항을 완공하고 강원 아야진항 등을 관광어항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시범개발중인 대포항 등 10개 다기능어항 개발에 504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어항 관광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울산 정자항 및 강원 강릉항 2개를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에는 2007년부터 시행한 「국가어항지정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시·군·구별 어선안전 수용률이 100% 미만이고 국가어항지정기준에 적합한 어항 6개소를 경제성 평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며, 2005년 5월 31일 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위해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 지방어항 및 어촌정주어항

지방어항은 완공 위주의 집중 투자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신규지정 억제 를 통하여 완공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균형개발특별세 재원으로 51개항에 637억 원(국비 510억 원, 지방비 127억 원)을 투입하여 10개 항을 완공함으로써, 전체 289개 항 중 144개 항을 완공(완공률 50% 달성)할 계획이다.

어촌정주어항은 지방어항의 완공률이 부진함에 따라 완공위주의 집중 투입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역균형개발 측면을 고려하여, 어촌정주어항개발을 위한 국비지원을 적극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제 4 절 어촌어항 관광개발

1. 어촌어항관광 조성사업

국민들의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와 ‘주 40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어업자원, 역사·문화·생활방식 등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어항시설을 연계하여 어촌을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촌·어항 복합 공간, 다기능어항, 어촌관광단지 등 3종의 어촌·어항개발 통합모델을 개발한데 이어,

2005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7년까지 기본설계 23개소, 실시설계 18개소를 실시하고 2008년도에는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 외 14개소에 대한 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양포항(경북 포항)을 완공할 계획이다.

2. 어촌체험마을 조성

2001년부터 체험활동이 가능한 어촌마을에 어촌관광체험 기반시설비를 지원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8년은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천시 중구 무의동 포내 마을 등 8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촌체험마을사업이 기반시설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운영이 활성화 되어 실질적인 어업외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험마을 운영 컨설팅 등 S/W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제3회 어촌체험마을 성공사례발표회를 개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경쟁을 통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 6 장

어촌전문인력 양성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 *

제 1 절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251쪽)

1. 어업인후계자 육성*

어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8년도에 157억 원(424명)을 5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11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12월에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융자금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에 의욕이 있는 자를 선도경영인 사업장에 인턴으로 고용하는 수산업인턴제와 해양수산신지식인 등 수산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두어 어업인후계자의 지속적인 확보와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106〉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합 계		'81~'07		'08(p)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17,804	425,800	17,380	410,100	424	15,700
일 반 후 계 자	15,179	287,276	14,829	275,526	350	11,750
전 업 경 영 인	2,559	132,799	2,490	129,349	69	3,450
선 도 경 영 인	66	5,725	61	5,225	5	500

*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2. 해기사 양성 및 수산기술 훈련

수산인력개발원은 신 정부 출범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수산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창의와 실용을 통한 "Global Top 10" 수산부국 인재양성과 수산의 미래를 여는 선진 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운영에 교육목표를 두고 수산공직자와 어업인 등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연간 66과정, 9,475명의 교육계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공직자 대상 전문교육은 수산정책의 비전과 전략목표에 기반한 역량교육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중심의 실용성 있는 교육, 특히 수산식품산업육성, 수산물 브랜드전략, 수산물 유통혁신 등 수산·어업분야의 다양한 직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집합, 사이버, 틈새시간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간 44과정, 62회 실시할 계획이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촌 현장을 비우기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현지방문 기술교육과 원격영상교육시스템을 이용한 수산기술상담 및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전업경영인·어촌지도자·여성어업인·일반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산업과 어촌을 이끌어 나갈 핵심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을 연간 11과정, 37회, 3,810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 2 절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최근 어촌은 어업생산 활동의 전초기지 차원을 넘어 어촌관광, 해양레저, 휴양·정주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운 차원의 어촌모델 개발이 조기에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어촌개발리더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어촌지역개발 리더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지역단위의 정부시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어촌계장, 마을이장 등 기존 지역리더에게 사업기획 및 추진능력 등을 강화시켜 상향식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 「어촌관광가이드」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2개 과정의 전문인력 양성반을 개설하여 지역 어업인 및 어촌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개발을 위해 교육훈련 및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자조조직인 어촌사랑주부모임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회·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로 여성어업인의 위상제고와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도 할 계획이다.

어촌개발 전문인력 육성은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역량과 의견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인 모델로 효율적인 어촌지역개발이 가능하고, 어촌개발과 개발 후 시설운영 과정에서도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절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의료, 교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 기능이 미약하고, 어가소득은 전국가구소득의 79.2%수준으로 젊은 층의 탈 어업, 탈 어촌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 2007년 기준 어가소득은 30,668천원 ↔ 전국가구소득 38,698천원

* 어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 (2003년) 16% → (2007년) 22%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법”을 제정 시행('04.6)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05.4)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08년도에는 107개 과제(수산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분야 과제에서는 어촌지역 공동화 심화를 예방하고, 젊은 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을 통한 어촌의 사회안전망을 확충 하고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 양식어장 정화사업, 디지털 어촌 구축 등 어촌 기초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어촌체험마을 조성, 관광센터 설치 등 어촌체험·휴양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사업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사업추진 효과를 제고 하고 어촌지역공동체 유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7 장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제 강화*

제 1 절 국내수산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국민 소득향상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국내생산량 감소로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양식품종 다양화와 대량생산 등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항생제 등 약품사용이 증가하고, 말라카이트그린과 같은 금지약품을 사용하는 등 수산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증가되는 실정으로 세계 각국은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자국의 위생조치에 의한 무역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SPS 등 국제규범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어장에서부터 비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안전조사 실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HACCP의 적용 약식장과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관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확대와 함께 유해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성조사를 6,500건으로 강화하고 생산업계의 위생안전 교육 확대 및 효과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과 위생협약 사항에 부합되는 위생관리를 위해 EU, 미국 등의 수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함

*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으로써 안전한 제품의 생산유도를 통해 수출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국내 생산·출하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활성화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불량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의약품은 수산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수산 식품의 안전성을 위하여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 준수가 필수적이다.

특히, 양식 어류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활동하므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성 세균에 대한 생물자체의 저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 하에서 질병치료용으로 항생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승인된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어업인에 대한 안전사용 지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양식 어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 및 공급 확대를 통하여 항생제 사용량의 자연 감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제 2 절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수산물 수입의 완전 자유화로 국가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초래되는 저질·위해 수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 수계 보호를 위한 검사기능의 강화가 더욱 요구됨에 따라, 2008년도에는 액체질량분석기(LC/MS/MS) 등 42종 103대의 최신 정밀분석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신규 및 기존 분석검사원에 대해서도 유기독성·항생물질·어류질병 등 10개 분야 33명을 국내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분석검사원간의 신뢰성 오차범위 축소와 본·지원 간 표준화 유지를 위해 중금속, 항생물질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기숙련도 향상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써 인정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함은 물론 인정분야 확대 및 품질시스템의 지속보완, 국제수준의 시험기술 능력향상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수준의 시험기관으로서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어장에서부터 비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안전조사 실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HACCP의 적용 약식장과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관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확대와 함께 유해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생산업계의 위생안전 교육 확대 및 효과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검사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과거 부적합 이력이 많은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된 위해물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식약청 등 관련기관과 수산물 안전관련 협의회를 통해 기준·규격 설정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다.

더불어 새로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항목의 기준설정을 위하여 항생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해정보, 기타 문제제기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산교역 국가(러시아, 뉴질랜드 등)와의 위생약정 체결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위생약정 체결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불량 수입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세청과 불법유통, 위장수입 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입수산물 부정통관을 방지하며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관별 DB구축을 추진하여 국내 유통 투명성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다.

제 8 장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제 1 절 친환경 양식 생산

연안 내만의 양식장이 어장오염·노후화 및 빈번한 질병발생과 태풍·적조에 따른 피해 반복 등으로 생산성이 날로 저하됨에 따라, 어장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내만의 가두리양식장을 외해로 이동한 새로운 양식기술을 적용하여 연안어장의 환경개선과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현재 외해(수중)가두리 양식개발사업은 제주도(2005년부터)와 경남도(2006년부터), 전남도(2007년부터), 강원도(2008년부터)에서 시험어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시험어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해양식 관계자인 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수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해(수중)가두리양식 시험어업계획의 기본지침(2007년)』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하였다.

기본지침에는 2009년까지 해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도별 2개소 이내의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시험어업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분석 한 후 전국 연안으로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동 시험어업의 추진방법은 정부(지자체 포함), 어업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험대상 품종은 참치, 대구 등과 같은 신품종 또는 가급적 기존 양식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어종과 경합되지 않은 돌돔, 능성어, 참돔 등 수입대체 품종으로 하며. 시험어업 장소는 수심 40m 이상, 해안선에서 3k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동해에서 저층수를 이용한 대구외해양식 기술개발과 남해에서 참다랑어 외해양식 기술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해(수중)가두리 양식의 본 사업에 대비하여 2007년부터 씨그랜트(Sea Grant)사업 기획과제로 “외해양식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를 추진, 법·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사료 사용 등으로 야기되는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및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2008년도에 34,020백만 원(농특회계 15,100, 균특회계 9,320, 수발기금 9,600)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

농특회계 사업내용은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연구 6개소, 지자체의 양식기반 시설구축지원 7개소,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1,434ha,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1개소이다.

균특회계 사업내용은 김육상채묘및냉동망보관시설 2개소, 양식어장정화사업 22개소, 적조방제 4개소,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1개소, 배합사료지원 1개소이다.

수발기금 사업내용은 해면양식시설 5개소, 양식어업기자재 7개소, 수협사료 시설운영을 위해 1개소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 2 절 수급조절 강화

2004년부터 시작된 양식수산물 자율 수급조절사업은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 정부주도의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의 필요에 따라 농안법 및 어업인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수산업발전기금으로 수산업관측사업, 유통협약사업, 자조금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수산물 생산 및 유통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생산자, 유통인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적정생산 및 적정가격을 유도하고, 유통협약·자조금 사업은 수산물 수급동향을 고려한 적정 생산 및 출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유도 및 수산물 판로확대,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활동 등을 통한 생산자 단체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비저장성 정부수매(폐기)사업을 통해 저장성이 없는 수산물(물김 등)의 과잉생산 및 예측불가 사유로 가격 하락시, 일정물량을 수매하여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동안 양식수산물 자율 수급조절사업은 주요 양식품목(김, 넙치, 조피볼락, 전복, 송어, 굴 등)을 중심으로 매월 관측정보를 어업인, 유통인,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양식어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소비안정을 도모하여 왔으며, 생산 어업인 단체에 대한 유통협약·자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어업인의 자율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왔다.

앞으로, 자율 수급조절사업인 수산업관측 및 유통협약·자조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은 2011년까지 육상수조식, 가두리식, 축제식양식업 주요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측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관측자료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DB, DW) 구축, 수산물 수급 조기경보체제 구축, 수산물 수급전망모형 구축, 수산물 수출입관측 및 해외 동향조사를 강화하여 관측 기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통협약 및 자조금 지원사업은 사업내실화 및 사업성과 도출을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어업인 단체에 대해 사업비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해 나가고, 기존 시·군 단위에서 업종별 수협 및 품종별 생산자 협회 중심으로 2010년까지 광역화·전국화하여 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 양식수산물에 대한 민간주도의 시장지향적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의 적정량 수급조절을 위한 양식장 불법양식시설 정비단속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김, 어류, 전복 양식장의 불법시설과 축제식양식장의 허가사항중 양식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양식장, 기타 양식시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불법시설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양식시설 등 각종 불법양식 시설에 대한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식어장 인공위성 판독결과에 따른 불법 김, 어류, 전복 양식시설에 대한 정비단속, 전남(완도)지역의 불법 전복줄가두리식 양식시설의 단계별 정비단속 계획 수립·추진, 2008년도 어업권 주요품종별 실태조사, 축제식양식장의 불법양식 정비단속 계획, 통합, 미더덕 등 기타 불법양식시설에 대한 양식장 불법 양식시설에 대한 정비단속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불법시설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방침에 일선의 자치기관과 어업인들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자율적인 노력이 돋보이며, 특히, 인공위성 촬영영상 사진을 이용한 김 양식장의 정비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전남 완도지역의 불법 전복줄가두리 및 신안군지역의 어류가두리 불법 양식시설 철거 추진 등 기타 불법양식시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고 점검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불법양식시설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적법한 양식 시설에서 적정량의 양식수산물이 생산됨으로써 양식수산물의 수급조절 기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기관 행정선의 GPS(위성항법장치)에 양식장 면허현황을 입력하여 불법 양식시설을 확인하고 정비단속을 함으로써 불법양식시설이 점차 사라져 적정량의 양식수산물이 공급되면 생산가격이 안정되어 어가의 소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양식장의 불법양식시설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 3 절 어장환경 개선*

2008년도 연안어장 정화사업은 장기간 양식 등으로 어장이 노후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양식장, 마을어장 중심의 양식어장정화에 64억 원을 투입하여 6,730ha에 대해 퇴적물 수거, 바닥갈이, 해적생물 구제 등 정화·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장정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지자체 별로 어장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어장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08년도에는 남해안 지역의 해상 어류가두리 양식어장의 바닥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장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어장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 주관으로 남해안 해역부터 단계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정도에 따라 어장관리해역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제 4 절 내수면 어업 육성*

기존의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2006년 11월 03일, 해양수산부 훈령 제420호)'을 개정하여 내수면양식장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접할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토록 지속적으로 지도·육성하고,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할 수 있는 어구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고, 잠수기 외의 다른 어구로 채취가 불가능한 어종에 한하여 우리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잠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회·매운탕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수면 수산식품의 소비시장을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송어훈제가공공장 건립사업(1개소, 50억)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수면 소비자 선호도 분석 및 소비시장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내수면 수산물 소비증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내수면잠재력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04년~'07년)'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내수면발전종합대책(2006년 11월)'을 수정·보완한 '내수면발전종합대책(2008년~2012년)'을 수립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이용·관리할 계획이며, 댐·호수 등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붕어·잉어 등 민물어류의 원활한 산란과 치어의 생존율 향상을 도모하고, 유어객이 밀집하는 강·하천에는 내수면 생태정보 알림판을 설치하여 토속어류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유어질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도립 내수면배양장 및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연어 치어방류 사업을 지역 관광자원화 하고, 섬진강 토속어류생태관에 이어 남한강 토속어류생태관(충청북도 단양군) 건립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내수면수산자원이 먹거리로 뿐 만 아니라 친숙한 유어자원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제 9 장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제 1 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국민소득 증대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고품질 수산가공품 등으로 소비패턴이 고급화 추세이며 품질인증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품질기준이 일부 강화되었으나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수산물 품질 향상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어 가공산업 활성화 및 고품질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활어회 중심의 회 문화 개선을 위한 싱싱회 생산·유통·소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물품질인증제 확대를 통해 수산식품의 기준강화 및 품질 향상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음식문화의 국제화 추세 등으로 가공품에 대한 소비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수산물가공품 생산에 있어서도 소비자 요구 및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편리화·다양화·고급화 전략과 함께 국민보건 위생에 적합한 가공품 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도는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여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감천항 가공단지 지원 및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특히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품 중심으로 산지가공시설 선별 지원(41개소, 124억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9개소, 84억원), 젓갈타운 조성(3개소, 12억원), 굴 패각시설 현대화(11개소, 5억원) 및 전북진주산업센터(1개소 9억원)를 중점 추진할 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이며, 싱싱회 가공시설 활성화 및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판매장(5개소 3억원)을 개설하여 싱싱회 가공공장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싱싱회 공급체제를 구축하여 싱싱회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수산물 확대보급을 위한 수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 품목에 건제품, 냉동품, 횡감용 등에서 활어 등을 추가, 인증품목 수를 136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경제발전과 식생활 향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수산물 양식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생산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거나 안전기준에 의해 생산된 친환경수산물을 일반 수산물과 구별하여 인증할 수 있는 친환경수산물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에서 명성이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산물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107〉 **제품별 가공공장 현황** (’07년말 기준)

구 분	계	해조류	절임식품	조미가공	건포류	기 타
공 장 수 (개소)	2,424	155	399	334	224	1,31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표 108〉 **가공공장 및 가공품 생산량**

구 분	'02	'03	'04	'05	'06	'07
공 장 수(개소)	3,388	3,008	3,870	2,937	2,994	2,424
생 산 량(천톤)	1,444	1,358	1,529	1,559	1,547	1,384
평균 생산량(톤)	426	451	495	530	517	57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그리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개발, 우수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 2 절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지의 위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주도해 온 수산물 유통체계가 강제 상장제에서 임의상장제로 전환된 1995년을 기점으로 복합적 기능의 종합유통센터 같은 새로운 모델이 출현하는 등 다양화 되었고, 공공유통 기능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는 등 최근 수산물의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할인매장의 증가 및 전자상거래 확산 등 급변하는 수산물의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과거의 생산자위주 수산정책을 소비자 위주로 재편하여 생산어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유통체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패류 및 선어 실질경매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산지 출하자가 수산물 표준규격으로 도매시장법인에 직 수탁하는 물량의 어상자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출하촉진자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4년 1월부터 수도권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자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출하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지 등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수산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 도매시장 상장경매 정착 유도를 위하여 출하자들에게 매년 스티로폼 어상자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여 왔으나, 도매시장의 상장경매가 정착단계에 돌입 하였으므로 2008년도까지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수산물안정기금에서 분리하여 2005년 1월 1일부로 수산발전기금의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설치에 따른 자율성을 강화함에 따라 산지 및 소비자유통자금 확대, 수산물의 민간저장기능 강화 등을 통해 수산물이 적정가격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및 유통마진 축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102억 원을 들여 직매장 12개소, 위판장 5개소, 유통물류센터 3개소, 해양수산복합공간 3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어업인 및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수산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7개소, 위판장 21개소, 유통센터 2개소에 42억 원을 투자하여 수산시장 기능개선 및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1C 신 해양시대 동북아 최대의 수산물류·무역 중심기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추진 중인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사업이 2008년도에 준공 및 개장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인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건립한 지 37년이 지나 노후화됨에 따라 현대화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수산물 관광명소로 쾌적하고 청결한 쇼핑몰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모든 식용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수입수산물의 급증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사태가 증가하고, 허위표시방법이 날로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 업무를 전담하는 기동단속반을 설치하여,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수산물 유통경로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판별 유전자기법 개발 등 과학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산지단속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생산자 및 판매업체들의 자율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협약체결, 민간명예감시원 확대 등 자율적 감시체제 확산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표 109〉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단위 : 천원, %)

연도별 · 시도별	단 속 인 원	단 속 횟 수	단 속 업소수 (a)	적 발 현 황 (b)	조치현황			위반률 (b/a)
					과태료처분		고발 건수	
					건 수	금 액		
2001	14,617	5,493	62,300	1,898	1,739	113,746	159	3.05
2002	17,172	6,570	103,217	1,435	1,309	79,024	126	1.39
2003	16,910	6,250	75,712	1,801	1,650	165,692	151	2.38
2004	45,084	19,130	139,856	1,987	1,854	149,949	133	1.42
2005	20,127	6,646	101,659	1,870	1,776	159,179	94	1.84
2006	18,490	6,251	93,666	4,316	4,250	263,883	66	4.61
2007	20,390	6,032	85,096	2,823	2,675	182,649	148	3.30
서울시	2,370	835	19,853	205	205	1,147	-	0.01
부산시	745	379	4,516	215	215	11,120	-	4.7
대구시	177	91	799	33	33	2,060	-	4.1
인천시	383	185	5,932	401	401	33,690	-	6.7
광주시	397	132	1,655	75	74	7,046	1	4.5
대전시	89	38	504	26	26	11,470	-	5.1
울산시	96	41	555	84	84	5,770	-	15.1
경기도	1,015	332	3,214	252	248	24,846	4	7.8
강원도	912	347	5,870	153	152	10,380	1	2.6
충북도	504	213	1,536	91	90	4,520	1	5.9
충남도	1,256	522	9,733	196	196	13,253	-	2.0
전북도	410	180	2,585	154	154	9,573	-	5.9
전남도	968	280	4,448	379	377	20,420	2	8.5
경북도	456	42	825	4	4	788	-	0.4
경남도	811	382	5,624	216	211	18,450	5	3.8
제주도	1,253	224	4,387	135	123	996	12	3.0
검사원	8,548	1,809	13,060	204	82	7,120	122	1.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제 3 절 수산물 가격안정*

수산부분의 기금이 2005년 1월 1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수산물발전기금』으로 전환 되었는데, 수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2,799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250억 원을 정부비축사업에, 1,340억 원을 민간가격안정사업에, 1,209억 원을 유통개선사업으로 각각 운용될 계획이다.

1. 가격안정사업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발기금 250억 원을 지원하여 냉동명태·냉동오징어 등 3개 품목 9,300톤을 정부에서 직접 비축·방출함으로써 원활한 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민간 및 생산자단체에도 1,340억 원을 지원하여, 비축수매·방출 및 출하조절을 도모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110〉

2008년도 정부비축사업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수매물량	기금지원	수매시기
합 계	9,300	25,000	
냉 동 오 징 어	2,500	8,000	5 ~ 11월
냉 동 고 등 어	1,300	4,000	8 ~ 12월
냉 동 명 태	5,500	11,000	6 ~ 12월
긴 급 가 격 안 정		2,000	1 ~ 12월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주 : 수매 물량 및 사업 시기는 생산 및 가격동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2. 수급 및 가격관리 강화

수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연근해 및 해외어장 생산증대를 도모하고, 주요품목에 대하여는 어황 및 가격동향에 따라 정부비축물량 방출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며, 국내생산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비축사업으로 수입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과의 공동·합작사업으로 어획물 국내반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중으로 물가관리 비상체제를 가동하여 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관리를 점검해 나가면서, 특히 명태·오징어·고등어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특별히 관리하는 한편, 설날·추석 등 성수기에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성수품의 수급 원활과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제 10 장

국제협상 활동 강화 및 해외수산자원 확보

제 1 절 WTO-DDA 및 FTA 수산분야 협상대응*

1. WTO-DD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가. 협상동향

2001년 11월 출범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는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규범***, 서비스 등 9개 협상분야에 걸친 다자간무역협상으로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 2006년 협상중단 등의 사례에서 보듯 각국의 참여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왔다.

2008년 7월에는 제네바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핵심 분야인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의 협상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미국의 면화보조금 및 분야별 자유화 등 민감한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 대립이 계속되어 결국 실패하였다.

2008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와 2009년 인도 총선 및 WTO 사무총장 임기만료 등 정치일정으로 인해 DDA 협상이 한동안 표류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많은 쟁점에 합의했던 만큼 다음번 시도에서는 DDA가 타결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통상과

**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등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인하를 논의하는 협상분야

*** 보조금협정과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주로 논의하며 수산보조금협상도 규범 분야에서 논의

(1) 수산보조금

2007년 11월 규범 협상분야의 Valles Galmes의장은 금지보조금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의장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면세유 등 우리나라 수산 보조금의 거의 대부분이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장안대로 협정문이 만들어지면 수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의장 초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가(한국, 일본, 대만, EU)와 찬성하는 국가(미국, 뉴질랜드)간 입장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금지범위와 개도국특별대우에 대해서 회원국간 입장차이가 커서 협상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EU, 일본, 대만 등 입장을 같이하는 주요 국가들과 공조하여 금지 보조금의 범위를 최소화할 추진하고 있고, 특히 엄격한 자원관리를 전제로 금지보조금의 예외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 규범의장 초안 금지보조금 주요내용 >

- 어선의 취득, 건조, 수리, 개조, 현대화 및 조선소 시설 등
 - 어선의 제3국 이전 및 이전료
 - 연료(면세유), 얼음, 미끼, 보험, 양륙, 가공활동 관련 비용 등 어업 운영비용
 - 해면어업과 관련되는 항구 등 기반시설 및 항 인근 가공시설
 - 해면어업 종사 자연인·법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가격 보전
 - 기타 과도어획에 명확히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 ※ 유예기간: 선진국 2년, 개도국 4년

(2) 수산물 관세

수산물 관세감축은 공산품 관세감축과 같이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분야에서 논의된다. NAMA의 주요 쟁점은

크게 관세감축공식, 개도국 신축성 및 분야별 무세화이다. 관세감축공식은 흔히 스위스공식이라 불리는 것으로 관세감축 계수 이하로 최종관세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논의된 잠정타협안에 따르면 선진국 계수는 8, 개도국 계수는 20, 22, 25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선진국 계수 8을 적용할 경우 최종관세는 8% 이하로 떨어진다. 개도국은 관세인하 신축성(관세감축폭의 50%만 적용 또는 관세감축 면제)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계수 20을 사용할 경우 제일 높은 수준의 신축성이 부여되고 계수 25를 사용하면 신축성을 사용할 수 없다. 개도국 신축성은 또한 특정 HS chapter에서 일정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신축성 제한요건(ACC : Anti-Concentration) 적용을 받는다.

분야별 무세화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보석, 화학약품, 수산물 등 15개 분야가 제안되었다. 수산물 무세화는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태국, 중국 등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은 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분야별 무세화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중국 등 개도국과 심각한 대립이 있었다.

나. 대응방안

정부는 DDA 협상결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외협상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산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WTO/DDA 협상대책단”**을 지난 1999년부터 운영하면서 협상전략의 투명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수산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

수산보조금은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

* 이후 FTA 추진이 본격화 됨에 따라 “WTO/FTA 협상대책단”으로 강화

하여 DDA 타결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U, 일본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긴밀히 공조하는 것 외에도 공조세력을 다변화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뉴질랜드 등 입장이 반대되는 국가는 개별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이 협상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협상 진전상황을 보아가며 수산보조금 지원의 틀을 WTO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어업구조조정, 고효율 연료장비 개발 등을 통하여 우리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수산물 관세협상에서는 신축성 확보에 전력할 계획이다. DDA 협상체계상 수산물 관세와 공산품 관세가 같이 논의된다.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목표는 공산품 수출 확대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협상을 펼쳐는 동시에 취약한 수산분야를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우리나라는 NAMA에서 선진국에 상응하는 기여(선진국 관세감축 계수 사용)를 할 용의가 있는만큼 일부 민감한 수산물에는 신축성(낮은 수준의 관세감축을 적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일부 민감한 수산물에 신축성이 부여될 경우 관세감축 폭이 작아져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는 수산물 무세화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예정이다.

2.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방안

가. FTA 추진동향

WTO-DDA 타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지속적인 확산추세이다. 현재 약 211개(2008. 6월)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 및 발효된 것으로 WTO에 통보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WTO 출범(1985년) 이후 체결되었으며, 세계 총 무역 중 지역협정 내 무역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 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8년 8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 (상품)과의 FTA 협정이 발효되었고 미국과의 FTA는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EU, 캐나다, 인도, GCC(걸프협력회의), 멕시코 등 5개 경제권과 정부간 FTA 협상이, 중국과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2008년 중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정부간 예비협약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3년 개시된 일본과의 FTA는 농수산물 개방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나. 한-미 FTA 수산분야 협상내용

한·미 FTA는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8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쳐 2007년 4월 최종 타결되었다. 수산분야 협상에서는 명태, 민어, 고등어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하여 최장 15년까지 이행기간 부여와 TRQ 도입을 통해 민감성을 반영하였고,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참치 통조림(35%)에 대한 단계적인 관세철폐와 양식산 활넙치 체장제한을 해제하는 등 향후 수출 확대의 길을 열었다.

다. FTA 대응방안

FTA를 통해 관세가 인하되면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최근 고유가 및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할 경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 증가시 국내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등 보호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FTA는 또한 수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도 제공한다. 현재 협상이 중단된 일본은 우리 수산물 수출시장의 60%를 점유하는데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수입 쿼타(IQ) 및 과도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여 우리 수산물 수출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제 2 절 국제 수산기구 및 양국간 협력 강화

1. 국제수산기구 협력*

2008년도에는 해외식량자원의 지속적 확보차원에서 수산자원외교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수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남태평양과 북태평양에서 신규로 설립중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UN 및 FAO 등의 어업관련 국제규범 논의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자원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유엔공해 어업협정에 2008년 3월 2일자로 가입함에 따라 미가입기구인 남동대서양수산기구 및 남인도양수산협정의 조속한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참치어장인 중서부태평양에서 지속적인 참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5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 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자원보존관리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협상대책단을 중심으로 관련 조업국 및 연안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할 계획이다.

또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중서부태평양 참치자원보호를 위한 연구기금을 2009년도부터 5개년간 10억 원을 기여함으로써 책임있는 어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등 참치관련 5개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적정 어획쿼타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각종 어업관리제도의 수립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원양업계의 이해가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며,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채택한 각종 어업관리조치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관련업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UN, FAO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의 저층어업관련 규제논의에 적극 대처하여 기존 조업중인 우리나라 어선이 해산 등에서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국제수산기구회의를 국내에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기여하는 어업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나갈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회의,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를 유치할 계획이다.

2. 양국간 어업협력 강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연근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선의 조업수역 확보를 위한 대외 어업협력 확대를 경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일, 한·중, 한·러 어업협정의 안정적인 이행을 통해 적정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함과 아울러 조업수역 등 조업조건 개선에 적극 추진하고, 한·중·일 3국간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원양어선의 주요 입어국인 러시아, 중서부태평양 제도서국, 서부 아프리카 연안국 등에 대해서는 고위급 수산당국자의 초청, 수산과학·기술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통해 전통적인 어업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킴과 아울러, 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양수산분야에 특화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도에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연안국에 대해 3억 5천만 원 상당의 물자를 공여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가. 한·일 어업협정*

한·일 양국은 2007년 12월 13일 한국에서 「제10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양국 EEZ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를 1,000척, 60,000톤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2008년도 총 어획할당량은 양국이 각각 지난 해 보다 500톤씩 감소하였으나 우리의 주력업종인 연승, 중형기선저인망, 선망, 오징어채낚기, 콩치붕수망어업은 전년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축소로 조정하고, 반면 비주력 업종인 대형기저, 외출낚시, 북어채낚기 등을 축소 조정하여 우리의 실익을 도모하였다.

한편, 일본은 조업금지기간 및 조업금지수역 확대와 어구부설규제 도입 등 조업규제를 대폭 제안하였으나 양국 어업협력 측면을 강조하여 새로운 추가 조업 규제 없이 조업조건은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조업하게 되었고, 연말~연초에 걸쳐 계속 조업하는 어선의 조업편의를 위해 2008년 2월 15일까지는 2007년도 조업일지를 계속 사용토록 하여 새로운 조업일지 사용을 위해 조업중 귀항 또는 조업중인 어선에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 중 2009년의 어획할당에 관련된 것의 어획동향자료, 자원상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어선간 안전 조업질서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어선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자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지원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향후 어업교섭 대책으로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어획할당 대상어종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지 않도록 하고, 업종별 조업실태 조사결과와 관련 어업인·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력업종(어종) 위주의 입어교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표 111〉 2008년 한·일 양국 EEZ 입어동향

(단위 : 척, 톤, %, 2008년 7월 말 기준)

구 분	합 의 사 항		어 획 실 적		
	척 수	할당량	척 수	어획량	소진율
한국어선	1,000	60,000	561	4,952	8.3
일본어선	1,000	60,000	120	2,718	4.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나. 한·중 어업협정

한중 양국은 2008년도 EEZ 내 상대국 어선의 어획할당량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하여 2007년 12월 7일 중국에서 제7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담에서 우리어선의 중국EEZ 입어규모는 1,600척 68,000톤으로 전년수준을 유지하였고, 중국어선은 금년보다 58척 930톤이 감축된 1,859척 71,000톤으로 확정하였다.

특히, 감축대상 어선 58척중 어획강도가 큰 타망어선 44척을 감축함으로써 중국어선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한중어업공동위원회는 업종별, 어종별 어획할당제 도입시기 및 추진 방법을 2008년 12월 제8차 어공위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중국측은 우리측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제도운영 실태를 시찰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어업자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측의 조사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공동자원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중국어선의 어획생산량 축소보고 차단을 위해 운반선에 대하여도 어획물 전재량을 일일보고토록 하고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이중이상의 자망어구의 적재 및 사용을 제한하고 쌍타망 어선의 이중이상 자루그물 사용을 단속하기로 중국

측과 합의하였다.

또한, 서해특정금지구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에 관한 영상자료를 중국측에 제공함으로써 동 수역에 대한 불법어업 실태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어업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촉진하기로 하고 양국어업지도단속공무원의 상호승선 교류 및 어업지도단속 공무원의 상호방문을 통해 조업질서 확립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112〉 2008년 한·중 양국 EEZ 입어동향

(단위 : 척, 톤, %, 2008년 6월 말 기준)

구 분	합 의 사 항		어 획 실 적		
	척 수	할당량	척 수	어획량	소진율
한국어선	1,600	68,000	166	4,215	6.2
중국어선	1,859	71,000	1,033	9,058	12.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다. 한·러 어업협정*

한·러 양국은 2008년도 어획쿼터 할당 및 입어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에서 제17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명태 20,500톤, 오징어 7,000톤, 대구 2,650톤, 꽁치 5,000톤, 가오리 800톤, 청어 250톤, 복어 115톤 등 총 36,615톤의 쿼터를 확보하였다.

러시아 측은 자국 EEZ의 어업자원 보호를 위하여 매년 총 허용어획량을 감축하고, 외국정부에 할당해온 정부쿼터를 축소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명태쿼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04년도 양국 정상간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어선의 안정적인 쿼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는 한편, 양국간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과학기술협력을 통하여 공동으로 오호츠크명태 자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조업규제소위원회 및 수산물 불법교역협정 체결 등 어업위원회시 우리어선의 조업과 연계하여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8년 중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예정인 제18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내년도 어획쿼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며, 민간차원의 어업협력 사업도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113〉 2008년 러시아 EEZ 조업 계획 (단위 : 톤, 척)

어종별	조업수역	쿼 터	조업기간	조업척수	어 구
합 계		36,615		166척	
명 태	북서베링해	20,500	1. 1~2. 28, 5. 16~12. 31	12척	중층트롤
대 구		75			
청 어		250			
대 구	북서베링해	2,575	4. 10~11. 30	4척	저 연 승
가 오 리		800			
가 자 미		300			
꽁 치	남쿠릴	5,000	7. 15~10. 20	18척	봉 수 망
오 징 어	연해주	7,000	5. 1~10. 31	132척	채 낚 기
복 어		11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제 3 절 남북수산협력 사업 추진*

남과 북은 2007년 8월 5일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2007년 10월 2일~4일간 남측의 노무현대통령과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2000년 6월 제1차 남북정상급회담 이후 개최되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으로 그동안 남과 북이 추진하여온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수산협력사업은 2005년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개최시 서해공동어로 등 5개 항목에 합의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서해 NLL 문제 및 북핵문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금번 정상회담 이후 남북수산당국간 협력을 통해 제2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가 개최되면 우리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입어조업 및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 수산분야 기술교류, 제3국 어장 공동 진출 등 다양한 남북수산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중인 다양한 남북수산협력 사업(안)과 관련하여 남북수산협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수산협력포럼을 금강산 등에서 4차례 개최하였으며 북한전문가 및 지역 어민들과의 정보교류와 의견수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향후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 개최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남북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하여 나갈 계획이다.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제 4 절 원양어업 육성*

1.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2006년 8월 9일에 마련한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원양어업의 원양산업화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2007년에는 원양어업 경영구조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제정시행,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 관련사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원양산업 진출국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 명예 해양수산물 운영 추진계획 등 수립으로 원양어업 50주년인 2007년에는 원양어업을 원양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2008년에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원양어업 기반구축 및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나갈 계획이다.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가. 북양트롤

북양트롤어업은 명태를 주 포획대상으로 러시아 EEZ에서 조업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명태자원의 감소와 자국어업인 보호를 이유로 전체 TAC와 외국 쿼터배정량을 축소하고 있고, 위성자동위치발신기 부착·치어보호망 부착·옵서버 승선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러시아 측은 2001년부터 민간간 협의에 의해 확보해 오던 민간쿼터를 자국민에게 우선 입찰을 실시하고, 잔여 량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에게 입찰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입찰제”로 제도를 변경하여, 민간쿼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2004년부터 쿼터배정방식을 “국제입찰방식”에서 자국 업체별로 과거 조업실적 등을 기준으로 5년간 고정된 “산업쿼터”를 배정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이 러시아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정부간 협정에 의한 조업쿼터 확보가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정부간 명태쿼터 20,500톤을 확보하고, 2005. 9월 6,000톤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26,004톤을 소진(98%)하였고, 2006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는 정부간 명태쿼터 20,500톤을 확보하고, 2006년 11월 5,125톤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25,625톤을 전량 소진하였다.

2007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17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정부간 명태 등 어획 쿼터 34,115톤을 확보하였고 2008년 12월말까지 최종 31,146톤(91.3%)를 소진하였다.

따라서, 금후 명태 트롤어업의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양국 고위급 회담을 통한 수산외교를 강화하여 어업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2008년 12월 제18차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하여 우리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에 필요한 정부쿼터를 확보하는 한편, 러시아와 외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라 쿼터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교섭할 계획이다.

또한 합작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러시아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고, 러시아의 일방적 조업규제에 대한 우리 조업선 보호를 위해 조업규제 소위원회에서 조업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민간협력사업 및 수산과학기술 분야 교류확대 등 양국의 어업협력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해외트롤어업

뉴질랜드수역과 인도네시아수역을 중심으로 조업중인 태평양 트롤어업은

최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정책에 따라 어업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기존어장의 지속적 유지확보와 병행하여 남태평양 동부 공해 “전쟁이” 어장 개발 등 새로운 어장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부아프리카 및 앙골라수역, 남서대서양공해 및 포클랜드수역에 조업 중인 대서양 트롤어업은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업협정 체결 등을 통한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3. 원양업체 경영 지원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원양어업의 경영안정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74년부터 원양 출어경비 일부를 영어자금에서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연근해어업과 달리 원양어업에서만 특별히 소요되는 입어료, 항만 제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인 ‘해외자원생산 지원자금(2004년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명칭 변경)’을 신설하였으며,

원양어업 출어자금 운용규모는 2005년 및 2006년도에는 2,130억 원(원양어업 경영자금 1,480, 영어자금 650)이었으나, 2007년 및 2008년에는 150억 원 증가한 2,280억 원(원양어업경영자금 1,480, 영어자금 800)을 원양어업 출어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4.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2007년 말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 387척 중 21년 이상 노후선이 263척으로 노후선 비중이 68%에 이르고 있고, 선박 노후화는 경영비 상승은 물론 냉동능력 저하에 따른 어획물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제품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양어업중 참치어업은 횡감용 및 가공용 참치를 주로 태평양 중서부수역에서

연간 약 30만여 톤을 생산하여 원양어획물 수출액의 51%를 점하고 있는 수출 주력업종이며, 또한 참치류의 자원은 대체로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등 조업여건이 타 업종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

위와 같이 원양어업 중 경쟁력이 있고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참치어업을 주력업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수산 발전기금에서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 사업비를 반영하여 2004년도에는 115억 원 사업비로 선망어선 1척을 건조하고 2006년도에는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49억 원을 확보하여 선망어선 1척을 건조하였다.

동 사업의 추진으로 향후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어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 및 폐지 이전에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07년도에는 최근 유가급등 등에 따라 원양업계의 채산성 악화로 대규모 건조 사업의 수요가 미흡하여 참치연승 중고선 대체 자금(1척, 8억 원)을 지원하고 2008년도에는 중고선 도입자금 24억 원(3척)을 지원 할 계획이다.

5. 해외 신 어장 개발

최근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정책과 공해 조업규제 등 국제 어업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21세기 들어 공해 수산자원 관리는 공해자유의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역 수산기구의 분할 관리시대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에서 지속적인 원양어업을 유지하고, 공해어장에 대한 장기적인 이용을 위하여 해외어장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제 질서에 부합된 환경친화적인 어구·어법개발, 첨단장비를 통한 정확한 자원량 파악 등 종합적인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8년도 자원조사는 2개 수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수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및 예비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자원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현지 공관을 통한 주요연안국과 입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전 어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어장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 5 절 수산물 수출 진흥 및 수입관리*

1. 수산물 수출 진흥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WTO 체제의 출범 이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17억\$ 내외의 수출실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 수출 효자산업의 역할을 해 왔으나 1997년도 7월 1일 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된 이후부터는 수출실적이 점차 감소하여 2001년부터 무역수지적자로 전환된 이래 현재까지 매년 12억\$ 내외의 수출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는 WTO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 국제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수출용 원자재의 부족, 수산인력의 감소 및 인건비 상승, 국내수산물 소비의 증가 등 국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유가 및 환율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 국가와 일본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수산물 수출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와 세계수산물 수출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산물 수출 진흥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의 근본적인 수출정책 도입 및 투자확대보다는 단편적인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에 그쳐 수출신장에 한계를 보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내외적인 수출여건을 극복하고 WTO 및 FTA 협정 등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을 기회로 삼아 수산물 수출 진흥을 통한 잘사는 수산업·어촌을 실현하고자 2016년까지 수산물 수출 20억\$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수산물 수출 진흥종합대책을 수립(2006년 12월)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동 대책은 「현장 맞춤형 수산물류무역 인프라 확충」, 「수산물 가공·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마케팅전략 강화로 해외시장 저변 확대」,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수출 촉진」, 「수출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활성화」 등 5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각 과제별 이행과제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된다.

2008년도에는 현장 맞춤형 수산물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전남해역에서 다량 생산되는 전복의 원활한 유통 및 수출촉진을 위해 저장-선별-포장까지 일관 처리하는 수출용 전복 물류센터(3개소/15억 원) 건립을 추진하고, 대미 활넙치 수출증대를 위한 물류비 절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물 가공·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수출주력업체 등에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한 우수수산물 수출 지원자금 1,366억 원을 융자하고, 수출 주력 상품인 김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 김(물김, 마른 김) 이물질 선별기(34대) 및 금속 탐지기(30대) 설치를 지원하며, 우수 수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위한 수출수산물 물류비 지원방안 및 원가산정에 관한 용역도 실시된다.

아울러 해외시장 마케팅 전략 강화를 위하여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확대(8개소 → 11개소)와 함께 Road Show 등 별도의 기획 마케팅 활동을 전개(청도, 상해, 대만)하고, 주요 타깃시장의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우수 수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출상품 카탈로그(KOREA EXPORT SEAFOOD) 제작·배부(5,000부), 다양한 홍보매체(신문, 공항광고, 기내잡지, 박람회 가이드북 등)를 활용한 직간접 광고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수출최대시장인 일본에 대한 수출확대 추진과 한·일간 무역현안 해소를 위한 「한·일 무역실무회의」도 개최한다.

한편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보고 농유공 및 무역협회 등 해외 지사 주재

원을 「명예 수산통상 협력관」으로 위촉(12명), 체계적인 해외시장 정보조사를 실시하여 정책고객에게 제공하고, 수출 주력품목 및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상호 수출정보 교환 및 수출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품목별 수출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학계·연구기관·지자체·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수산물 수출정책 협의를 위한 「수산물 수출 진흥회의」를 설치·운영(반기 1회)한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중장기 수산물 수출 진흥 종합대책에 의한 정책 로드맵 및 투자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수출 1억불 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수산물 수출확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합리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2007년도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TRQ)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TRQ물량의 수입권공매 절차를 통하여 공매납입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TRQ품목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함으로써 교역당사국간의 안정적인 수산물 통상협력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되는 수산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K)를 정비하고, 수입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정관세의 적절한 운용으로 국제교역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계획이다.

국내 수산물수출업체 및 유관관련자에게 수출입통계를 월별로 제공하여 수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수산통계행정을 통한 수산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수산물은 품명, 품질, 생산시기 등에 따른 규격차이로 가격이 다양한 것을 구실로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수산물의 품명

규격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여 2005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활홍민어·복어·조미오징어 등 수산물 45개 품목에 대한 품명규격 표준화를 완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질물품의 가격비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수입수산물의 저가신고 근절을 위해 저가신고 우려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정보 조사, 저가신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명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계로 본 수산업 동향

1. 어 업 가 구
2. 어 가 인 구
3. 어 업 종 사 가 구 원
4. 연 도 별 어 업 생 산 량
5. 어 업 인 후 계 자 육 성 현 황
6. 원양어업 어종별 연도별 수출추이
7. 수 산 물 검 사 실 적
8. 주 요 국 가 별 수 산 물 수 출 입 현 황
9. 수 산 물 유 통 시 설 현 황
10. 수 산 물 도 매 시 장 거 래 물 량
11. 수 산 물 도 매 시 장 거 래 현 황
12. 수 산 물 수 급 현 황
13. 연도별 수산물 가공생산 및 지원현황
14. 어 업 권 현 황
15. 불 법 어 업 단 속 실 적
16. 어 항 건 설 추 진 현 황
17. 지 방 어 항 현 황
18. 어촌어항관광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
19. 연 도 별 어 선 세 력
20. 어 가 소 득
21. 어 가 부 채

1. 어업가구

1-1. 연도별 어업가구

(단위 : 가구,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어업가구	81,571	77,717	73,124	72,760	72,513	79,942	77,001	73,934
증감률	-16.6	-4.7	-5.9	-0.5	-0.3	10.2	-3.7	-4.0

1-2. 전겸업별 ·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단위 : 가구, %)

		2006		2007		전년 대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률
어업가구		77,001	100.0	73,934	100	-3,067	-4.0
전겸업별	전업	23,932	31.1	22,407	30.3	-1,526	-6.4
	1종겸업	26,962	35.0	25,203	34.1	-1,759	-6.5
	2종겸업	26,106	33.9	26,324	35.6	218	0.8
어업 형태별	어선비사용	16,924	22.0	15,886	21.5	-1,038	-6.1
	어선사용	36,088	46.9	34,691	46.9	-1,397	-3.9
	양식어업	23,989	31.2	23,356	31.6	-632	-2.6

1-3.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단위 : 가구, %)

	총어가	양식어업	어 로 어 업		
			소 계	어선사용	어선비사용
70	149,107 (100.0)	45,037 (30.2)	104,070 (69.8)	33,784 (22.7)	70,286 ¹⁾ (47.1)
80	134,109 (100.0)	55,902 (41.7)	78,207 (58.3)	31,844 (23.7)	46,363 ¹⁾ (34.6)
90	121,525 (100.0)	49,727 (40.9)	71,798 (59.1)	39,170 (32.3)	32,628 ¹⁾ (26.8)
95	104,480 (100.0)	34,009 (32.6)	70,471 (67.4)	37,109 (35.5)	33,362 ¹⁾ (31.9)
00	81,571 (100.0)	24,810 (30.4)	56,761 (69.6)	38,968 (47.8)	17,793 (21.8)
05	79,942 (100.0)	24,075 (30.1)	55,867 (69.9)	36,733 (46.0)	19,134 (23.9)
06	77,001 (100.0)	23,989 (31.2)	53,012 (68.8)	36,088 (46.9)	16,924 (22.0)
07	73,934 (100.0)	23,356 (31.6)	50,577 (68.4)	34,691 (40.9)	15,886 (21.5)

자료 : 어업총조사 및 어업기본통계조사(통계청)

주 : 1) 남의 어선 승선가구가 '95년까지는 어선 비사용 가구에 포함되었으나, '00년부터는 어선 사용가구에 포함되었음

1-4. 시도별 어업가구

(단위 : 가구, %)

	2006		2007		전년 대비	
		구성비		구성비	증 감	증감률
전 국	77,001	100.0	73,934	100.0	-3,067	-4.0
부 산	3,014	3.9	2,818	3.8	-196	-6.5
인 천	3,135	4.1	2,885	3.9	-250	-8.0
울 산	1,136	1.5	1,123	1.5	-13	-1.1
경 기	1,558	2.0	1,484	2.0	-74	-4.7
강 원	4,358	5.7	4,237	5.7	-121	-2.8
충 남	9,992	13.0	10,094	13.7	101	1.0
전 북	3,984	5.2	3,568	4.8	-416	-10.4
전 남	23,935	31.1	22,939	31.0	-996	-4.2
경 북	5,316	6.9	5,173	7.0	-143	-2.7
경 남	13,631	17.7	12,567	17.0	-1,064	-7.8
제 주	6,942	9.0	7,046	9.5	104	1.5

1-5. 보유어선 톤수별 어가 현황

(단위 : 가구, %)

	총어가	어선 없는 어가	보유어선 톤수별						
			소계	2톤 미만	2~ 5톤	5~ 10톤	10~ 20톤	20~ 50톤	50톤 이상
90	121,525 (100.0)	52,077 (42.9)	69,448 (57.1)	46,638 (38.4)	15,665 (12.9)	3,719 (3.1)	1,324 (1.1)	1,015 (0.8)	1,087 (0.8)
95	104,480 (100.0)	47,864 (45.8)	56,616 (54.2)	33,465 (32.0)	15,448 (14.8)	4,672 (4.5)	1,062 (1.0)	1,008 (1.0)	961 (0.9)
00	81,571 (100.0)	34,387 (42.2)	47,184 (57.8)	25,032 (30.7)	14,916 (18.3)	4,845 (5.9)	1,045 (1.3)	746 (0.9)	600 (0.7)
05	79,942 (100.0)	34,857 (43.6)	52,048 (65.1)	29,753 (37.2)	14,869 (18.6)	5,364 (6.7)	669 (0.8)	835 (1.1)	558 (0.7)
06	77,001 (100.0)	31,465 (40.9)	45,536 (59.1)	25,770 (33.5)	12,687 (16.5)	4,792 (6.2)	773 (1.0)	919 (1.2)	595 (0.8)
07	73,934 (100.0)	30,345 (41)	43,589 (59)	25,180 (34.1)	11,720 (15.9)	4,575 (6.2)	699 (0.9)	817 (1.1)	598 (0.8)

자료 : 어업총조사 및 어업기본통계조사(통계청)

2. 어가인구

2-1. 연도별 어가인구

(단위 :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어가인구	251,349	234,434	215,174	212,104	209,855	221,132	211,610	201,512
증감률	-20.3	-6.7	-8.2	-1.4	-1.1	5.4	-4.3	-4.8
호당평균	3.1	3.0	2.9	2.9	2.9	2.8	2.7	2.7

2-2. 성별·연령별 어가인구

(단위 : 명, %)

		2006		2007		전년대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률
어가인구		211,610	100.0	201,512	100.0	-10,098	-4.8
성 별	남자	106,340	50.3	100,985	50.1	-5,355	-5.0
	여자	105,270	49.7	100,527	49.9	-4,743	-4.5
연 령 별	15세미만	22,261	10.5	20,293	10.1	-1,968	-8.8
	15-19	8,852	4.2	8,457	4.2	-395	-4.5
	20-29	17,498	8.3	15,030	7.5	-2,468	-14.1
	30-39	16,426	7.8	15,251	7.6	-1,175	-7.2
	40-49	35,820	16.9	32,717	16.2	-3,103	-8.7
	50-59	46,558	22.0	45,027	22.3	-1,531	-3.3
	60-69	40,501	19.1	40,363	20.0	-138	-0.3
	70세이상	23,693	11.2	24,373	12.1	680	2.9
	65세이상	42,769	20.2	44,467	22.1	1,697	4.0

2-3. 시·도별 어가인구

(단위 : 명, %)

	2006		2007		전년 대비	
		구성비		구성비	증 감	증감률
전 국	211,610	100.0	201,512	100.0	-10,098	-4.8
부 산	9,794	4.6	9,061	4.5	-733	-7.5
인 천	8,478	4.0	7,861	3.9	-617	-7.3
울 산	3,424	1.6	3,331	1.7	-93	-2.7
경 기	4,740	2.2	4,529	2.2	-211	-4.5
강 원	13,021	6.2	12,201	6.1	-820	-6.3
충 남	26,898	12.7	26,943	13.4	45	0.2
전 북	11,494	5.4	10,364	5.1	-1,130	-9.8
전 남	64,610	30.5	61,843	30.7	-2,767	-4.3
경 북	14,369	6.8	13,886	6.9	-483	-3.4
경 남	35,393	16.7	32,307	16.0	-3,086	-8.7
제 주	19,388	9.2	19,186	9.5	-202	-1.0

3. 어업종사가구원

3-1. 연도별

(단위 : 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어업종사 가구원	139,837	136,869	127,694	125,023	122,384	130,589	128,048	122,916
증감률	-18.0	-2.1	-6.7	-2.1	-2.1	6.7	-1.9	-4.0
호당평균	1.7	1.8	1.7	1.7	1.7	1.6	1.7	1.7

3-2. 성별·연령별 어업종사가구원

(단위 : 명, %)

		2006		2007		전년대비	
			구성비		구성비	증감	증감률
어업종사가구원		128,048	100.0	122,916	100.0	-5,131	-4.0
성 별	남자	68,244	53.3	65,520	53.3	-2,724	-4.0
	여자	59,803	46.7	57,396	46.7	-2,407	-4.0
연 령 별	15-19세	134	0.1	130	0.1	-4	-2.7
	20-29	2,910	2.3	2,277	1.9	-633	-21.8
	30-39	8,396	6.6	7,698	6.3	-699	-8.3
	40-49	29,250	22.8	26,543	21.6	-2,707	-9.3
	50-59	40,580	31.7	38,877	31.6	-1,704	-4.2
	60-69	34,102	26.6	34,215	27.8	112	0.3
	70세이상	12,675	9.9	13,178	10.7	502	4.0
	65세이상	28,363	22.2	29,744	24.2	1,381	-4.9

3-3. 어업종사가구원

(단위 : 명, %)

	2006		2007		전 년 대 비	
		구성비		구성비	증 감	증감률
전 국	128,048	100.0	122,916	100.0	-5,131	-4.0
부 산	4,709	3.7	4,235	3.4	-474	-10.1
인 천	5,035	3.9	4,663	3.8	-372	-7.4
울 산	1,618	1.3	1,625	1.3	7	0.4
경 기	2,557	2.0	2,322	1.9	-235	-9.2
강 원	5,784	4.5	5,396	4.4	-388	-6.7
충 남	18,227	14.2	18,056	14.7	-171	-0.9
전 북	7,202	5.6	6,524	5.3	-678	-9.4
전 남	44,853	35.0	43,894	35.7	-959	-2.1
경 북	7,835	6.1	7,741	6.3	-94	-1.2
경 남	21,895	17.1	20,197	16.4	-1,698	-7.8
제 주	8,334	6.5	8,264	6.7	-70	-0.8

4. 연도별 어업생산량

(단위 : 천M/T, 억원)

	합 계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90	3,198	24,182	1,472	14,162	773	4,199	919	4,913	34	908
95	3,348	37,963	1,425	24,794	996	6,481	897	5,260	29	1,429
00	2,514	40,664	1,189	23,295	653	6,839	651	9,297	21	1,234
01	2,665	42,529	1,252	24,683	656	7,172	739	9,641	18	1,033
02	2,476	42,052	1,096	24,870	782	7,945	580	8,094	19	1,143
03	2,487	47,708	1,097	24,058	826	11,657	545	10,726	20	1,267
04	2,519	47,313	1,077	26,097	918	12,171	499	7,373	25	1,672
05	2,714	50,493	1,097	27,060	1,041	13,484	552	8,192	24	1,757
06	3,032	52,859	1,109	27,513	1,259	14,432	639	8,910	25	2,004
07	3,275	57,516	1,152	29,391	1,386	15,993	710	9,901	27	2,231

자료 :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통계청

4-1. 연근해 주요 어업별 생산량

(단위 : 천M/T)

	계	대형 기저	근해 트롤	중형 기저	대형 선망	기선 권현 망	근해 채낚 기	안강 망	연승	통발	정치 망	잠수 기	기타
90	1,472	121	173	61	359	86	51	244	33	40	16	22	266
94	1,486	121	81	41	311	118	88	221	34	76	53	17	325
95	1,425	128	104	26	228	140	94	174	33	77	65	17	339
96	1,624	124	128	34	453	122	107	151	32	76	84	17	296
97	1,367	115	152	29	184	128	97	147	32	76	86	22	299
98	1,308	123	109	23	205	119	71	159	34	61	56	17	331
99	1,334	118	141	16	230	94	92	130	33	51	69	18	342
00	1,189	106	132	15	180	75	81	102	38	44	69	14	333
01	1,252	97	160	11	232	98	75	95	32	41	72	13	326
02	1,096	89	142	16	182	90	73	85	30	51	39	11	288
03	1,097	69	144	22	159	134	74	70	15	54	49	11	296
04	1,077	78	124	18	231	105	67	64	11	54	37	11	277
05	1,097	86	102	22	192	132	63	43	15	61	49	12	320
06	1,109	96	108	24	168	143	66	48	16	64	45	11	320
07	1,152	76	99	29	236	108	63	73	17	75	40	12	324

자료 :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통계청

5. 어업인 후계자 육성현황

5-1. 연도별

(단위 : 명, 백만원)

	합 계		일반후계자		전업어가		선도어업경영체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7,456	412,375	14,891	277,038	2,503	130,010	51	5,325
81~01	14,147	303,980	12,317	206,403	1,788	94,150	31	3,425
02	732	21,870	581	14,310	151	7,560	-	-
03	673	20,500	534	13,500	139	7,000	-	-
04	477	14,350	379	9,450	98	4,900	-	-
05	526	18,350	399	11,950	127	6,400	-	-
06	437	15,350	328	9,450	98	4,900	11	1,000
07	464	17,975	353	11,975	102	5,100	9	900

자료 : 수산정책관 어선인력과

※여성후계자(790명) 비율은 5%에 불과함

5-2. 업종별(07)

(단위 : 명, 백만원)

	합 계		일반후계자		전업어가		선도어업경영체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17,456 (100%)	412,375	14,892 (100%)	277,038	2,503 (100%)	130,012	61 (100%)	5,325
어선 어업	9,086 (52%)	206,391	7,984 (54%)	148,362	1,102 (44%)	58,029	-	-
증양식 어업	7,757 (44%)	186,965	6,466 (43%)	118,833	1,236 (49%)	63,387	55 (90%)	4,745
수산 가공업	613 (4%)	19,019	442 (3%)	9,843	165 (7%)	8,596	6 (10%)	580

자료 : 수산정책관 어선인력과

5-3. 시·도별(07)

(단위 : 명, 백만원)

	합 계		일반후계자		전업어가		선도어업경영체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7,456	412,375	14,892	277,038	2,503	130,012	61	5,325
부 산	365	7,813	327	5,523	38	2,290	-	-
인 천	502	12,262	398	7,062	104	5,200	-	-
대 전	1	30	1	30	-	-	-	-
울 산	166	5,034	127	2,994	39	2,040	-	-
경 기	298	7,070	254	4,830	44	2,240	-	-
강 원	1,163	30,866	959	19,571	199	10,930	5	365
충 북	96	3,110	66	1,258	30	1,852	-	-
충 남	1,386	33,895	1,154	21,695	232	12,200	-	-
전 북	904	22,568	753	14,363	144	7,600	7	605
전 남	7,243	166,128	6,255	114,823	963	49,000	25	2,305
경 북	1,019	25,987	845	16,832	164	8,330	10	825
경 남	3,321	71,539	2,911	50,524	399	20,070	11	945
제 주	992	26,073	842	17,533	147	8,260	3	280

자료 : 수산정책관 어선인력과

6. 원양어업 어종별 연도별 수출추이

(단위 : 천\$)

	계	참치류	명태	오징어	저서어류	기 타
60	153	153	-	-	-	-
70	38,008	35,694	-	-	-	2,314
80	351,865	196,581	24,209	-	-	131,075
90	516,880	329,357	45,314	14,315	-	127,894
95	539,513	298,382	88,964	45,961	29,804	76,402
98	529,540	318,934	48,798	24,655	35,674	101,479
99	429,325	292,124	32,972	16,189	37,583	50,457
00	538,972	350,723	39,417	39,340	52,318	57,174
01	389,688	273,165	24,208	28,474	42,241	21,600
02	414,478	278,377	20,111	23,237	58,047	34,706
03	365,422	231,500	9,405	39,304	72,958	12,255
04	395,534	260,744	3,221	54,230	67,854	9,485
05	380,162	232,072	981	59,164	72,178	15,767
06	410,424	282,007	4,795	23,422	84,140	16,060
07	471,041	239,894	-	66,371	112,873	61,903

자료 : 국제수산물 원양산업과

7. 수산물 검사 실적

7-1. 수입

(단위 : 건, 톤, 천\$)

	검 사 실 적			부 적 합 실 적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건수비(%)
97	23,532	333,973	885,924	258	2,362	6,345	1.1
98	17,570	249,033	436,614	90	584	1,299	0.5
99	37,608	505,709	961,179	280	1,957	4,282	0.7
00	49,156	514,761	1,186,262	341	2,433	6,054	0.7
01	59,142	682,232	1,402,141	414	2,899	8,668	0.7
02	74,973	853,107	1,602,168	359	2,329	5,314	0.5
03	80,039	930,387	1,648,907	335	3,011	7,381	0.4
04	95,695	1,010,125	1,932,892	410	4,128	10,166	0.4
05	96,112	932,085	1,939,045	292	1,559	5,685	0.3
06	101,442	1,059,367	2,424,280	376	2,013	9,206	0.4
07	100,342	1,082,374	2,631,824	536	3,660	14,697	0.5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

7-2. 수출

(단위 : 건, 톤, 천\$)

	검 사 실 적			부 적 합 실 적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건수비(%)
97	2,488	81,731	186,906	-	-	-	-
98	6,607	87,607	231,743	-	-	-	-
99	7,177	88,737	187,025	6	12	221	0.1
00	8,408	132,854	258,026	15	106	984	0.2
01	8,928	118,598	329,402	15	24	298	0.2
02	9,592	124,947	258,476	53	172	1,530	0.6
03	8,973	95,744	273,983	27	68	896	0.3
04	9,551	103,785	311,249	23	78	909	0.2
05	11,761	128,770	379,720	87	413	4,303	0.7
06	13,421	143,042	468,442	390	1,618	18,686	2.9
07	12,231	254,922	537,636	245	3,578	30,415	2.0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

8. 주요국가별 수산물 수출입현황

(2007년 기준 순위별, 단위 : 천\$)

		합계	일본	미국	중국	태국	뉴질랜드	베트남
02	수출	1,160,435	823,117	77,625	48,345	34,492	21,167	1,279
	수입	1,884,417	146,497	173,774	719,314	84,737	10,638	121,733
03	수출	1,129,385	740,447	80,385	70,769	38,354	30,487	3,162
	수입	1,961,145	148,699	152,677	713,538	95,616	9,607	129,878
04	수출	1,278,638	834,649	81,130	124,102	37,565	44,544	4,885
	수입	2,261,356	180,620	136,225	909,536	106,521	11,528	143,525
05	수출	1,193,117	741,062	88,174	108,031	57,383	60,478	4,570
	수입	2,383,574	173,140	152,555	936,351	125,147	17,211	163,642
06	수출	1,088,948	659,523	95,613	75,414	61,688	39,383	5,194
	수입	2,769,348	224,311	150,544	1,034,192	144,463	18,097	206,482
07	수출	1,225,832	572,908	156,565	98,876	87,678	68,293	8,812
	수입	3,056,368	273,477	1,070,862	144,242	149,270	18,742	267,964

자료 : 국제수산물 원양산업과

9. 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위판장(연안)	위판장(내륙)	직매장	수산물도매시장
01	199	7	17	15
02	179	7	21	15
03	177	8	23	15
04	174	8	27	15
05	172	8	38	16
06	174	8	41	16
07	180	8	49	16

자료 :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10.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물량

(단위 : 톤)

	계	가락동시장	노량진시장	구리시장	안양시장	기타시장
90	353,780	155,436	172,044	-	-	26,300
95	389,772	192,573	132,491	-	-	64,708
96	389,470	185,955	142,397	-	-	61,118
97	459,679	183,514	140,296	49,059	19,691	67,119
98	445,956	162,858	127,673	69,988	12,712	72,725
99	406,253	148,287	116,698	64,284	11,604	65,380
00	409,006	148,491	118,732	71,013	12,981	57,789
01	421,424	145,732	116,951	69,345	13,724	75,672
02	379,586	127,044	108,381	64,073	14,609	65,479
03	379,197	125,685	105,200	58,776	16,250	73,286
04	385,851	123,928	102,191	59,847	18,481	81,404
05	384,547	121,152	98,102	60,447	18,878	85,968
06	382,049	124,311	98,300	55,571	13,542	90,325
07	382,373	122,530	101,049	56,151	12,061	90,582

자료 :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11.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현황

11-1. 도매시장별 거래물량

(단위 : 톤)

	계	가락동시장	노량진시장	구리시장	안양시장	기타시장
90	462,044	248,964	182,570	-	-	30,510
95	814,113	399,115	286,644	-	-	128,354
96	807,664	395,509	300,140	-	-	112,015
97	881,058	377,895	295,142	62,762	13,998	131,261
98	894,996	352,888	281,397	91,081	25,542	144,088
99	886,783	347,596	282,605	90,853	27,620	138,109
00	901,355	365,375	277,024	114,383	24,936	119,637
01	1,052,979	408,653	305,364	129,265	32,819	176,878
02	1,024,534	390,939	315,459	125,378	36,451	156,307
03	980,524	347,838	308,595	118,812	42,902	162,377
04	1,093,646	385,961	330,459	126,250	50,874	200,102
05	1,082,112	392,390	310,225	119,932	53,081	206,484
06	1,082,561	394,242	318,138	114,438	38,067	217,676
07	1,074,994	388,399	322,128	116,611	28,689	219,167

자료 :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11-2. 연도별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금액

(단위 : 톤, 백만원)

	물 량			금 액		
	어업생산량	위판량	비율	어업생산액	위판금액	비율
90	2,314,744	1,711,438	73.9	1,915,812	1,318,196	68.8
94	2,558,483	1,622,668	63.4	3,241,172	2,171,918	67.0
95	2,421,664	1,564,960	64.6	3,127,524	2,187,373	69.9
96	2,498,632	1,711,074	68.5	3,378,401	2,404,050	71.2
97	2,382,540	1,485,364	62.3	3,405,168	2,119,423	62.2
98	2,085,566	1,372,644	65.8	3,243,952	2,029,591	62.6
99	2,101,314	1,489,351	70.9	3,111,922	2,110,737	67.8
00	1,842,373	1,337,756	72.6	3,013,339	2,131,779	70.7
01	1,907,926	1,446,237	75.8	3,185,471	2,286,678	71.8
02	1,877,331	1,338,966	71.3	3,281,523	2,233,559	68.1
03	1,922,771	1,244,003	64.7	3,571,486	2,101,975	58.9
04	1,994,402	1,204,486	60.4	3,826,822	2,287,488	59.8
05	2,138,115	1,181,533	55.3	4,054,362	2,251,119	55.5
06	2,367,692	1,239,395	52.3	4,193,836	2,207,640	52.6
07	2,538,092	1,273,907	50.2	4,538,492	2,277,467	50.2

자료 :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주 : 통계수치는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 생산량임(내수면 및 원양어업은 미포함)

12. 수산물 수급현황

(단위 : 천톤, %)

	수 요			합 계	공 급			자급율
	국내소비	수 출	이 월		생 산	수 입	재 고	
01	3,260	1,080	641	4,981	2,665	1,806	510	81.7
02	3,434	1,140	769	5,343	2,476	2,226	641	72.1
03	3,578	1,202	743	5,523	2,486	2,268	769	69.4
04	3,922	1,116	531	5,569	2,519	2,477	573	64.2
05	4,169	1,121	512	5,802	2,714	2,557	531	65.1
06	4,568	1,047	575	6,190	3,032	2,646	512	66.4
07	4,621	1,211	618	6,450	3,271	2,604	575	70.8

자료 :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12-1. 주요품목별 수급현황

(단위 : 톤)

		수 요			합 계	공 급		
		국내 소비	수 출	차년 이월		생 산	수 입	전년 재고
명 태	05	382,937	8,137	55,151	446,225	26,029	341,236	78,960
	06	364,731	6,319	49,161	402,211	26,269	320,791	55,151
	07	384,281	12,473	76,059	472,813	20,144	403,508	49,161
오 징 어	05	265,981	66,813	50,991	383,785	270,298	50,161	63,326
	06	313,102	37,996	132,431	483,529	367,295	65,243	50,991
	07	303,610	157,113	130,461	591,184	399,888	58,865	132,431
고 등 어	05	180,077	8,134	49,805	238,016	135,806	19,811	82,399
	06	156,501	4,457	30,596	191,554	101,712	40,037	49,805
	07	153,250	15,330	57,312	225,892	145,016	50,280	30,596
갈 치	05	105,346	1,896	21,138	128,380	62,151	45,114	21,115
	06	109,622	1,305	22,207	133,134	65,788	46,208	21,138
	07	116,249	1,047	14,729	132,025	68,509	41,309	22,207
조 기	05	83,049	501	18,314	101,864	24,691	59,328	17,845
	06	77,459	161	26,376	103,996	33,199	52,483	18,314
	07	88,981	429	32,961	122,371	44,213	51,782	26,376

자료 :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13. 연도별 수산물 가공생산 및 지원현황

(단위 : 톤, 개소)

	가공품생산량	가공업체현황	가공시설지원현황	비 고
60	-	249	-	-
70	183,791	221	-	-
80	366,979	376	-	-
90	1,754,887	562	101	-
95	1,691,810	619	94	-
96	1,727,497	1,694	113	-
97	1,653,342	1,677	124	-
98	1,541,249	1,912	116	-
99	1,594,134	1,720	75	-
00	1,465,094	1,869	126	-
01	1,546,839	1,690	89	-
02	1,590,000	1,630	102	-
03	1,357,717	1,465	100	-
04	1,528,753	1,480	131	-
05	1,559,201	2,937	53	-
06	1,546,784	2,400	82	-

자료 :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14. 어업권 현황

(단위 : 건)

	허 가			면 허			신고 어업	내수면		
	근해	연 안	구획 어업	정치망	마을 어업	천해 양식		허가	면허	신고
80	7,309	-	-	-	-	-	-	-	-	-
90	7,837	-	-	-	-	-	-	2,811	631	1,513
95	7,742	62,072	2,285	606	2,345	8,040	61,872	3,344	455	2,411
00	5,874	86,129	8,406	555	2,291	8,462	58,663	4,155	228	2,751
01	5,591	85,144	8,378	553	2,362	8,554	56,521	4,889	219	2,802
02	4,904	84,949	8,445	552	2,439	8,717	55,234	4,712	211	3,275
03	4,637	84,311	8,260	556	2,539	8,839	57,004	4,991	199	3,666
04	4,467	81,489	8,271	479	2,447	9,046	55,491	4,977	166	3,415
05	4,359	80,518	7,876	553	2,726	9,110	61,897	4,820	155	3,542
06	4,246	75,723	7,611	551	2,840	9,297	63,498	4,934	146	3,479
07	4,061	71,756	7,446	555	2,835	9,352	67,773	4,882	115	3,366

자료 : 어업자원관 어업정책과, 양식산업과, 유어내수면과

15. 불법어업 단속 실적

(단위 : 건수)

	계	본부	해경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0	2,862	312	277	118	23	-	76	106	212	108	635	209	711	75
95	3,595	995	406	170	65	-	31	56	339	111	704	158	456	104
96	3,128	937	234	203	22	-	21	49	252	83	719	89	400	119
97	3,443	942	412	151	56	15	40	28	266	152	750	78	445	108
98	3,157	725	494	197	26	27	43	161	178	166	711	83	278	68
99	3,277	590	850	164	14	15	50	34	188	171	842	63	232	64
00	3,161	502	1,112	145	12	18	59	86	179	139	555	45	245	64
01	3,291	417	1,152	194	25	7	44	29	162	159	653	67	287	95
02	3,102	606	495	201	44	3	70	39	73	168	920	32	397	54
03	2,067	527	234	117	19	29	95	49	103	97	359	61	347	30
04	3,673	416	2,132	111	19	13	66	85	131	114	303	60	201	22
05	4,054	723	2,427	98	2	21	62	26	85	120	305	28	137	20
06	3,015	637	1,624	116	23	9	24	14	80	57	248	23	151	9
07	3,773	954	1,950	111	11	9	34	5	132	68	141	34	309	15

자료 : 수산정책관 지도안전과

16. 어항 건설 추진현황

16-1. 투자실적

(단위 : 억원)

	투자현황(시설비)		
	총계획	2007까지	잔여사업비
계	60,898	30,691	30,207
국가어항	41,049	20,757	20,292
지방어항	19,849	9,934	9,915

자료 : 수산정책관실 어항과

16-2. 완공현황

(단위 : 개항)

	대 상 항	2007까지 완공	미 완 공	완 공 율
계	393	224	169	57%
국가어항	104	90	14	87%
지방어항	289	134	155	46%

자료 : 수산정책관실 어항과

16-3. 시·도별 어항건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완공항(완공율%)	개발중인항	미개발항
합계	계	393	224개항(57%)	81개항(20%)	88개항(23%)
	국가어항	104	90개항(87)	14개항(13)	-
	지방어항	289	134개항(46)	67개항(23)	88개항(31)
부산	국가어항	2	다대포,대변(100)		
	지방어항	14	10개항(71)	1개항(7)	3개항(22)
인천	국가어항	5	어유정,장봉,덕적도,울도(80)	선진포(20)	-
	지방어항	15	9개항(60)	1개항(7)	5개항(33)
울산	국가어항	2	정자,방어진항(100)	-	-
	지방어항	4	3개항(75)	1개항(25)	-
경기	국가어항	-	-	-	-
	지방어항	5	3개항(60)	2개항(40)	-
강원	국가어항	14	대진,거진,아야진,대포,남애,사천진,금진,덕산,장호,임원,수산,안목,공현진(93)	궁촌(7)	-
	지방어항	14	4개항(28)	7개항(50)	3개항(22)
충남	국가어항	7	안흥,오천,외연도,홍원,모항(71)	남당, 삼길포	-
	지방어항	29	17개항(58)	6개항(21)	6개항(21)
전북	국가어항	6	연도,위도,격포,말도,어청도(83)	구시포(17)	-
	지방어항	12	3개항(25)	3개항(25)	6개항(50)
전남	국가어항	30	국동,돌산,안도,녹동,발포,시산,풍납,계마, 안마,원평,전장포,서거차,서망,어람진,마량,청산도,소안,사동,수품,여서,득암,낭도,초도,여호,소흑산도(83)	우이도,보옥,회진,연도,도장(17)	-
	지방어항	92	32개항(35)	18개항(19)	42개항(46)
경북	국가어항	15	죽변,대진,강구,구계,대보,양포,감포,읍천,저동,사동,축산,현포,오산,구산(93)	남양(7)	-
	지방어항	23	9개항(39)	13개항(57)	1개항(4)
경남	국가어항	17	광암,외포,능포,맥전포,신수,능양,미조,삼덕,옥지,물건,다대다포,매물도,지세포,구조라,원전(88)	호두,대포(12)	-
	지방어항	63	34개항(54)	8개항(13)	21개항(33)
제주	국가어항	6	신양, 모슬포, 위미, 도두, 김녕(83)	하효(17)	-
	지방어항	18	10개항(56)	7개항(39)	1개항(5)

자료 : 수산정책관실 어항과

17. 지방어항 현황

(1) 지정·해제 현황

(단위 : 개항)

	72최초 지정	73이후 추가지정	73이후 해제	2007년 현재
계	255	251	217	289
부산	3	11	-	14
인천	4	33	22	15
울산	-	6	2	4
경기	15	24	34	5
강원	16	1	3	14
충남	20	19	10	29
전북	11	8	7	12
전남	59	107	74	92
경북	36	-	13	23
경남	81	28	46	63
제주	10	14	6	18

자료 : 수산정책관실 어항과

18. 어촌어항관광 및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

(07년말 기준)

구 분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모델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마을 112	87	개소 18	3(6)	권역 232	152(8)
부 산	2	2	1		3	1(1)
인 천	5	4	2		7	6
울 산	-	-	2	(2)	4	3
경 기	10	8	1		4	2
강 원	9	7	2	1	17	13(1)
충 남	11	7	1	1	13	10(1)
전 북	6	4	1		10	7(1)
전 남	31	26	2	(2)	88	53(6)
경 북	10	7	2	(2)	22	15(3)
경 남	18	16	2		48	29(3)
제 주	10	6	2	(1)	16	13(1)

자료 : 수산정책관실 어항과

주 : ()는 계속사업 권역으로 진행중인 사업임.

19. 연도별 어선 세력

(단위 : 천톤)

	계		동 력 선		무동력선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60	34,438	107,017	4,349	57,979	30,089	49,038
70	68,355	358,366	14,085	268,182	54,270	90,184
80	77,574	770,688	51,113	740,266	26,461	30,422
90	99,658	976,731	79,365	954,977	20,293	21,754
95	76,801	958,599	71,041	951,213	5,760	7,386
97	81,000	964,471	73,780	958,155	7,220	6,316
98	90,997	978,334	82,803	971,704	8,194	6,630
99	94,852	991,956	87,502	986,339	7,350	5,617
00	95,890	923,099	89,294	917,963	6,596	5,136
01	94,935	884,853	89,347	880,467	5,588	4,386
02	94,388	816,563	89,327	812,629	5,061	3,934
03	93,257	744,335	88,523	750,663	4,734	3,672
04	91,608	724,980	87,203	721,398	4,405	3,582
05	90,735	700,810	87,554	697,956	3,181	2,854
06	86,113	673,719	83,358	671,299	2,755	2,420
07	85,627	663,869	65,254	201,015	2,392	426,248

자료 : 수산정책관 어선인력과

19-1. 연도별·톤급별 어선 척수 현황

(단위 : 척)

	계	1톤 미만	1~ 5톤	5~ 10톤	10~ 50톤	50~ 100톤	100~ 200톤	200톤 이상
80	77,574	23,314	42,839	3,507	5,077	1,805	450	582
90	99,658	34,428	52,797	4,530	4,552	1,937	630	784
95	76,801	26,403	36,809	6,220	4,075	1,904	676	714
97	81,000	31,356	36,162	6,329	3,810	2,001	642	700
98	90,997	36,712	40,361	6,879	3,788	1,950	613	694
99	94,852	38,067	42,884	7,019	3,717	1,872	595	698
00	95,890	37,542	44,794	7,332	3,465	1,584	518	655
01	94,935	35,013	46,424	7,662	3,249	1,463	490	634
02	94,388	33,967	47,156	7,963	3,010	1,271	422	599
03	93,257	33,123	47,040	8,091	2,851	1,168	407	577
04	91,608	31,974	46,920	8,057	2,644	1,084	369	560
05	90,735	30,962	47,253	8,048	2,559	1,024	346	543
06	86,113	29,753	44,892	7,085	2,501	1,012	341	529
07	85,627	28,839	45,790	6,672	2,469	991	341	525

자료 : 수산정책관 어선인력과

19-2. 연도별·선질별 어선 척수 현황

(단위 : 톤)

	계		FRP 선		강 선		목 선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70	68,355	358,366	106	148	798	123,215	67,451	235,003
80	77,574	770,688	228	621	3,031	523,514	74,315	246,553
90	99,658	976,731	6,647	19,156	4,084	716,211	88,927	241,364
95	76,801	958,599	20,868	71,286	4,094	714,645	51,839	172,668
97	81,000	964,471	29,832	101,202	4,042	717,535	47,126	145,734
98	90,997	978,334	39,090	118,296	3,961	716,542	47,946	143,496
99	94,852	991,956	46,413	136,715	3,869	723,355	44,570	131,886
00	95,890	923,099	52,378	154,425	3,455	656,261	40,057	112,413
01	94,935	884,853	56,947	170,833	3,286	618,962	34,702	95,058
02	94,388	816,563	60,160	183,299	2,985	554,175	31,243	79,089
03	93,257	754,335	62,415	191,913	2,920	494,674	27,922	67,748
04	91,608	724,980	64,113	198,420	2,678	469,570	24,817	56,990
05	90,735	700,810	65,831	205,754	2,623	445,359	22,281	49,697
06	86,113	673,719	64,614	200,111	2,344	432,664	18,954	40,313
07	85,627	663,869	65,254	201,015	2,392	426,248	17,981	36,606

자료 : 수산정책관 어선인력과

19-3. 연도별·어업별 어선등록현황

(단위 : 톤)

		계	원 양	연근해	양 식	내수면	기 타
75	척수	67,655	825	44,517	20,767	1,000	546
	톤수	647,700	353,055	253,063	25,939	941	14,702
80	척수	77,574	654	41,874	31,631	2,874	541
	톤수	770,688	317,639	379,295	35,629	2,674	35,451
90	척수	99,658	783	57,648	37,831	3,057	339
	톤수	976,731	405,550	451,272	46,601	2,559	70,749
95	척수	76,801	625	51,357	19,906	2,399	2,514
	톤수	958,599	352,002	445,196	27,140	1,653	132,608
97	척수	81,000	637	56,418	19,162	2,558	2,225
	톤수	964,471	357,689	439,315	24,252	1,665	141,550
98	척수	90,997	628	64,284	20,911	2,624	2,550
	톤수	978,334	357,412	438,205	27,894	1,703	153,120
99	척수	94,852	620	66,776	21,742	2,742	2,972
	톤수	991,956	365,146	434,143	29,733	1,589	161,345
00	척수	95,890	597	68,629	20,359	3,664	2,641
	톤수	923,099	349,420	397,868	28,516	2,874	144,421
01	척수	94,935	568	67,990	19,856	4,330	2,191
	톤수	884,853	335,552	386,181	28,945	3,490	130,685
02	척수	94,388	543	67,411	19,751	4,683	2,000
	톤수	816,563	318,855	362,163	29,137	4,112	102,296
03	척수	93,257	517	66,698	19,228	4,510	2,304
	톤수	754,335	273,086	344,992	28,009	3,941	104,307
04	척수	91,608	491	66,063	18,792	3,991	2,271
	톤수	724,980	261,237	330,203	27,296	3,102	103,142
05	척수	90,735	493	64,579	18,244	4,164	3,255
	톤수	700,810	257,614	322,811	27,131	3,518	89,736
06	척수	86,113	483	63,518	16,337	4,150	1,625
	톤수	673,719	258,422	312,580	23,955	3,557	75,204
07	척수	85,627	470	63,100	16,352	4,000	1,705
	톤수	663,869	249,952	308,512	25,226	3,354	76,825

자료 : 수산정책관 어선인력과

20. 어가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어가소득	경상소득	어가순소득			
				어업소득		
				어업총수입	어업경영비	
2003	23,916	20,221	19,360	10,741	23,114	12,373
2004	26,159	22,604	21,127	11,959	25,144	13,185
2005	28,028	23,594	21,349	11,950	26,576	14,626
2006	30,006	24,692	21,964	11,603	25,910	14,307
2007	30,668	25,868	22,955	11,975	26,535	14,560

(단위 : 천원)

구 분	어 가 순 소 득					
		겸 업 소 득		사 업 외 소 득		
		겸업수입	겸업지출	사업외수입	사업외지출	
2003	4,176	9,882	5,706	4,443	4,640	196
2004	4,350	10,722	6,372	4,817	5,035	218
2005	4,559	11,703	7,145	4,840	5,099	259
2006	5,081	12,487	7,406	5,279	5,479	200
2007	5,689	14,786	9,097	5,292	5,491	199

(단위 : 천원)

구 분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가 계 지 출			어가처분 가능소득	어가경제 잉 여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2003	861	3,695	20,019	16,250	3,770	20,147	3,897
2004	1,477	3,555	21,081	16,602	4,479	27,680	5,077
2005	2,245	4,434	22,896	17,682	5,214	22,815	5,133
2006	2,728	5,315	23,885	18,156	5,729	24,277	6,121
2007	2,913	4,799	22,963	18,263	4,700	25,968	7,704

(단위 : 천원, %)

구 분	어가자산 (연도말)	어가부채 (연도말)	어업순생산 (부가가치)	어업의존도	어업소득의 가계비중족	어업소득률
2003	140,477	29,836	16,050	44.91	53.65	46.47
2004	160,698	32,544	17,568	45.72	56.73	47.56
2005	183,841	34,531	17,832	42.64	52.19	44.97
2006	209,644	34,422	17,350	38.67	48.58	44.78
2007	225,992	34,407	17,897	39.05	52.15	45.13

21. 어가부채

(단위 : 천원)

구 분	어 가 부 채		부채의 원천			
			차 입 금		미불금 및 선수금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2003	28,792	29,836	28,496	29,387	296	450
2004	30,270	32,544	30,075	32,179	194	365
2005	33,245	34,531	32,853	34,119	391	411
2006	34,693	34,422	34,291	33,947	402	476
2007	33,920	34,407	33,461	33,876	459	530

(단위 : 천원)

구 분	부채의 성질				차입금의 조달방법			
	고정부채		유동부채		금융기관		사 채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2003	25,374	25,674	3,418	4,163	25,553	25,979	3,239	3,858
2004	26,301	27,473	3,969	5,071	26,437	27,778	3,823	4,766
2005	28,280	28,982	4,964	5,549	28,175	28,516	5,070	6,015
2006	29,383	29,219	5,310	5,203	28,977	28,596	5,716	5,853
2007	28,824	28,669	5,095	5,738	28,390	28,417	5,530	5,989

2008년도 수산업 연차보고서

2008년 10월 일 인쇄

2008년 10월 일 발행

편집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발행 : 농림수산식품부(☎ 02-500-2303)

인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비매품>

